

건축사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une 1992

이
니다.

가는
만족시키는

음력이 뛰어난

톤은
게 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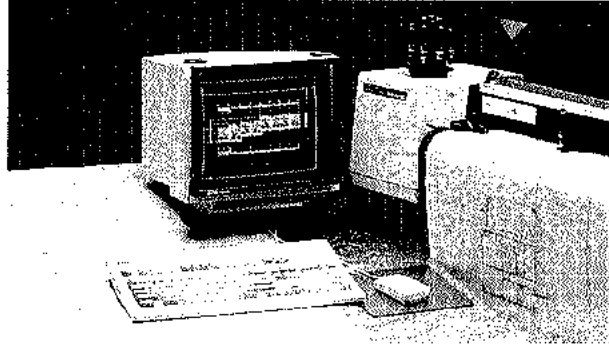
습니다.
다.

기톤®

6
JUNE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전문회사로 출발한 건캐드시스템은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건축 CAD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설계업무 불탁하고 싶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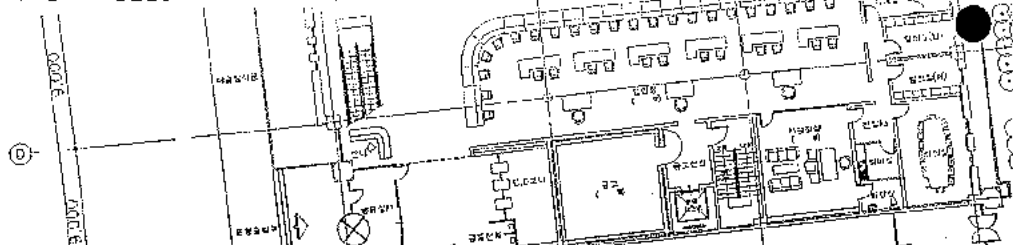
귀사의 설계업무를 건캐드시스템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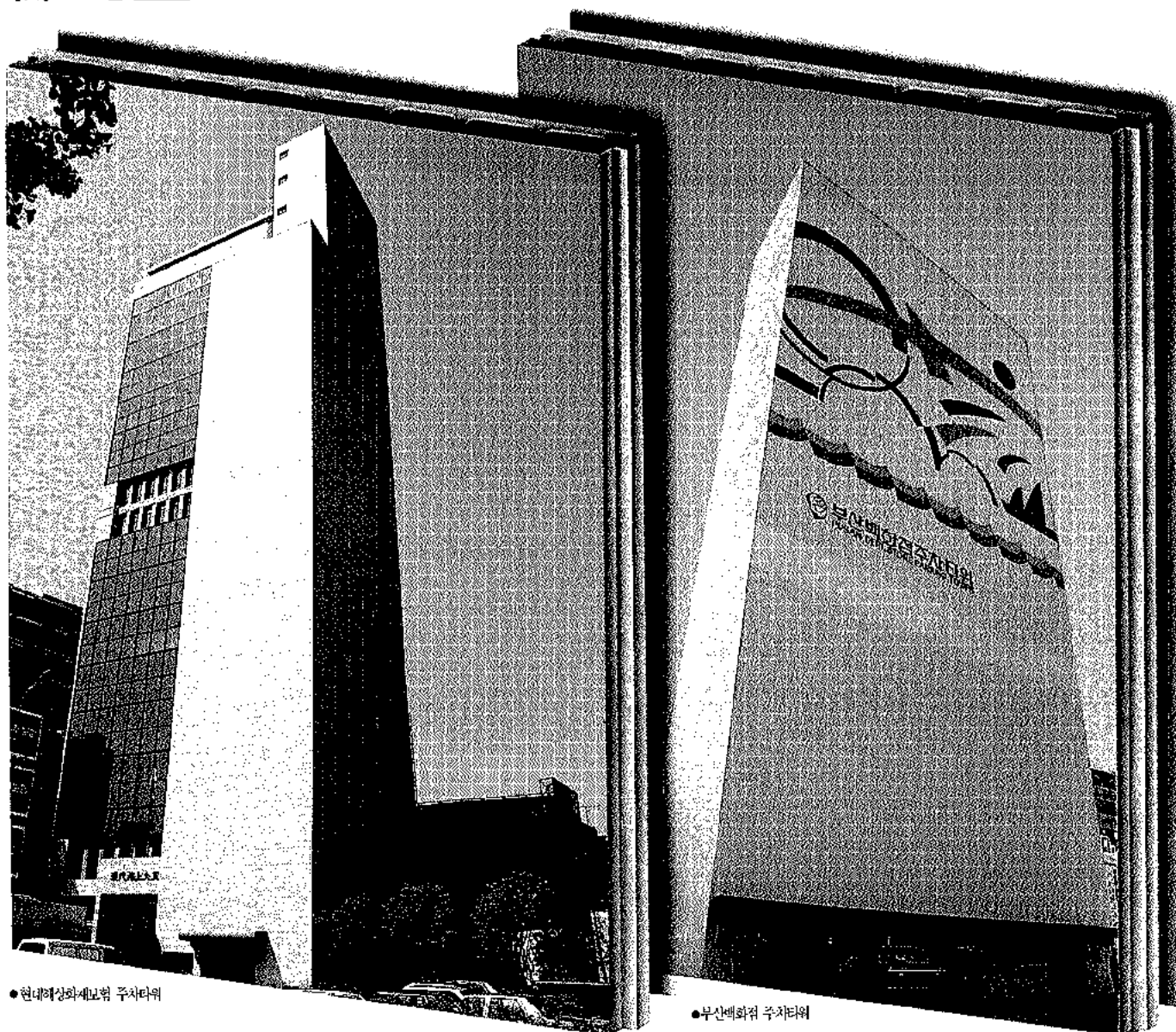


건축CAD전문회사

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02호 TEL (02)564-6480, 521-4935 FAX (02)587-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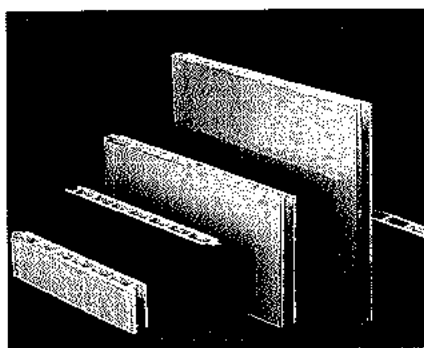




●현대증권세무회 주차타워

●부산메트로주거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물림이 전혀 없습니다.

외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박산 베이스

486출발

486 Turnkey system configuration

- 썬파워 486
 - i80486-25MHz
 - MAIN MEMORY: 8MB
 - 5.25" FDD
 - 200MB HDD
 - 14" MONITOR
 - PC-MOUSE
- DISPLAY
 - NEC XL 20" Color Monitor
 - 1024 × 768 × 256
 - COBRA-PLUS-3BI-HS with VMI
- ARRIS
 - BD & D + AD & D + M & D + 한글
- 3rd Party
- Xenix & DOS

**썬파워 486은 i80486을 탑재한
현존하는 최고의 PC입니다.**

Land Mark Test시 112MHz의 속도를 나타내며
Co-Processor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386 System
보다 3배~5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 XENIX O/S 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 한계 극복
- 화면 MENU 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 등 완벽한 3-D 기능과 시간별 광원 지원 등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기능 보유 (일조권)
-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누수 방지
- 2D, 3D 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 등 SYMBOL 지원
- 1,600만 컬러제공 및 신속한 컬러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2,300만원 → 1,895만원

OPTION

- H/W
 - Memory
 - 3.5Inch FDD
 - 5.25Inch FDD
- PLOTTER
 - F-920ER(Ao, Roll)
 - F-920E(Ao)
 - ip-530EL(Ao)
 - ip-530E(Ao)
 - ip-210(Ao)
- DISPLAY
 - 2A(800 × 600, 14")
 - 3D(1024 × 768, 14")
 - 4D(1024 × 768, 16")
 - 5D(1280 × 1024, 20")
- TABLE
 - TB-8830

■ 3rd Party의 특징

국내 유명건축사무소인 (주)우일건축 (주)정림건축의 협조로 그동안 설계
사무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
철근, 보, 슬라브, 기둥, 철골접합 등을 함께 공급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etail Library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설기구상세, 외부시설상세 등
총 450개

— 한글 단 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배우기 기능, 공간채우기 기능 등

— 구조일람표

철근-보, 기둥, 슬라브와 철골접합상세 등

F-920ER은 연필사용이 가능한 MUTOH PLOTTER의 최신기술으로 Ao Size의
납장 사용은 물론 Roll Type의 연속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긴도면이나
아터장의 도면을 쉽게 Plotting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시험회부설 CAD교육 연구
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신분들
께는 시스템구매시 교육비 전액
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License 확인사항
IX와 DOS구매회에는 License 여부를 확인
시요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
원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입니다.

OPEN
'90.12.3

■ 대한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1층
운영: 서통 AI 사업부 교육팀
문의: 521-7296,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11

Page 교육안내 참조

■ TURN-KEY SYSTEM의 특징

HARD WARE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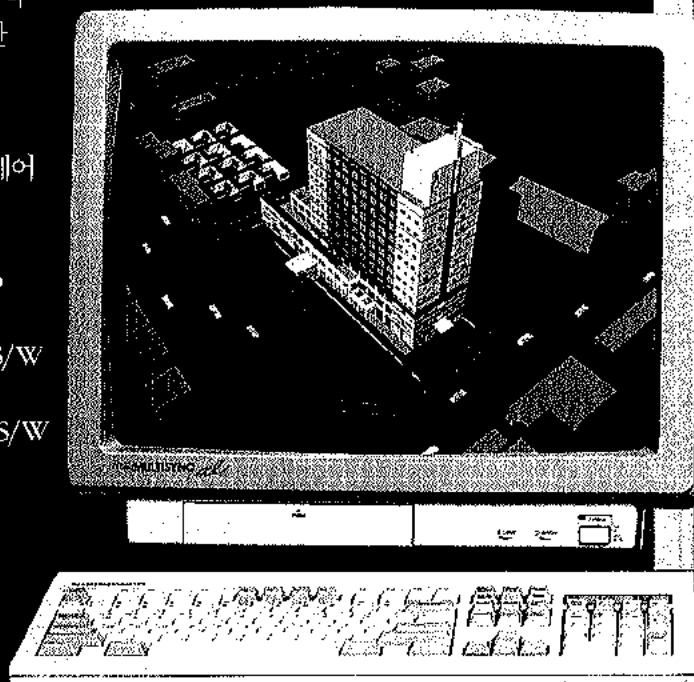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 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 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효율성·다양한 기술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전용 S/W, AutoCAD, VERSACAD, MICROCAD, Micro Station D/A(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 기획설계 W/P(Word Processor) 각종 사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Sunpower
486

선파워



서통 AI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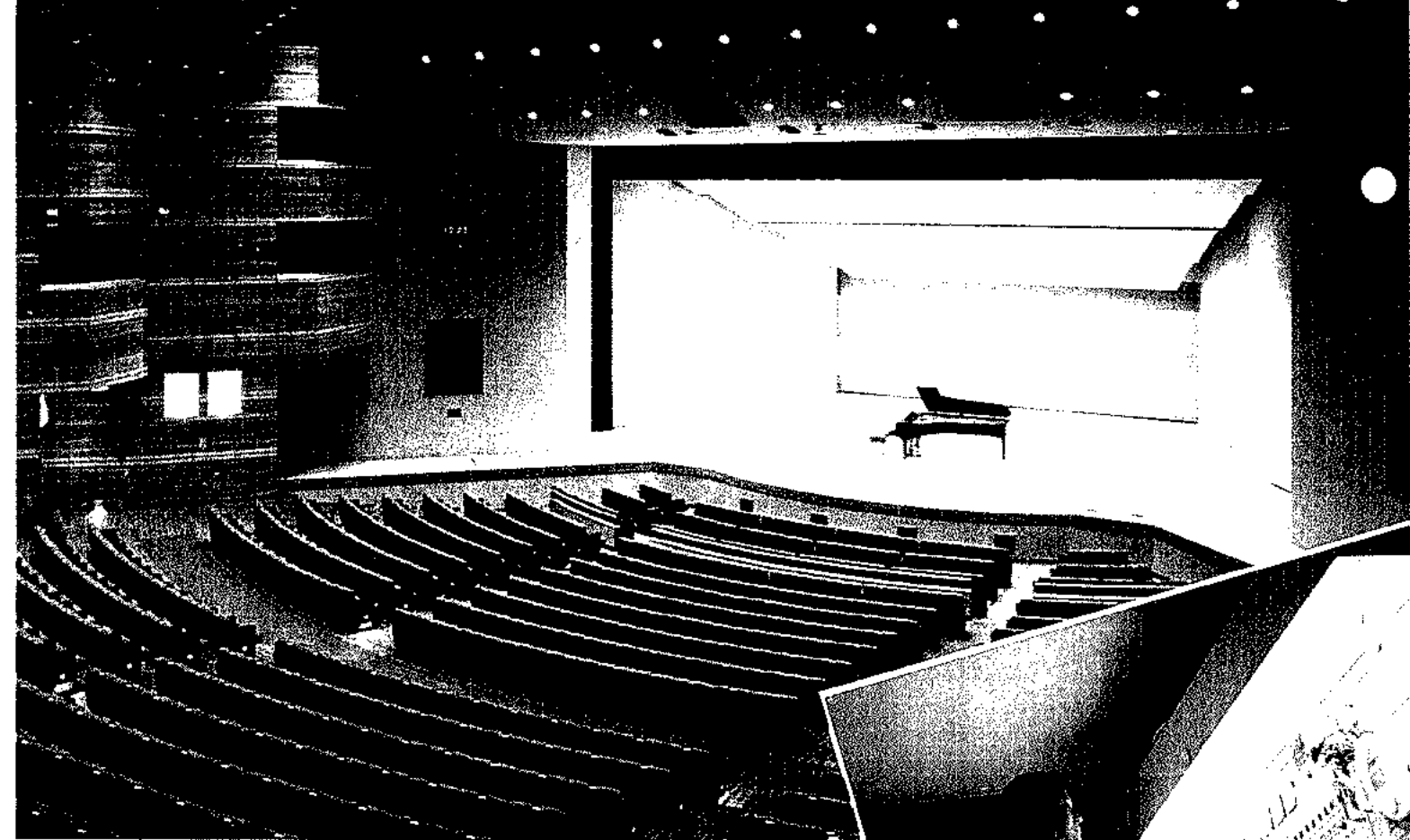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선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5140-386 (代) Fax: (02)545-0296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강남구 논현동 9-21 TEL: 511-6296
· 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1층
부산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중구 대창동 32-1 신림빌딩 대창캐피탈
TEL: 493-6130
대구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421-2831

공급하는 3rd Party 소프트웨어(특히) 기술자에 프로그램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단복제시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 처벌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워튼워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 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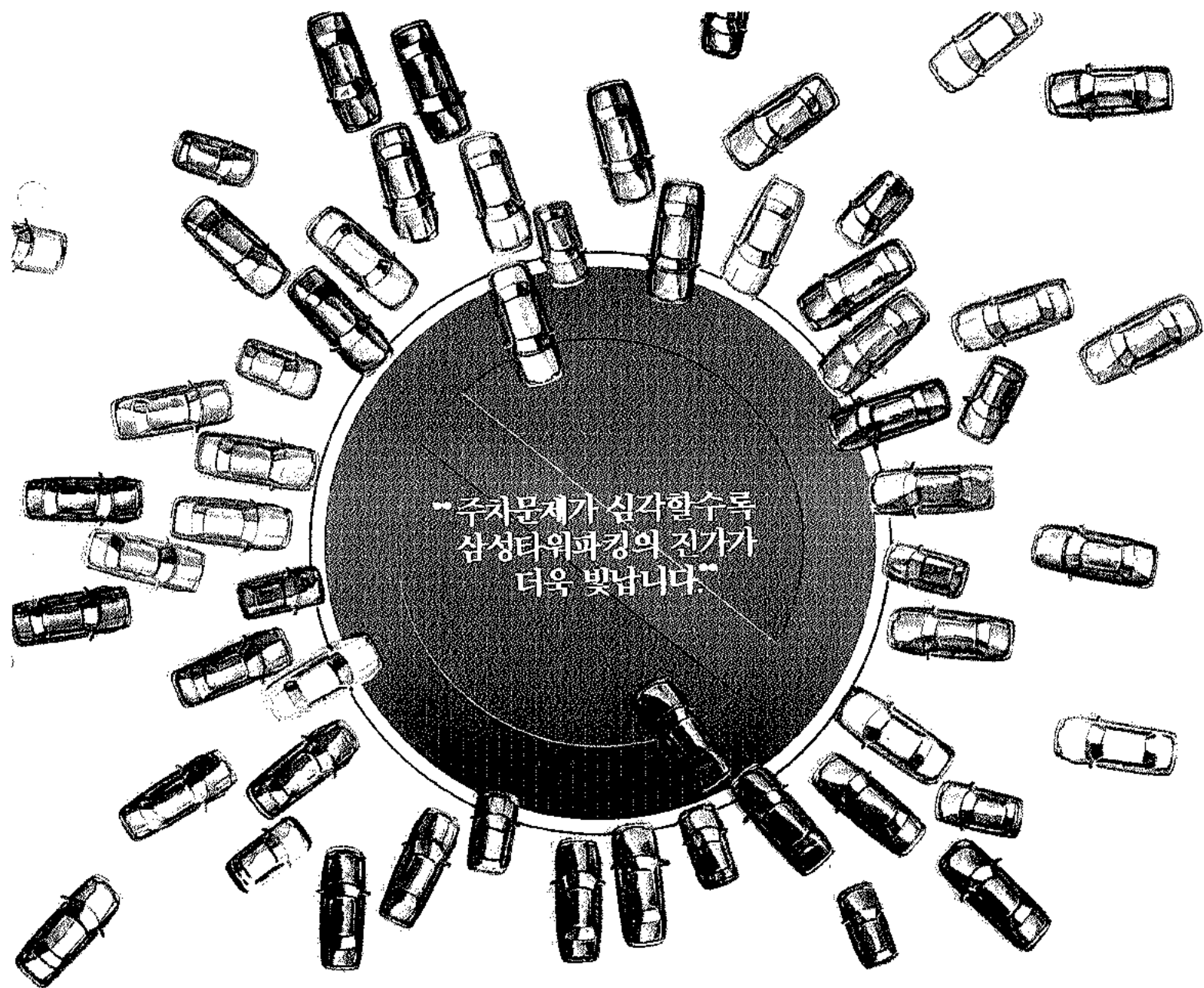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41) 997-4184, (02) 632-0216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 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안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 (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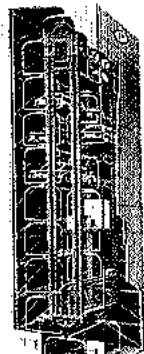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2대를 주차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

— ARCHITECKS(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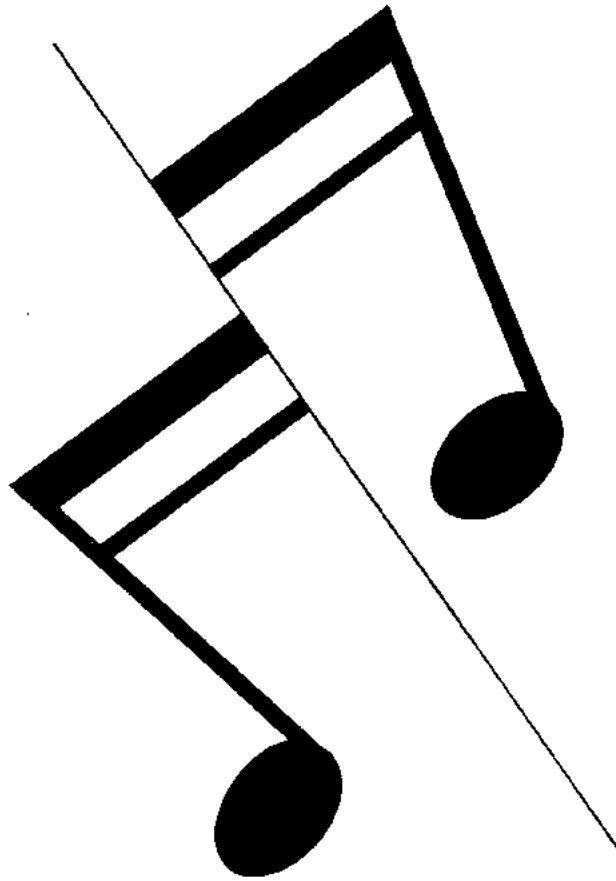
알루미늄, 이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기밀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줄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차음의 효과를 낼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아천군 대월면 사동리 산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완·벽·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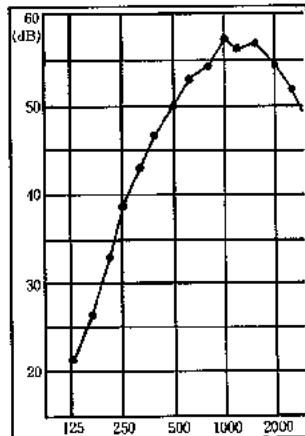
최고급 파티션

INSU PARTITION

■ 인슈파티션이란?

**보다 쾌적하고, 보다 안전한
실내공간을 연출합니다.**

방화 불연재로 사용되는 GYPSUM BOARD 및 GLASSWOOL이 주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방화 및 방음능력이 뛰어난 내화구조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인슈파티션은 P.V.C 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오피스빌딩, 주택, 호텔, 아파트 등의 내부 파티션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 인슈파티션의 특징점

- 인슈파티션은 완전 불연재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내화 칸막이벽으로 좋습니다.
- 외부표면재인 GYPSUM BOARD 및 내부 소재인 GLASSWOOL이 음의 진동을 완충하므로 차음, 방음, 흡음이 우수합니다.
- 마감재를 P.V.C 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처리도 가능하여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된 조립식 구조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조립·해체 이동 설치할 수 있으며, 전동 필터 유닛 등 연관설비와의 조합기능이 매우 뛰어나습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리 39-2
TEL : (02) 745-0687, (0336) 32-4635-6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부산사무소 : TEL :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 TEL :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 TEL : (062) 524-9779, 527-7144

차례 / 1991년 6월호 등권 제266호

創 報	'91 全國建築士大會	
	協會長 開會辭	12
	建設部長官 致辭	13
	民自黨 代表最高委員 祝辭	14
	國會 建設委員長 祝辭	15
	사진으로 보는 '91 全國建築士大會	16
	'91 全國建築士大會를 마치고 / 金榮洙	18
會員作品	실악 리조트 래저타운 / 柳春秀	20
	삼성첨단기술연구소 / 金昌壽+朴昇+韓相默	23
	영운동성당 / 曹龜鉉	26
	퇴촌 S씨 주말주택 / 閔承烈	28
	월곡동 J씨 주택 / 鄭道聖+삼예종합건축	30
	실내장식가의 주택 / 董政根+朴研心	32
	북아현동 K씨 주택 / 宋光燮	34
	유림빌딩 / 張基成	36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尹錫祐	38
나의 스케치	서울미술관계획안 / 曹建永	40
읽히며 생각하며	우리는 「모범건축사」가 아니다 / 咸仁善	42
研 究	한국의 전통건축(35)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44
	일본의 외국인 건축가 / 金文德	54
	조선시대 말기 교육시설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 李榮漢	66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9) / 裴元泰	73
資 料	改正 建築法 全文	80
	1991년 4월분 도서신고현황	90
新入會員		92
協會消息		94



표지: 曹龜鉉作 「영운동성당」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
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SPECIAL ISSUE

KIRA CONGRESS 1991

Presidential Opening Address	12
Congratulatory Address	13
Scene on the KIRA CONGRESS 1991	16
After the KIRA CONGRESS 1991 / Kim, Young-Soo	18

WORKS

Solak Resort Leisure Town / Ryu, Choon-Soo	20
Samsung Advanced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 / Kim, Chang-Soo + Park, Seung + Han, Sang-Mook	23
Youngwoon-dong Cathedral Church / Cho, Koo-Hyun	26
S's Weekend House / Min, Seong-Rul	28
Wolkok-dong J's Residence / Jung, Do-Sung & 3Art Archi Group	30
Interior Designer's Residence / Dong, Jung-Keun & Park, Yeon-Shim	32
Bookahyun-dong K's Residence / Song, Kwang-Sub	34
Youlim Building / Chang, Ki-Sung	36
Korea Petroleum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 Yoon, Suk-Woo	38

SKETCH

Seoul Art Museum Plan / Cho, Gun-Young	40
--	----

ESSAY

There is no necessity call for an exemplary architect / Ham, In-Sun	42
---	----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44
Foreign Architects in Japan / Kim, Moon-Duck	54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Facility from 1875 to 1905 / Lee, Young-Han	66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e, Won-Tae	73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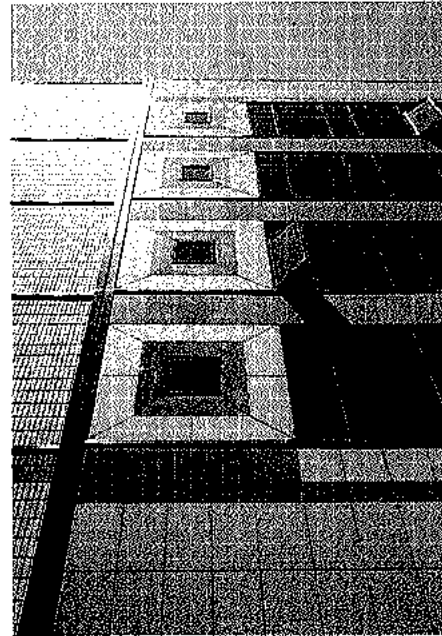
	80
--	----

NEWLY ADMITTED MEMBER

	92
--	----

KIRA NEWS

	94
--	----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
 분소/영등포구당산3가181, 634-2143 ·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
 -6313 · 종로분소/종로구정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마포구성안동275-1, 333-5251 · 송파분소/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
 1049-79, 992-8076 ·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중랑구민복동106-46, 436-0587 · 상록분소/성북구삼전5가410, 923-4401 · 구로분소/구로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
 부산직할시중구광동1가1(부산대페트네)(051)246-6284-7 ■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벌어동37가-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중
 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254-2441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7-6129-
 31, 31-3137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8, (0331)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안양6동523-5, (0343)49-2688 ·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매정동3407, (0342)
 756-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정동182, (0351)12-1082 ·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소/고양시원당읍주교리38분리16로, (0344)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2337 · 이천분소/이천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안산시고당동536-1, (0345)80-9130 ■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1)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14(0391)12-2262 · 속초분소/속초시동명동466-33, (0392)33-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 (0397)12-3106 ·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
 영월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187-3, (0431)56-2752, 52-7942 · 충주분소/충주시청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소/제천시외정동8-8, (0443)43-6253 · 옥천분소/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파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
 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12-2271 · 대천분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568-116(전원빌딩6층), (062)87-6007 · 이리분소/이리시남궁동1
 가77-21, (0653)52-3796 · 군산분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69 ·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3-23(후신회관)(062)364-7557, 33-9944 · 목포분소/
 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 순천분소/순천시강정동51-11(0661)3-2457 ·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65번지, (053)425-4904 · 포항분소/포항시
 죽도동43-22, (0562)44-6029 ·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42-21(0561)3-3538 ·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964-254, (0546)52-6351 ·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12-2541 · 영주분소/영주시류현2동642-52, (0572)33-7504 · 철원분소/철원시중앙동280-3, (0581)2-2706 ·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12-4306 ■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3-47,
 (0551)46-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52)74-8836 ·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창원분소/창주시서호동163-18, (0557)43-3577 · 김해분소/김해시무원동24B-10L, (0525)
 2-6114 · 밀양분소/밀양시삼문동184-108, (0527)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6)12-7030 ·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84-3050 ·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9432 ·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금동91-6(0593)33-9779 ■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32-7777



開 會 辭

오늘 全國의 建築士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다짐하고 21세기 建築文化의 章을 模索하는 '91 全國建築士大會를 맞이하여公私 多忙하신 중에도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李鎭高 建設部長官, 金泳三 民主自由黨 대표최고위원, 金鎔采 國會 建設委員長을 비롯한 來賓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대회는 전국 3천6백여 건축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一致團結하여 國際化 時代에 따른 2천년대를 향한 우리建築界의 位相을 定立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先進建築技術과 情報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보다 快適한 生活 空間의 創出로 이어져 國民의 住生活 向上에 기여하고 나아가 今世紀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意義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원 및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평소 우리 모두가 공감해 왔던 것들 중 이땅에 참다운 建築文化를 復興시키기 위해 모두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건축이 양적인 측면에서 需要供給만을 고려한 현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면에서 都市環境과 住居環境 改善에 주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한 국가의 건축문화는 국민경제와 문화수준에 따라 定立되어지는 것으로서 建築主의 資金力, 政府의 果敢한 支援정책, 그리고 建築士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技術蓄積을 기반으로 설계단계부터 시공과정을 거쳐 綜合的 產物로서 하나의 建築物이 誕生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건축상황은 이러한 평범한 원칙이 재인식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建築主, 政府, 그리고 建築士가 하나가 되어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새로운 建築環境을 構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삶터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환경을 재창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地方化에 적합한 建築制度의 定着 노력입니다.

지난 3월 26일 基礎地方自治團體 議員 選舉를 始作으로 30年만에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의 건축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地方建築物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역할보호뿐 아니라 都市計劃의 問題의 解決을 위한 條例의 제정 및 개정 단계부터 건축전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의 根幹을 이룩하기 위해 基礎議會에도 많은 회원들이 진출하였습니다만 廣域議會에도 많은 회원들이 적극 진출하시어 그동안 건축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견의 개진으로 여러분 고상 건축의 질적 향상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尖端 科學 時代의 도리에 따른 대응능력의 培養입니다.

다가오는 21世紀는 情報 産業化 時代로 표현되는, 尖端科學의 時代로서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분야에서도 尖端科學技術이 적용되어, 컴퓨터 등 각종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는가 하면 産業化, 機械化에 따르는 새로운 建築技法의 出現등 종래 建築士의 創作技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일층의 연구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회원들의 내부적 결속을 통한 技術開發과 情報을 共有하는 방식을 주축으로 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을 비롯한 關聯分野 育成策 마련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우정을 나누며 共同體의 一體感속에 화합의 場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와 욕구를 한데 묶어 社會的 責任과 역할을 스스로 다짐하고 꿈을 펼치며 21世紀를 향한 造形創作 藝術人으로서의 位相을 한 次元 높이는 契機를 마련합시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雲 東

致辭



오늘 全國 建築士大會에서 吳雲東 회장을 비롯한 全國 建築士 여러분과 金泳三 民主自由黨 대표최고위원, 國會建設委員會 金鎔采 委員長, 그리고 많은 내빈을 모시고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大韓建築士協會는 創立한 후 25個 星霜을 지내면서 이제 3천6백여 회원을 포용한 建築界의 代表的 職能團體로 成長하였고, 전국규모의 성대한 행사를 開催할 수 있도록 발전한 모습을 볼 때 그동안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勞苦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致賀를 드립니다.

建築士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의 특성은 技術과 藝術의 複合體로서 건축물의 창조과정에서는 合理性·合目的性·經濟性이 요구되는 동시에 創意性과 美觀 내지 文化性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創造되어 全國 各地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국민의 귀중한 生活空間을 構成하는 동시에 國民生活의 質의 水準을 決定함은 물론, 우리 時代의 文化수준에 대한 尺度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建築士 여러분의 社會的·文化的 역할은 실로 莫重하다 아니 할 수 없으며, 여러분께서는 건축물을 하나하나 設計하고 監理할 때 이러한 使命과 責任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地方化·自律化 그리고 國際化라는 時代的 흐름에 副應하고, 社會的·文化的 意義가 클 뿐 아니라 國民생활과도 直結되어 있는 건축행정 분야에서 公正性과 創意性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現行 建築法을 이미 全面的으로 改正한 데 이어 同法施行令의 改正을 서두르고 있으며, 아울러 現行 建築士法令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點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一線行政機關의 慣行도 國民便益爲主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도록 推進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建築界가 當面하고 있는 과제로서는 政府의 200萬戶 주택건설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 및 자재의 절약과 공사비의 절감 등을 기할 수 있도록 住宅生産의 工業化를 위한 “技術革新”을 圖謀함과 아울러 對外市場 개방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와 시공분야의 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國際 競爭力”을 提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多角의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建築士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建築士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와 一角에서는 도덕성과 법질서를 무시한채 자기 목소리만을 높이는 것이 마치 民主化인양 무질서와 자기 주장이 亂舞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부는 현재 社會秩序를 바로잡기 위하여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直視하시고, 建築士 여러분께서는 社會中樞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社會活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大會는 建築士 여러분이 團合을 圖謀하고 技術을 習得하는 기회가 됨과 더불어 겸허한 自己反省과 가임층의 奮發의 契機로 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이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結集시켜 自淨의 노력을 決然히 함으로써, 建築士 여러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한층 더 高揚됨은 물론 건축계가 한 段階 跳躍하여 建築文化 暢達에 새로운 轉機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주제를 “21世紀를 向한 建築”으로 設定하고,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희망의 2천년대 건축문화의 基盤을 마련하고자 여러분이 衆智를 모으겠다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未來指向의인 기도와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번 대회가 보다 책임있고 성숙한 모습의 建築士像을 보여주는 계기로 昇華 되기를 바라고, 건축사 여러분의 앞날에 끝없는 繁榮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한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만 致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建設部長官

李 鎮 高



전국적으로 劃一化되어 있는 規制爲主의 建築關聯 法令이나 制度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吳震東 회장님, 그리고 국회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李鎭高 建設部長官 또 국회에서 金鎔采 建設委員長, 그외 金沄恒 議員, 辛卿植 議員, 그의 많은 貴賓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盛況裡에 이러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建築士協會가 창립된지 四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나라 經濟 發展과 建築文化 暢達을 위해 수고해 오신 여러분의 勞苦에 진심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혼란한 時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커다란 責任을 執權黨의 代表最高委員으로서 느끼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民主自由黨은 이제 흐트러진 民心을 收拾하고 國政을 더욱 效率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民主, 繁榮, 統一이라는 우리 당의 이념과 목표를 착실히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北韓이 유엔 加入 의사를 밝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推進해온 北方外交政策의 성공으로서 커다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結實이라고 評價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곧 실시될 廣域識會 選舉는 본격적인 住民自治時代를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民主主義와 地域社會 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基礎議會 選舉에서 建築士여러분들이 多數 진출하신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地域發展에 있어서, 또한 建築界의 균형있는 發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公職者의 紀綱을 확립하여 不條理 誘發要因을 없애 나가도록 할 것이며, 꾸준한 民主化와 改革으로 사회 正義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黨은 各種 民生問題를 해결하고 국민여러분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民主化와 地方化 時代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劃一化되어 있는 規制爲主의 建築關聯 法令이나 制度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建築士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高度産業社會 發展에 따른 建築業界의 尖端科學技術 發展과 또한 이것을 活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 創造되는 建築物 하나 하나는 우리나라 文化의 尺度가 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며, 쾌적한 國民 生活 環境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앞장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健闘과 또한 建築士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民主自由黨 代表最高 委員

金 泳 三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建築法令의 改正에 最善의 勞力을...



오늘 大韓建築士協會가 개최하는 '91년도 全國建築士大會에 참석하여 吳雲東 회장을 비롯한 建築界 人士들과 全國의 建築士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가 創立된지 四半世紀의 긴 年輪을 쌓아오는 동안 3천6백여명의 회원을 포용하는 실로 刮目할 만한 發展과 자랑스러운 傳統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經濟發展과 住居生活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建築分野 職能團體로서 맡은바 임무를 유감없이 수행해 온 것은 오로지 建築士 여러분의 團結된 힘과 연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귀 협회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의 勞苦에 진심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같은 큰 대회를 개최하여 建築界가 21世紀를 향하여 追求하여야 할 方向과 目標을 設定함은 물론 地方化·國際化·開放化의 시대조류에 따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대회의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친애하는 建築士 여러분!

建築物는 바로 우리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 시대의 거울로서 한나라의 文化水準을 재는 척도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歷史的, 文化的 遺産으로서 후손에게 길이 전승되는 有形의 文化財입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현시대의 전국 곳곳에 세워지는 건축물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라 생각될 때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莫重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문화적 역량과 식견으로 다음 世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자랑할 만한 건축물의 창조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韓國建築의 位相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建築士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회차원에서 지난 第254回 臨時 國會時에 정부가 제출한 建築法改正 法律案에 대해서 建設委員會에서 이를 深度있게 審査하여 政府原案을 수정해서 의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건축법을 全面 개정하게 된다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高層化, 大型化되면서 建築 技術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地方自治 時代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建設委員會는 앞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각종 건축법령 대해서는 國民 便益 增進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建築士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가 인정하는 公人의 위치에 서서 無形에서 有形을 창조하는 專門職業人이라는 透徹한 사명감을 가지고 建築士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構想하고 실천함은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의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大會가 建築士 여러분의 힘찬 전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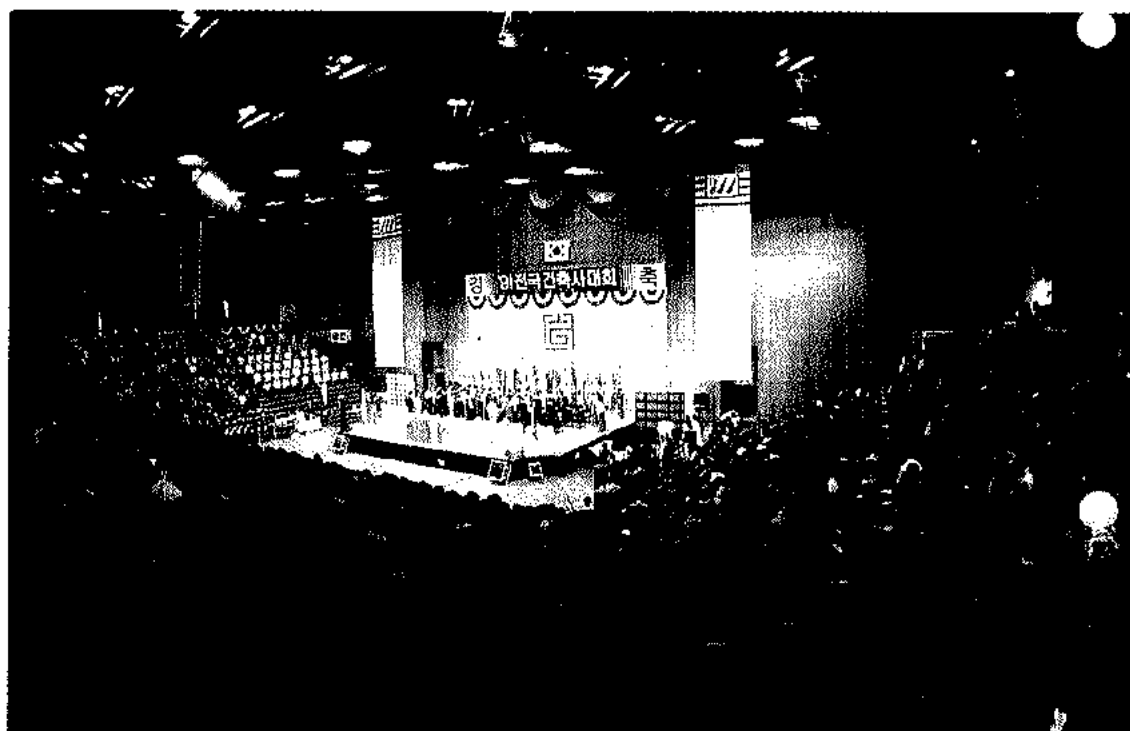
國會建設委員長

金 鎔 采



사진으로 보는

'91 全國 建築士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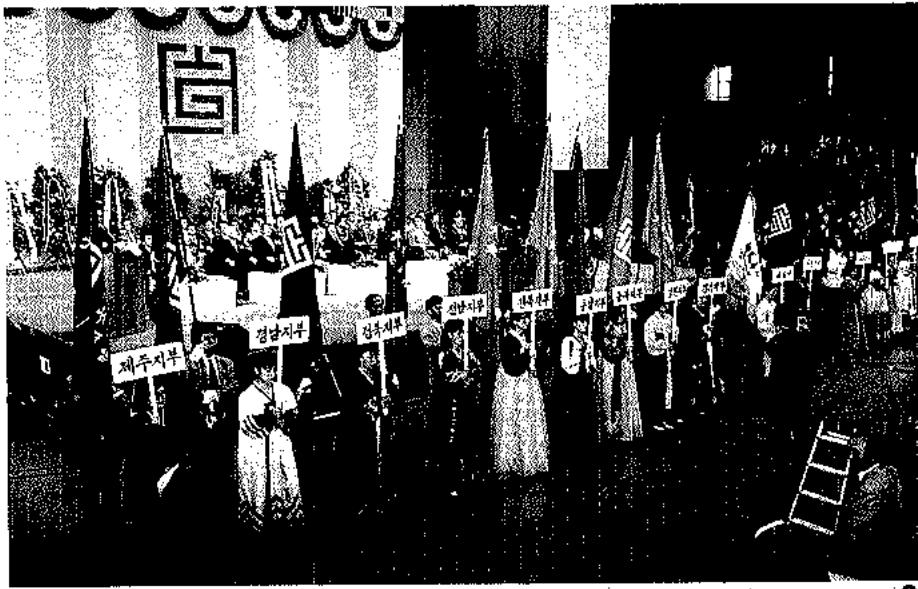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한 건축”이라는 主題아래 建築士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協會를 중심으로 한 일체감 조성과 화합 및 건축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全國建築士大會가 지난 6월3,4일 양일간 이진설 건설부장관,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김용채 국회건설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전국 3천6백여 건축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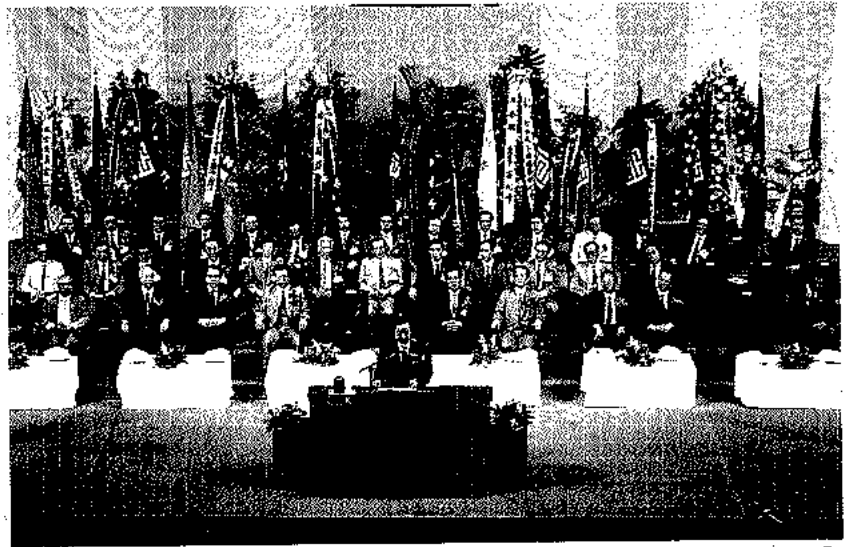
21세기의 先進國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文化의 創造者로서의 建築士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人間環境과 새로운 미래기술을 모색하는 場으로서 특별강연 및 연수뿐 아니라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대회 개회식에서 吳雲東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회 의의를 설명하고 참다운 건축문화 부흥을 위한 과제로서 건축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지방화에 적합한 건축제도의 정착노력, 첨단과학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 등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의 의지와 욕구를 한데 묶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다짐하고 꿈을 펼치며 21세기를 향한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





- ① "21세기를 향한 건축"을 모색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자로서의 건축사의 길을 모색한 '91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식 전경
- ② 전국의 3천 6백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최사를 하는 오운동 회장
- ③ 전국 3천6백여 회원 일동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④ 대회를 끝으로 하여 전국 회원들의 화합을 상징하듯 본부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기가 입장, 우의와 정전을 다짐하였다.
- ⑤ 대회장에는 정부 및 국회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한건축학회, 한국주택사업협회 등 각계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참석, 축하하였다. 사진은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통해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하는 모습
- ⑥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된 건축관계업 토론회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大會참석 내빈

이진설 건설부 장관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김용재 국회건설위원장
 김운환 국회의원
 신경식 국회의원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용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류근창 한국주택사업협회 회장
 이동락 대한설비공사협회 회장
 박 승 전건설부 장관
 권태문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허명재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강훈 충북대 건축공학과 과장

◆축하 화환 접수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
 이인구 국회의원
 최이호 국회의원
 윤도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허 석 중소주택사업자협의회
 중앙회 회장
 변봉덕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석강봉 (주)금강 대표이사
 유순홍 세봉특수산업(주)대표이사
 조학준 세기산업기술(주)대표이사

'91전국건축사대회를 마치고

金榮洙 / 대회집행위원장

1. 文化와 創作의 나라, 國民위에 퍼고

'91전국건축사대회의 환성과 열기가 아직도 가슴과 귓전을 울리는 듯 하다.

지난 6월 3~4일 이틀간에 걸쳐,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건축사대회는, 그야말로 감명깊은 일대 파노라마가 아닐 수 없었다.

전국의 건축사가 한 자리에 다 모였다는 그 엄청난 質量的 의미 뿐만 아니라, 國政의 고위책임자와 귀빈들의 면모에서 더욱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대회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홍보효과와 성과소득이 실로 컸기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건축사가 건축문화와 예술창작의 주역임을 세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사협회가 국가와 민족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창조적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2. 대회주제와 건축의 비전, 「21세기를 향한 건축」

이번 대회의 主題는 「21세기를 향한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의 비전과 차원을 한 단계 앞서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모두였다.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기를 맞아 世紀末의 급변상황에 대응하면서, 21세기의 선진조국과 건축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 보고자 함이었다.

주제의 성격상 미래지향적이고 광범위한 범주의 대상이어서, 짧은 시간으로는 무리하고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출발과 준비를 위한 問題點의 제기와 거론에는 큰 효과와 의미를 남겼다는 평들이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건축을 성찰하고 또 관망해 보는 바음의 여유 또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화합과 열기의 한마당 · 건축사의 밤

15개 시도지부의 장기자랑과 경품권 추첨은, 뽀빠이의 사회춤에 웃음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농도질은 즉석코미디의 연출과 무대를 압도한 흥겨운 국악공연은, 忙中閑을 즐기는 우리 건축사들의 열기와 참모습을 보여준 밤 한때였다. 한껏 준비한 무대와 배경장치 그리고 대회장의 장식들은 조명을 받아 찬란하고, 경북지부의 장기자랑 우승과 부산회원의 승용차 당첨 때는 악단의 밴드소리와 함께 대회장은 떠나갈 듯한 요란함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잊고 싶고, 서로들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짧은 밤이었다.

4. 과거와 미래의 架橋 · 연수교육

대회주제에 따른 특별강연은 「현대인의 적응위기와 건설인의 자세」였다. 朴昇 전건설부장관께서 해박한 연구지식과 행정경험을 살려, 오늘과 내일의 문제와 과제들을 명쾌한 논리로 역설한 명강연이었다.

CAD전사와 함께 연이틀간 멀티비전을 가동시켜 대회와 교육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사무소업무의 전산화와 협회차원의 지원역할까지 제시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건설부의 건축행정방향에 대한 것도, 도시의 환경과 색채에 관한 것도 좋은 강좌였지만, 내일의 전통건축과 풍수지리설의 미래적 접목에 대한 이색강좌도 흥미와 관심의 집중이었다.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짚어보는 충분한 가교적 역할을 한 연수교육이었고,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명확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5. 「民主와 合理」의 한목소리 · 법개정 토론회

언제나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을 토론회에 올린 것은, 한창 추진중인 정부차원의 작업과 때를 맞추어 贊反과 攻防을 거친 나름의 結論을 도출하고 成事시키자는 목적에서였다.

法制委員會의 건의안에 학계의 의견과 당국자의 긍정적 언급이 있었고, 회원들의 의견도 활발히 개진된 열띤 분위기가 3시간 이어졌다. 民主的인 건축사법과 合理的인 건축법은 創作의 正道와 國民의 便益을 위한 지름길이기에, 대회와 교육의 말미를 전회원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그 값진 회나래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6. 건축의 현신—건축사의 위상을 생각하며

한마디로 '91전국건축사대회는 건축의 사회적 獻身과 21세기를 향한 건축사의 位相을, 대외적으로는 세삼 알리고 대내적으로 다시금 가다듬어보는 시의적절한 壯舉였다고 믿는다.

21세기의 선진조국에서 화려한 건축의 꽃을 마음껏 피워야 할 우리 건축사들은, 이번을 거울삼아 계속 이어질 전국대회를 통해서도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창조적 문화지성임을 마음속 깊이 여며야 할 것 같다.

다시금 우리 모두, 보람과 희망의 21세기를 펼쳐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두손들어 지부해 본다.

참여와 긍지의 건축사,

성공과 자랑의 전국대회에 고개숙여 감사드리면서

설악 리조트 레저타운 / 柳春秀	20
삼성첨단기술연구소 / 金昌壽+朴昇+韓相默	23
영운동성당 / 曹龜鉉	26
퇴촌 S씨 주말주택 / 閔承烈	28
월곡동 J씨 주택 / 鄭道聖+삼예종합건축	30
실내장식가의 주택 / 董政根+朴研心	32
북아현동 K씨 주택 / 宋光燮	34
유림빌딩 / 張基成	36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尹錫祐	38
서울미술관계획안 / 曹建永	40

설악 리조트 레저타운

Solak Resort Leisure Town



대지위치/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52

지역/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9,061㎡

건축면적/1,752.56㎡

연면적/12,280.67㎡

규모/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벽-아이소코트

지붕-아스팔트 원글

지역/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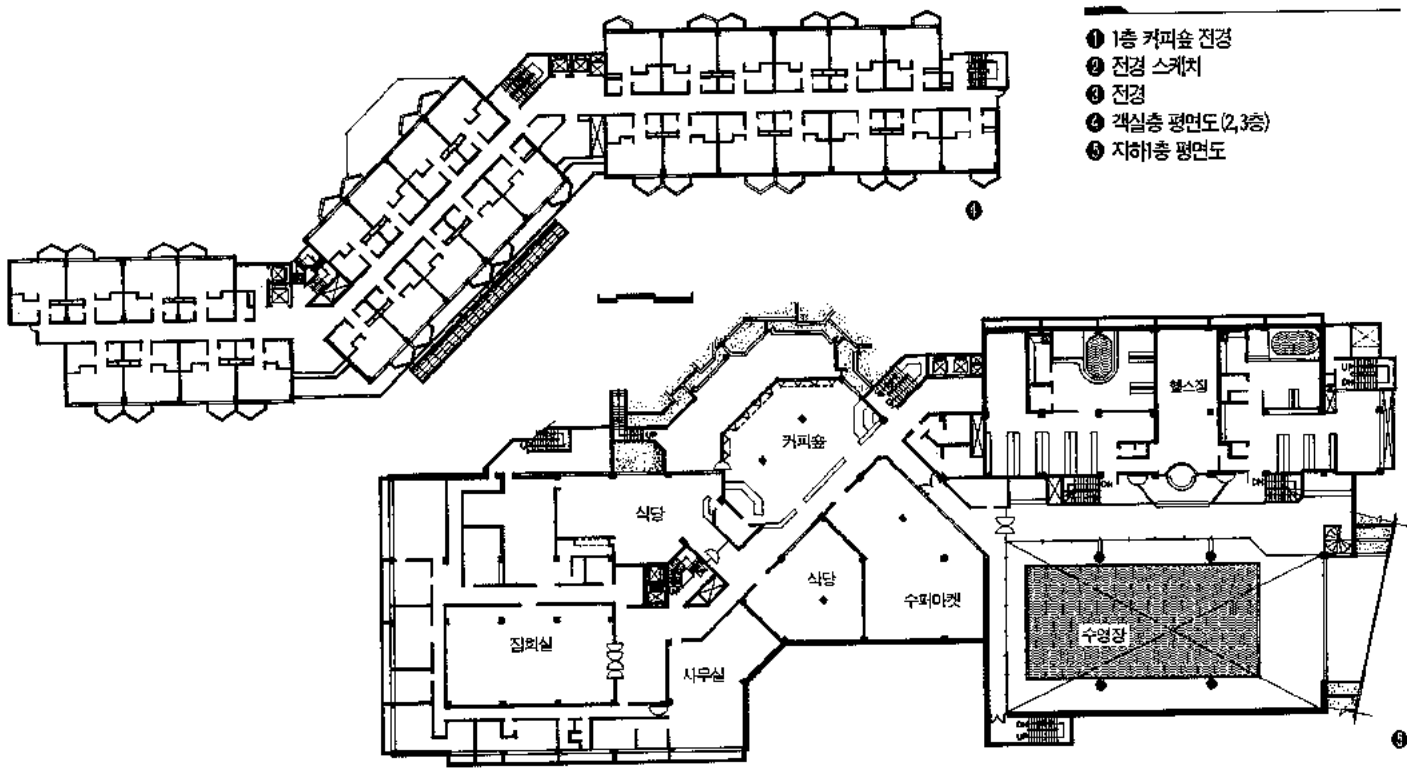


柳春秀/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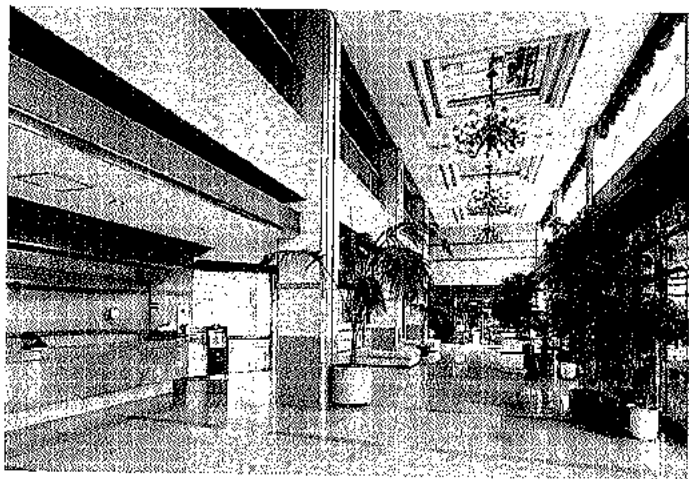
Designed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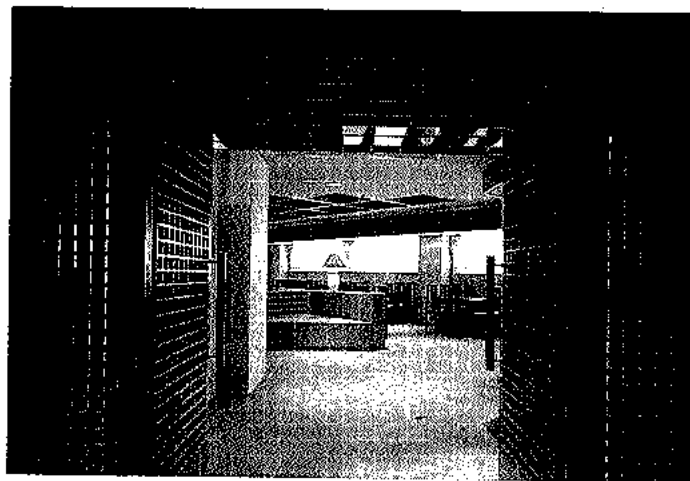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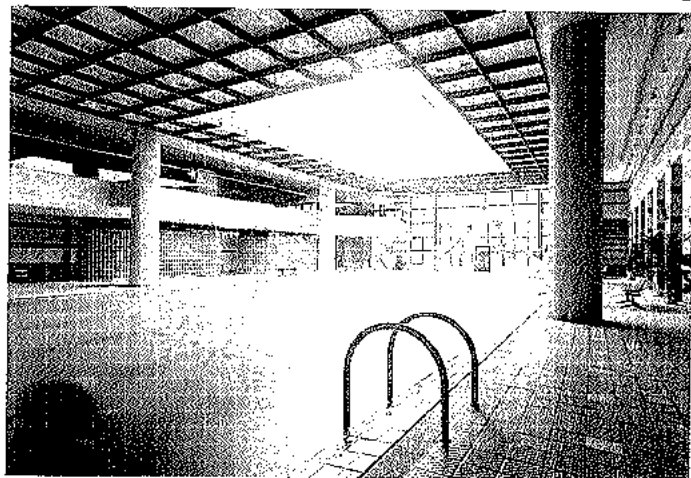
6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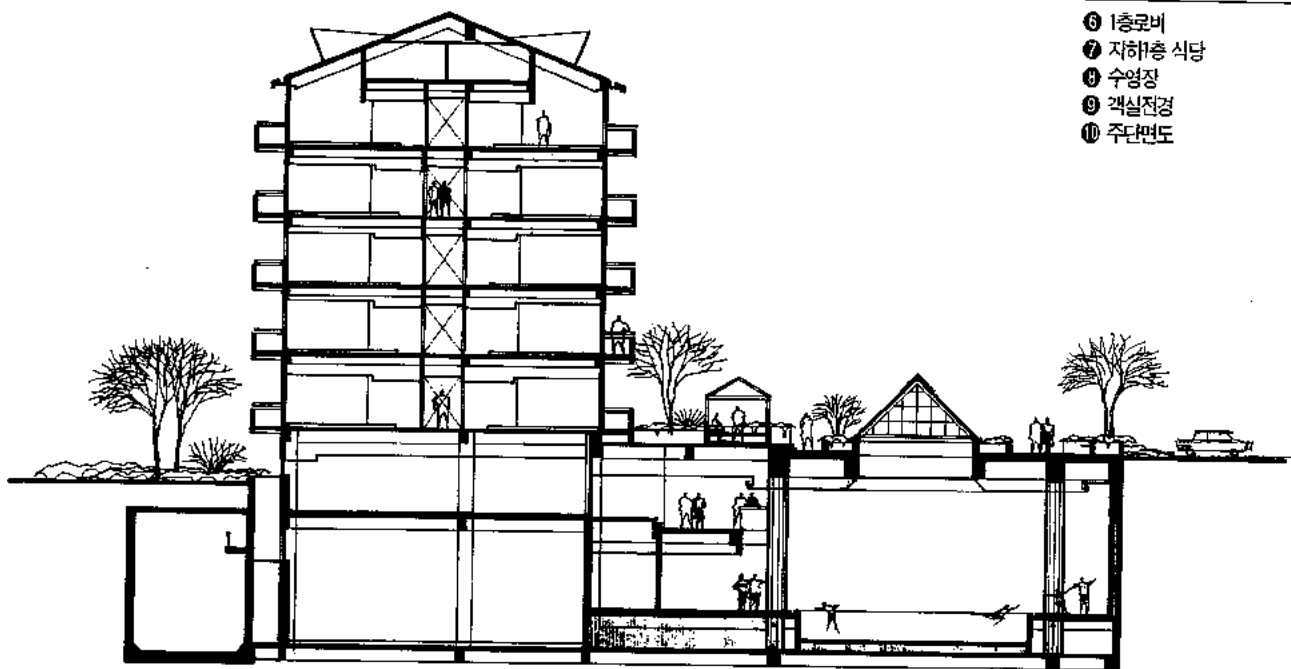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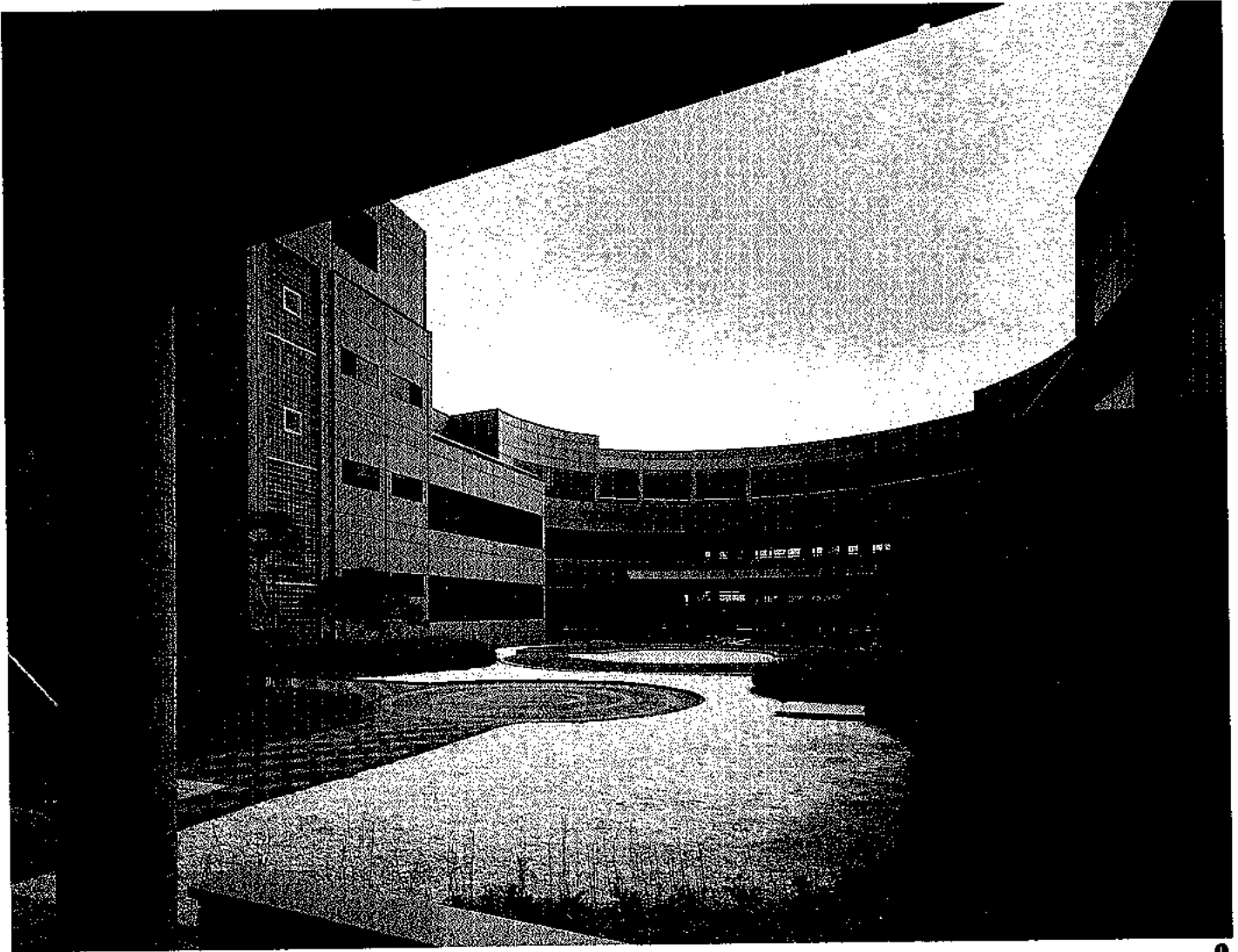
- ⑥ 1층로비
- ⑦ 지하층 식당
- ⑧ 수영장
- ⑨ 객실전경
- ⑩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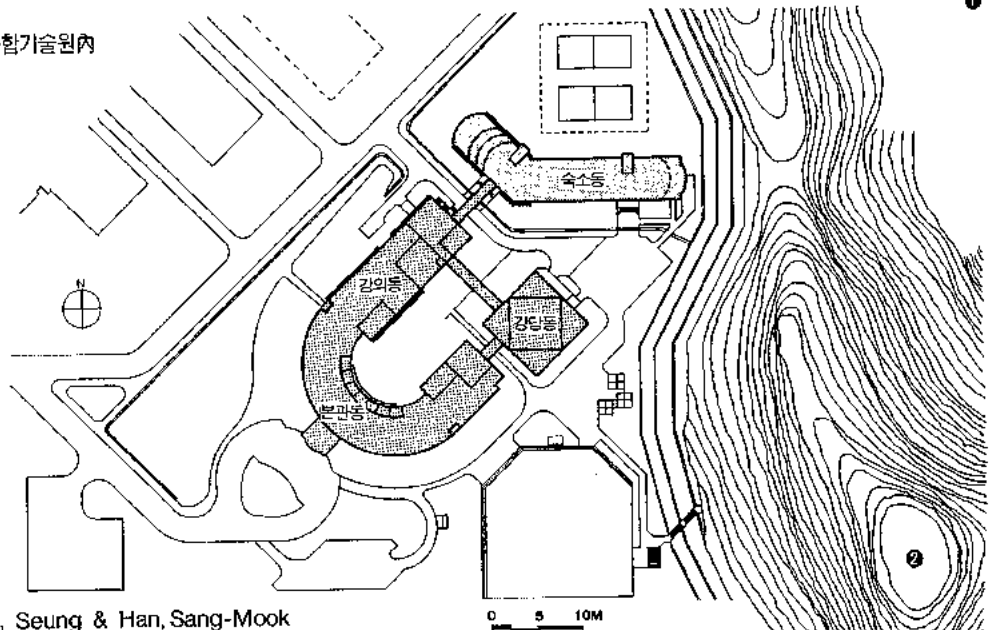
10

삼성첨단기술연구소

Samsung Advanced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삼성종합기술원內
 대지면적/48,429㎡
 건축면적/4,193㎡
 연면적/14,288㎡
 규모/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화강석 물갈기(메탈전식)
 +석재타일(P.C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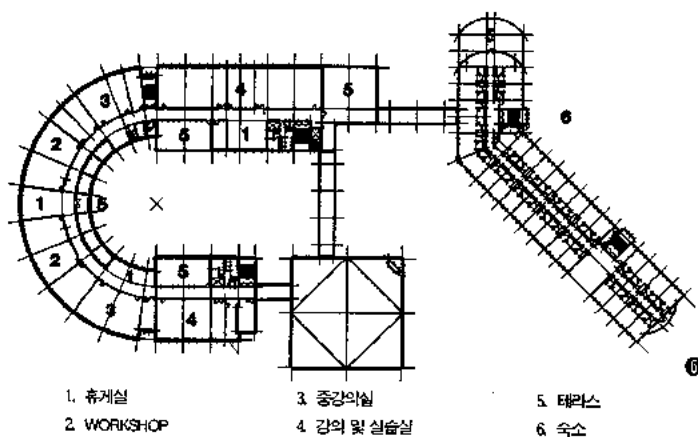


金昌壽+朴昇+韓相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Soo & Park, Seung & Han, Sang-M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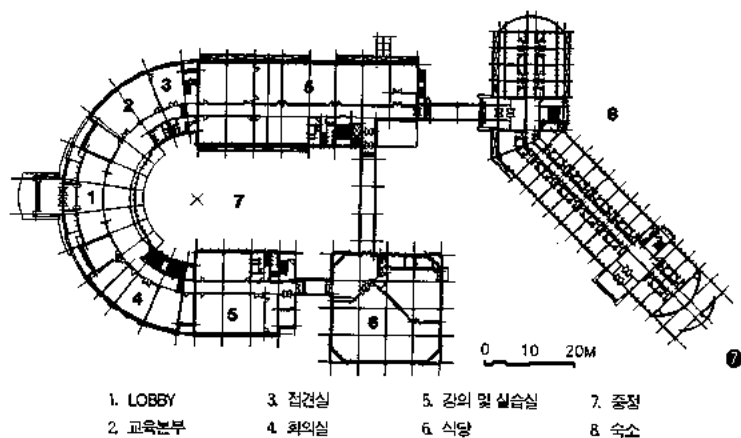
②



⑥



④



⑦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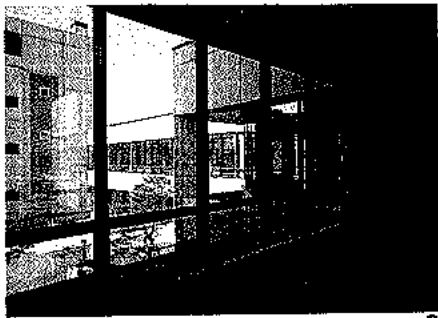
■설계소요

21세기의 첨단기술에 적극 대응하며,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특히 소프트 웨어)과 기술경영인을 육성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본 프로젝트는 착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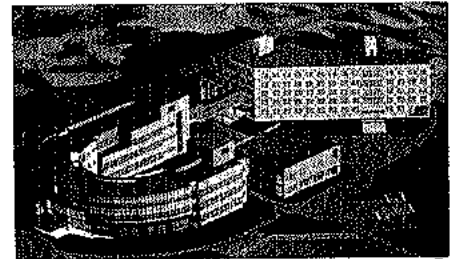
용인에 위치한 대지는 측면에 종합기술원이 있고 후면으로는 작은 구릉이 있다. 이런 주위 여건과 조화되고, 연구소라는 경직된 이미지의 탈피를 위해 기술교육과 자연과의 조화 및 자유분방한 사고의 함양을 배치와 형태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연수동의 주축은 인근 건축물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후면 숙소동은 별도의 축을 부여하여 변화와 조화를 꾀하고, 중앙에는 중정을 도입하여 구심있는 외부 공간을 형성하였다.

연수동의 주출입구를 들어서면 로비에서 중정으로의 탁 트인 시야가 상호 관입하며, 연수동과 숙소동 측면부를 곡면 처리하여 곡선미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복도를 돌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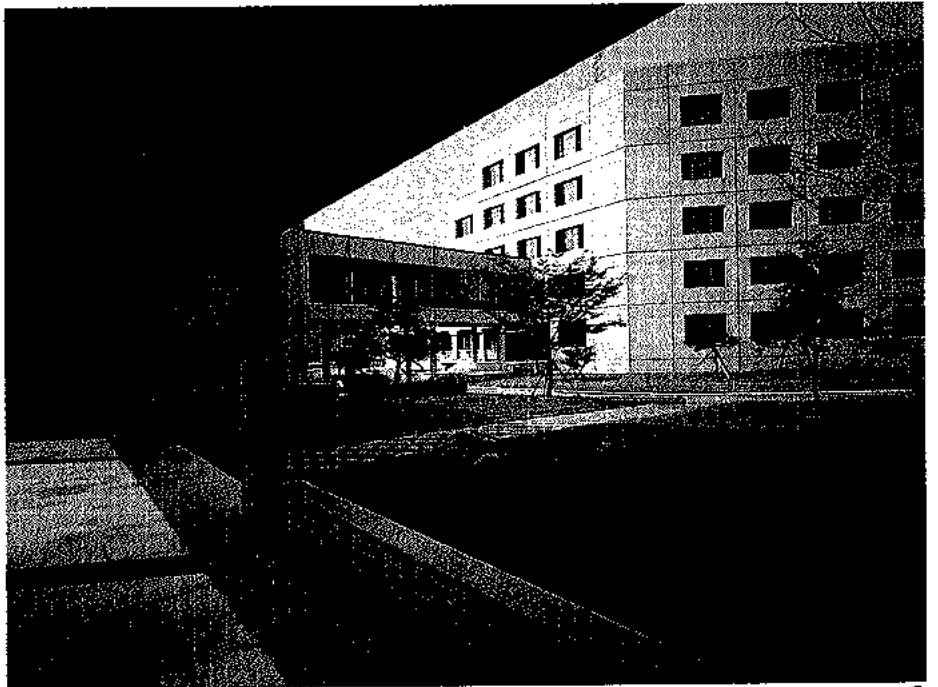
- ① 중정전경
- ② 배치도
- ③ 정면전경
- ④ 본관 로비
- ⑤ 숙소동 전경
- ⑥ 2층 평면도
- ⑦ 1층 평면도
- ⑧ 강당동에서 본 연결통로
- ⑨ 주 출입구 상세
- ⑩ CAD 조감도
- ⑪ 강의동과 숙소동 연결통로부



부로 진입하면 풍부한 양의 자연광이 중복도의 폐쇄성과 단조로움을 탈피시키며 연수시설은 각 과정별로 조닝(Zoning)하여 동선을 단축하였다. 폐쇄와 개방감을 조화시킨 중정 측면의 식당은 별동으로 처리하여 음식냄새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강당은 동선을 고려하여 양 방향의 과선교(Over Bridge)로 연결하였다.

연수동의 한쪽 날개에서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숙소동은 별도의 축을 부여함으로써 연수동과 구분하여 향을 좋게 하였고, 측면부는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외부휴식공간의 계공뿐만 아니라 진입도에서 바라볼 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변화있는 입면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설계 및 시공중에 모든 참여자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진 여러 공간들이 전문인들의 연수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영운동성당

Youngwoon-dong
Cathedral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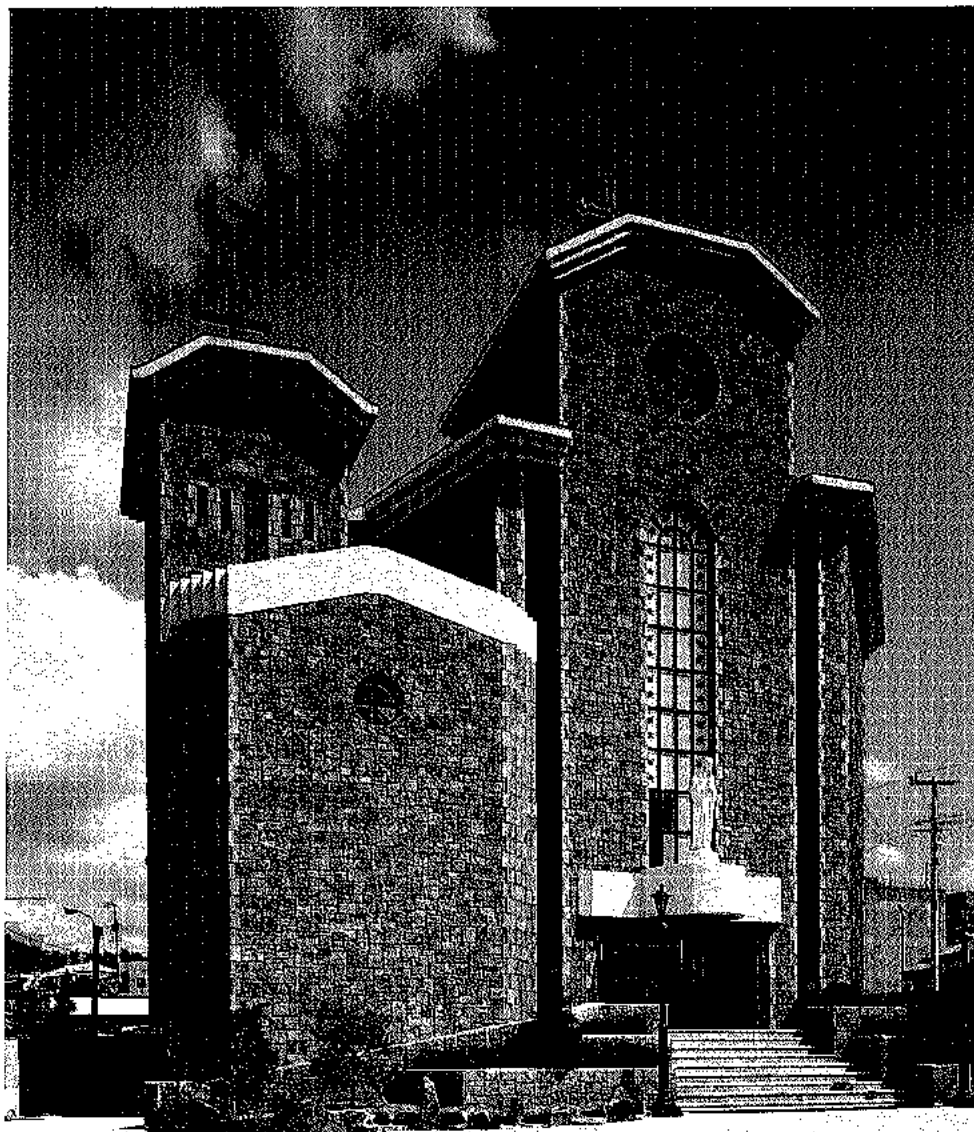
대지위치/충북 청주시 영운동
대지면적/1,426.31㎡
건축면적/544.96㎡
연면적/1,660.62㎡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내·외장/쿼리스톤
건축주/천주교 청주교구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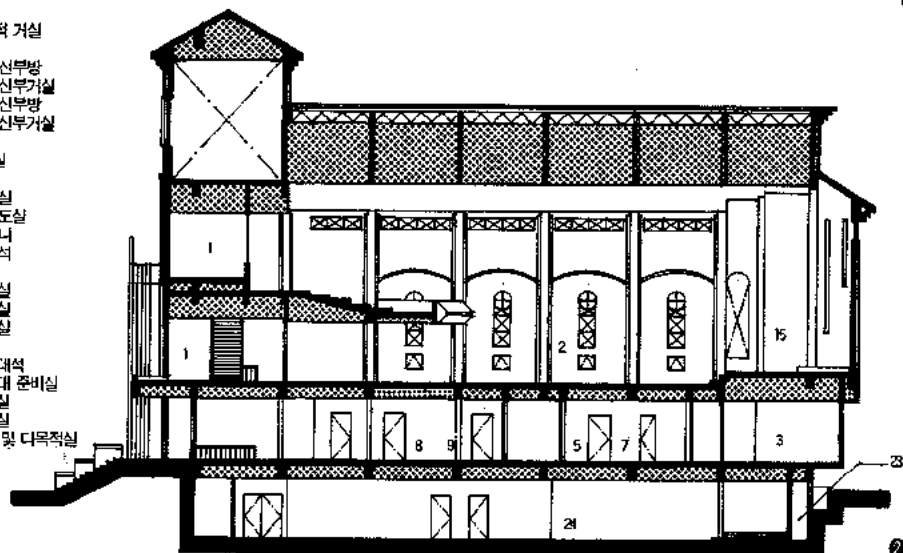
당초 설계를 위탁받을 당시에는 지하 실만이 완성되어 지하에서 미사를 보고 있을 당시였다. 지하실의 폭이 좁아 본당(회중석)의 중앙 통로와 양측의 통로를 제외하면 500석의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양측으로 캔티레바를 돌출시켜 공간 확보를 꾀하였고 외관에 있어서는 지하실에서 건물의 폭이 결정된 관계로 수직선이 강조되게 된다.

경사면 대지에 수직성 건물이 위치할 때 경사면에서 기울어진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점을 교정하기 위하여 본당 현관 부분의 양측에 버트레스 개념의 계단실을 두어 사재의 수직 동선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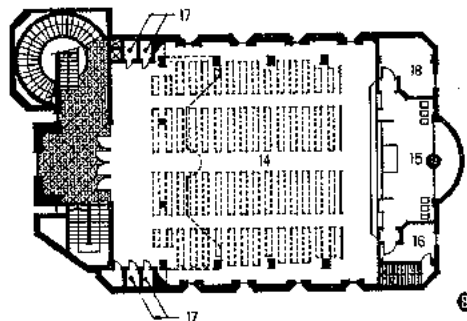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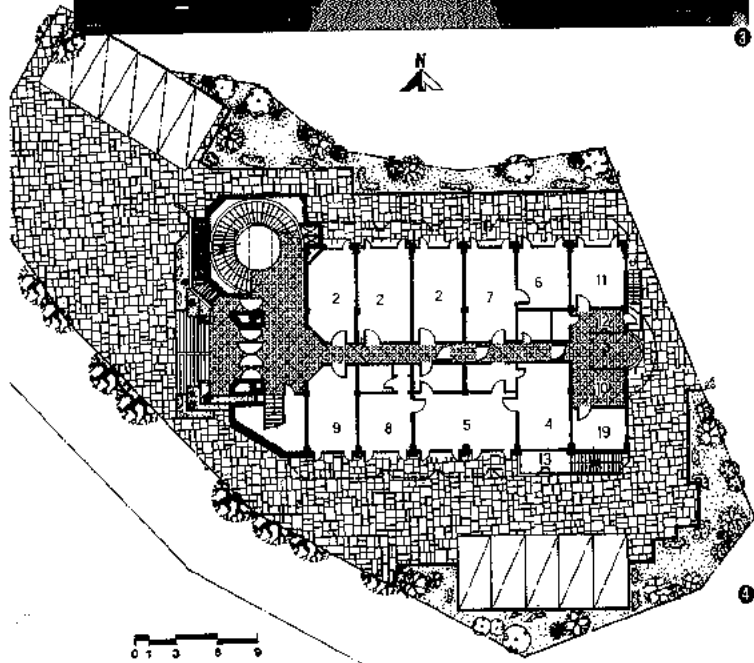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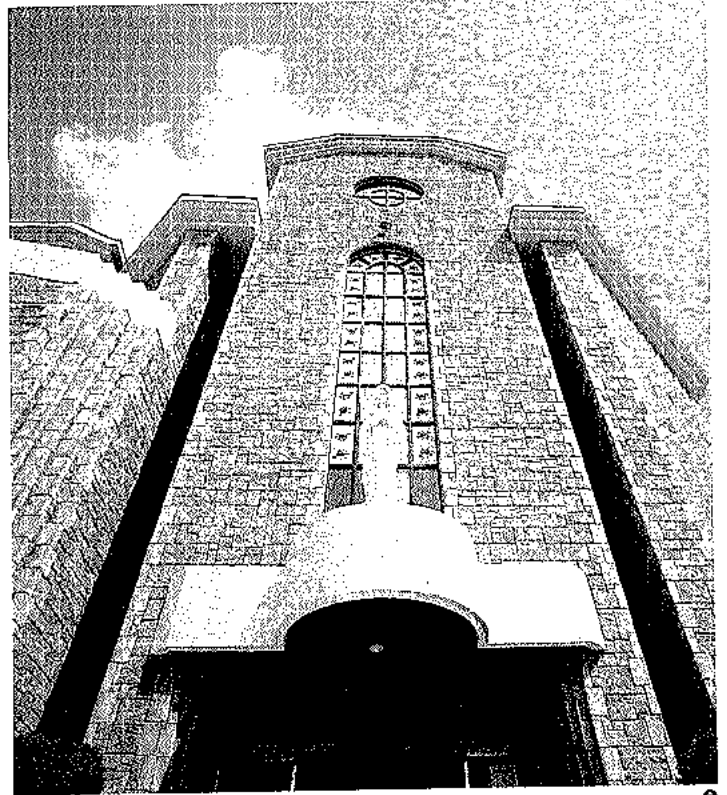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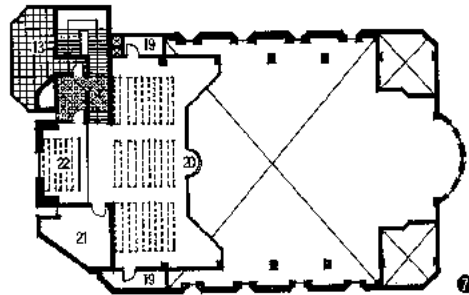
내·외관 재료는 협소한 건물임을 감안하여 같은 소재의 자연 재료로 하되 공사비를 고려하여 흙색(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며,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에 가까운 인조석을 채택하였다.



1. 홀
2. 다목적 거실
3. 식당
4. 주일 신부방
5. 주일 신부거실
6. 보좌 신부방
7. 보좌 신부거실
8. 객실
9. 사무실
10. 주방
11. 용인실
12. 다용도실
13. 발코니
14. 신자석
15. 제대
16. 제의실
17. 고해실
18. 성구실
19. 창고
20. 성가대석
21. 성가대 준비실
22. 유아실
23. 준비실
24. 교리 및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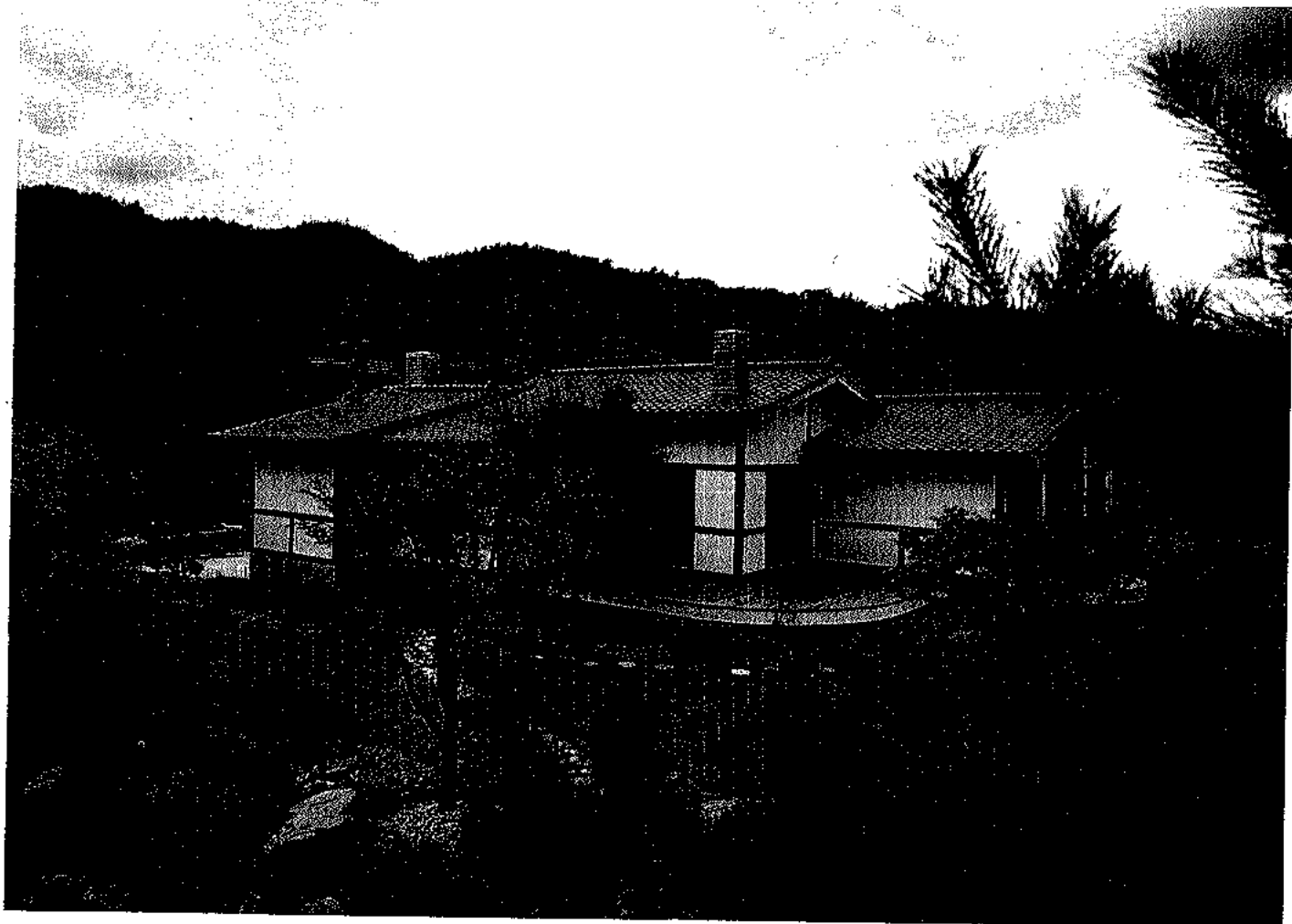
曹龜鉉/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Koo-Hyun



- ① 전경
- ② 주단면도
- ③ 제대전경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⑤ 회중석 전경
- ⑥ 주출입구 상부외벽 상세
- ⑦ 3층 평면도
- ⑧ 2층 평면도

퇴촌 S씨 주말주택

S's Weekend House



1

대지위치/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역·지구/경지지역·자연보전권역
대지면적/397㎡
건축면적/170.74㎡
연면적/188.29㎡
건폐율/43%
용적률/43%
규모/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조적조
외부마감/지붕-스페니쉬 기와 잇기
외벽-조리파트



2

閔承烈/중합건축사사무소 빛
Designed by Min, Seong-Rul



■설계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전원엔 조그마한 집을 짓고 옛 선비처럼 유유자작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건축주의 제의를 받고 계획 부지를 답사하였을 때의 느낌은 이러한 생각을 질실히 느끼게 하였다. 특히, 팔당댐의 물줄기가 흐르는 다리를 건널때면 번잡한 속세를 벗어난 스님의 심정이랄까...

건축주는 주말이나 휴일에 도심 속의 삶에서 벗어나 그 나름대로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위한 장소로서의 주말주택을 원했으며 그러면서도 호화스럽지 않고 지역주민들과의 위화감을 고려한 차분하면서도 소박한 외형을 가진 주택을 원하였다.

때문에 전통한옥에서 풍기는 잔잔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박한 느낌을 주는 외형과 재료의 선택을 근간으로 하여 입면계획을 시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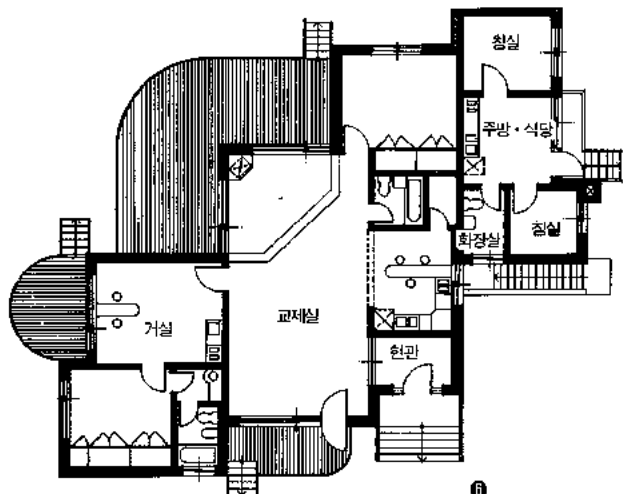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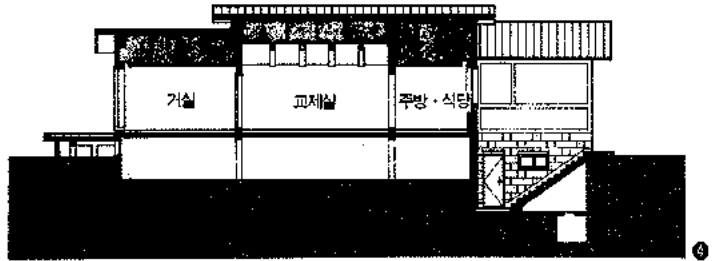
옛전통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하얀 벽면과 그 벽면 사이를 가로지른 육송심벽을 구성한 고전적인 이미지의 유도과 부지 뒷면의 낮은 산과 푸른 하늘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형태로서의 박공지붕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소박한 이미지를 유도하였다.

평면에서는 외부에 면한 출구에 텃마루 형식의 육송테크를 구성하여 준내부 공간을 이용한 내외부의 완충공간을 계획하였고, 건물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의 진입을 유도하여 전통공간의 구성수법에 충실해 보았다.

초기 계획시 건축주 부부만을 위한 전용공간과 외부객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2개층으로 계획하였으나 결국은 주변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1개층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건물이 완성하였을 때 방문기회가 있었다. 남쪽으로 계획된 거실과 부부침실전용거실에서 바라본 전경은 마치 한적한 시골집에서 여름 한때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 ① 전경
- ② 앞마당에서 본 전경
- ③ 출입구에서 본 주택
- ④ 단면도
- ⑤ 교제실 전경
- 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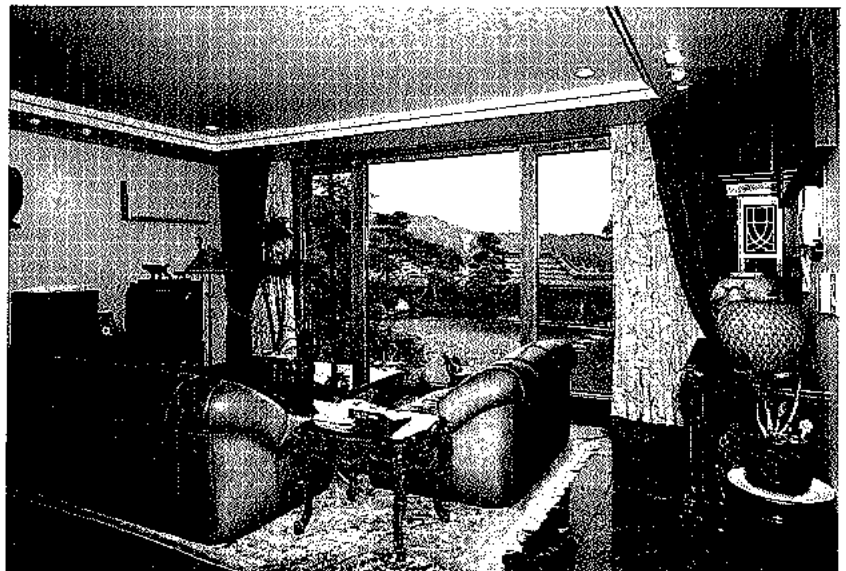


월곡동 J씨 주택

Wolkok-dong J'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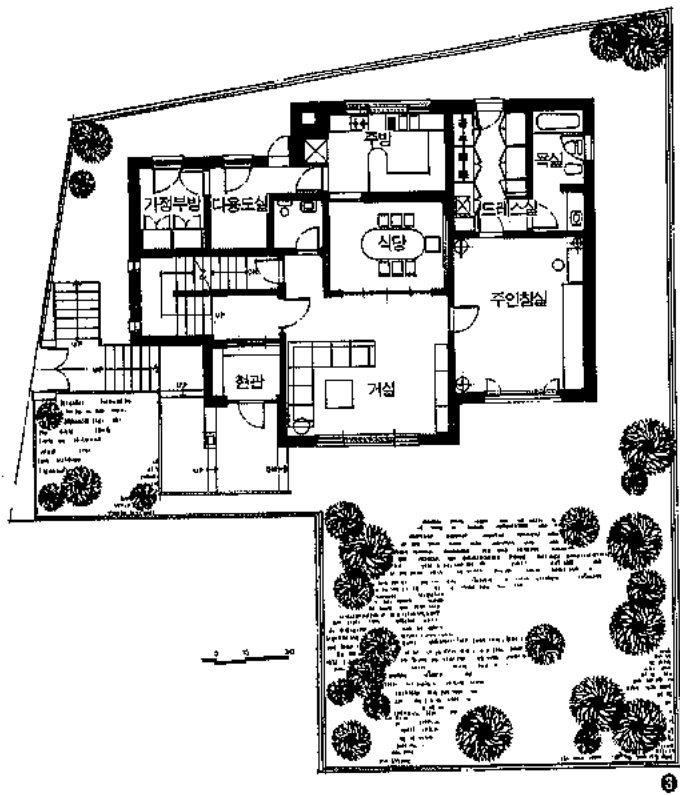


대지면적/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대지면적/417.4㎡
건축면적/191.37㎡
연면적/307.32㎡
1층-151.37㎡
2층-99.63㎡
지하층-56.32㎡
외부마감재/외벽-붉은벽돌
지붕-칼라아스팔트 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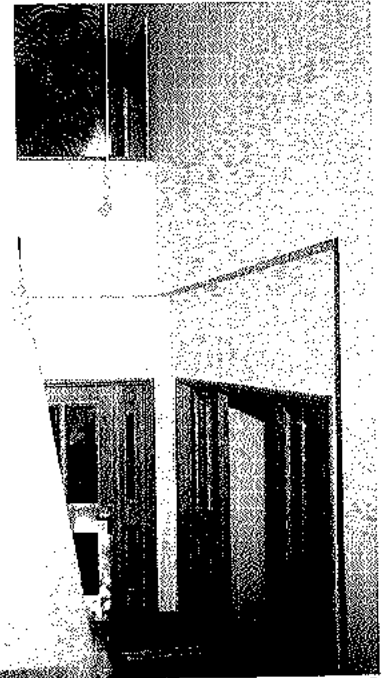


鄭道聖+삼에종합건축

Designed by Jung, Do-Sung & 3Art Archi Group



- ① 전경
- ② 거실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외벽상세
- ⑤ 2층 침실
- ⑥ 현관 및 계단실



설계소요

복잡한 대지형태와 가파르고 좁은 진입로, 어지럽게 존재하는 주변환경은 독특한 매스의 건축형태나 다양한 외관의 텍스처, 실재 공간의 도형적 배치보다는 소박하며 주변과 순화되는 주거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모티브를 현장방문시 설정하였다. 이는 소박한 형태의 조형을 고집하는 건축주의 의사반영이며 주택에도 실내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본인의 의사 결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건축적 접근이 아닌(외향적 어프로치) 개개의 실내공간에 합치되는 전망의 확보 및 수납형태의 가구디자인으로 실내의 계획적 접근(내향적 어프로치)를 채택하여 건축조형의 형태성 연구보다는 많은 실내공간의 실질적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각방에는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가구의 사용을 배제하고, 원경의 조망을 실내로 충분히 유도하도록 실내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이층에 구성된 가족실과 서재의 공간을 도배, 색감, 조명 등으로 위계성을 부여하여 일반적으로 처리되기 쉬운 내용을 조절하였다. 주방의 처리는 주부 동선을 고려하여 주방, 식당, 거실로 연결되는 위계성의 동선하에서 다용도실과 수납가구의 불박이 디자인 등으로 처리하여 공간별로 열림과 닫힘의 연결성 처리가 시도되었다.

진입과 동선의 개념은 접근의 시퀀스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문, 현관의 진입은 정면에서 계단을 끼고 측면으로 이용되는 효과와 현관에서는 이층과 일층이 철저히 분할되는 엔클로저 체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동의 동선은 복도의 용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용도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색감의 개념은 방 이외의 모든 부분은 백색에 가까운 회색 락카로 마감했으며 모든 나무는 가장 밝은 색인 은행나무의 순수한 자연색감을 표현하는 재료표현의 진실성 방식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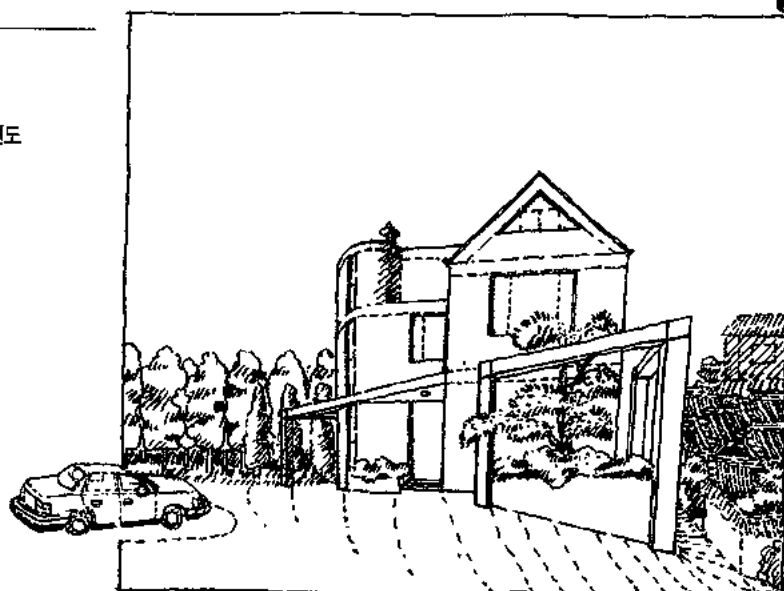
실내장식가의 주택

Interior Designer'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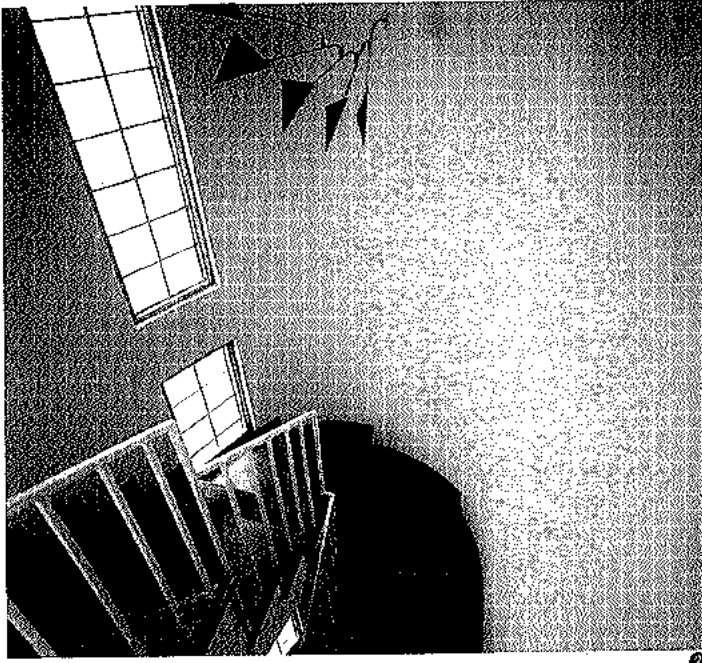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117.4㎡
건축면적/58.54㎡
연면적/190.58㎡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조적조
외벽재료/드라이비트

- ① 전경
- ② 계단실
- ③ 다락방 내부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⑤ 1층 거실



董政根+朴研心/건축사사무소 장원

Designed by Dong, Jung-Keun & Park, Yeon-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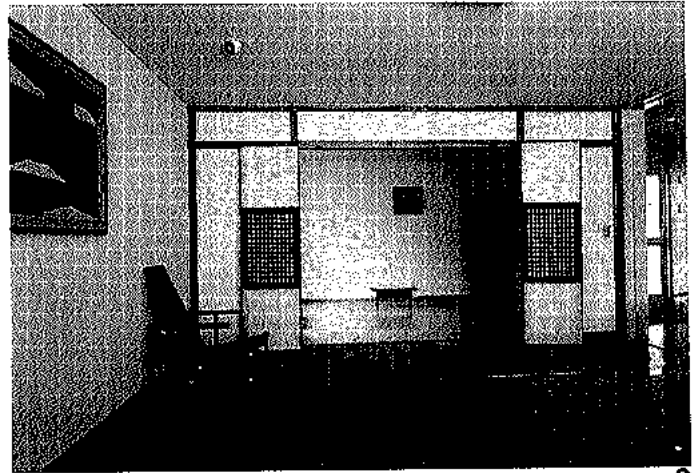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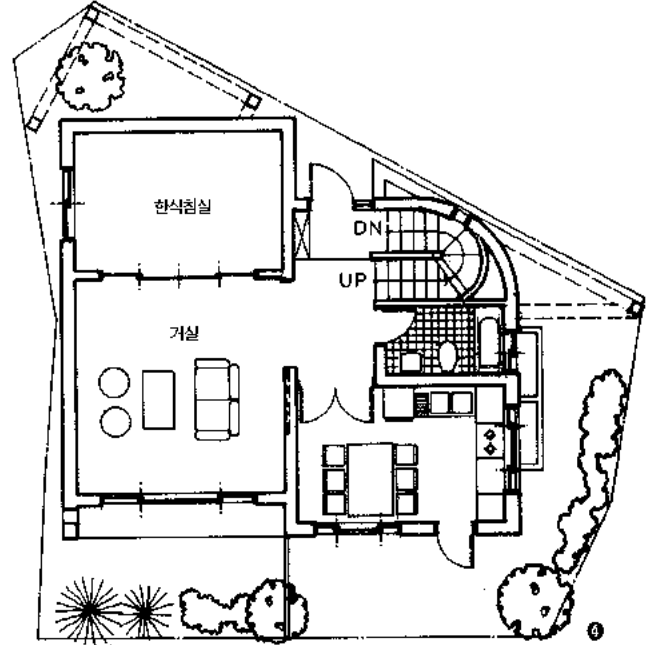
2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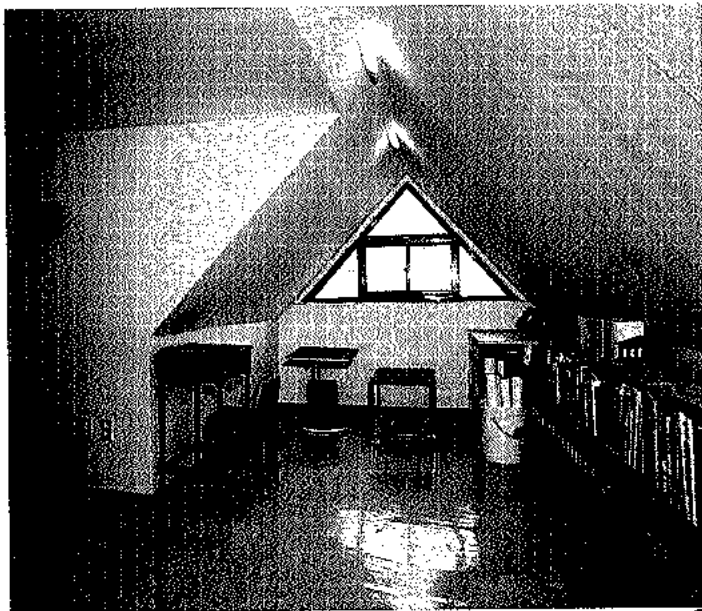
전통한옥이 많이 남아있는 명륜동 주택가의 좁은 대지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어떤 계획안 보다도 힘들었던 대지였다. 건축주 또한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갓 공부하고 돌아온 실내장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그렇듯이 안방과 대청(거실)을 터서 넓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또 소장하고 있는 많은 고가구들이 돋보이도록 실내재료는 캐나다산 호도나무 바닥과 아이보리색 플라스터벽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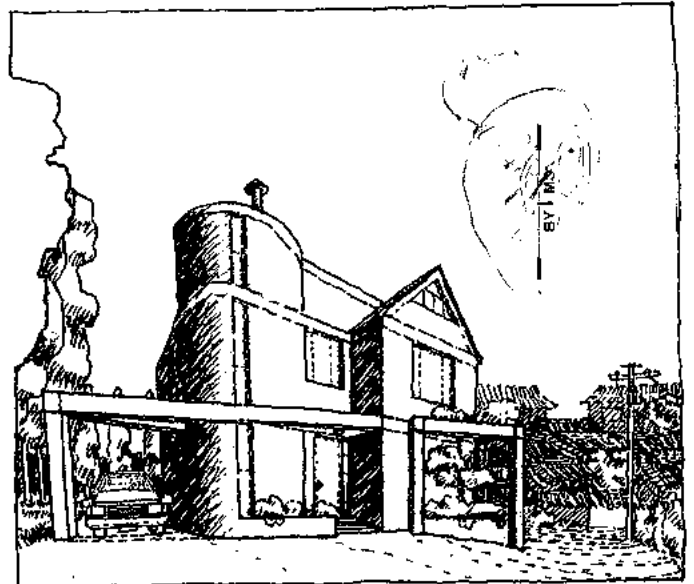
붉은 벽돌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외벽은 벽두께를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드라이비트로 처리했다. 드라이비트의 다양한 색을 이용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선택은 그렇지 못했다. 항상 그렇듯이 모든 선택에서 '용외주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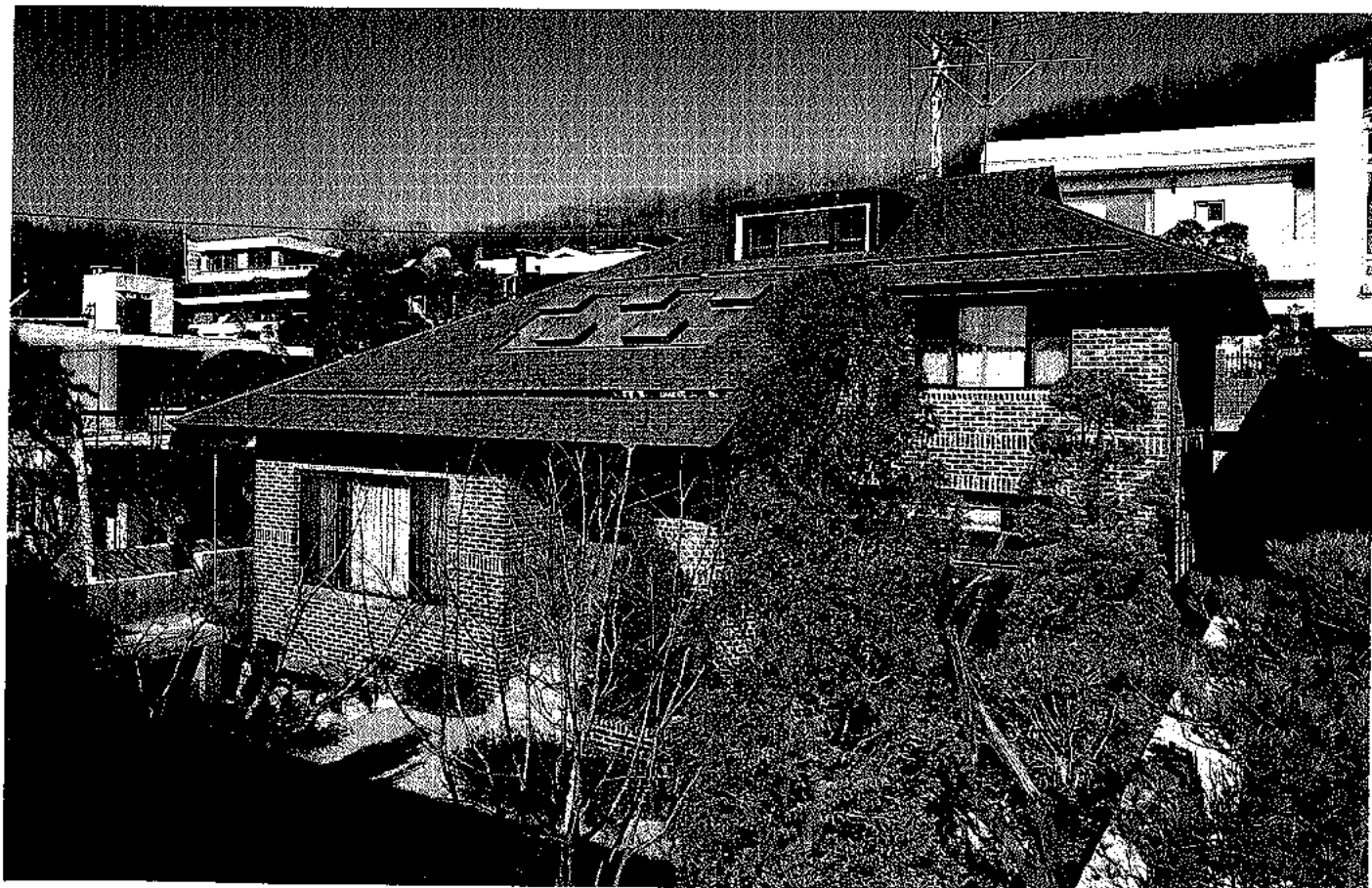


3



북아현동 K씨 주택

Bookahyun-dong K's Residence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지면적/278㎡

건축면적/106㎡

연면적/217.96㎡

지하층-72.23㎡

1층-9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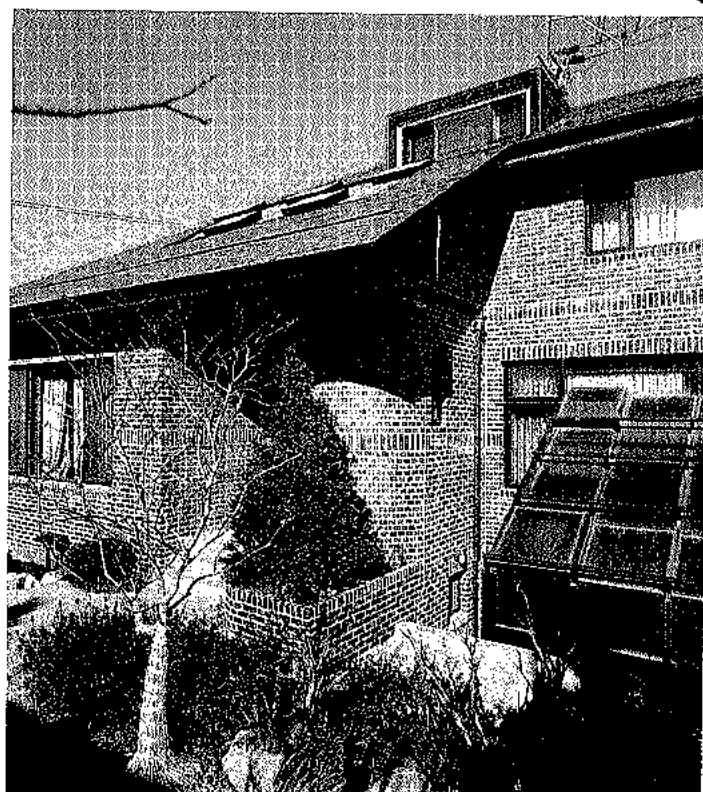
2층-54.12㎡

건폐율/38%

용적률/52%

구조/조적조

외부마감/붉은벽돌치장 쌓기+천연스레이트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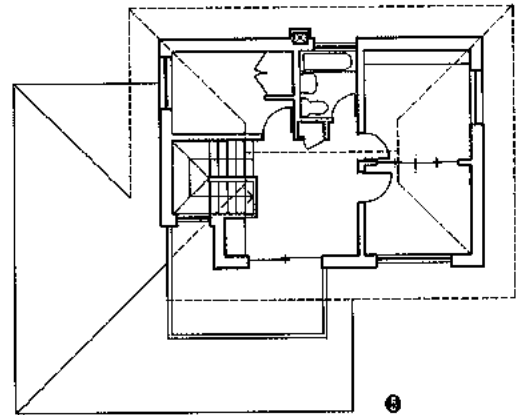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주출입구측 상세
- ③ 2층 내부
- ④ 1층 거실 및 계단실
- ⑤ 2층 평면도
- ⑥ 주진입 계단측 상세
- ⑦ 배치 및 1층 평면도

宋光燮/증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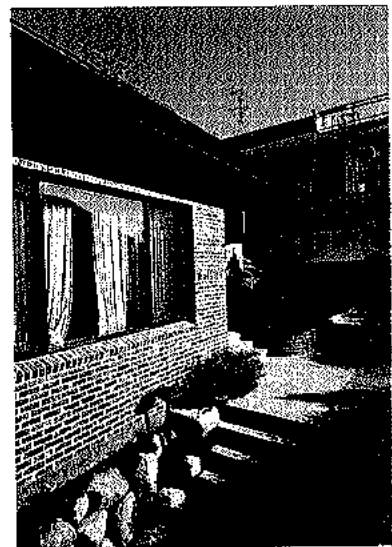
4



5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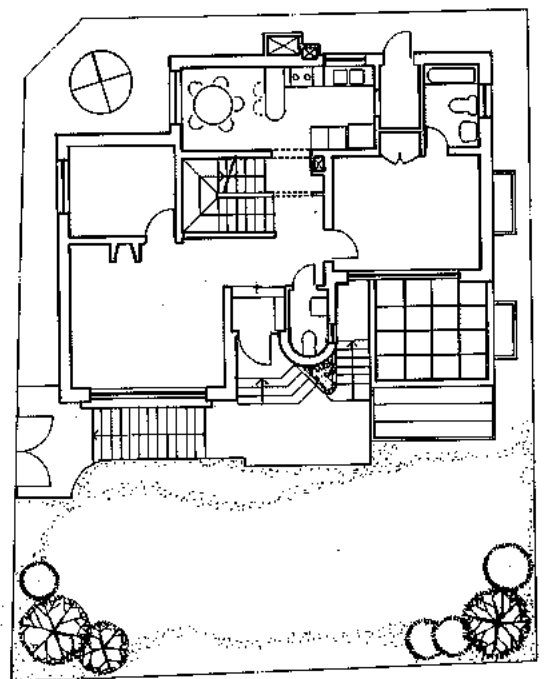
마당-열린마당이라도 땅의 고저차에 따라 그 마당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도로에서의 유입은 오름계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마당에 새롭게 시각적 변화를 줄 수 있다. 난 온실이 있는 선긋된 계단식 화단과 함께 그 마당은 참여보다는 바라보는 시각적 마당으로 바뀌게 된다. 대문에서 계단으로의 연결은 이곳을 그 고저차에 의한 외부와의 시각적 화단으로 인한 방어와 보호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그 과정적 공간은 실내의 통로공간과 연결되면서 점승의 효과와 더불어 공간의 맥락적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집은 3대의 가족이 층별로 나뉘어져 거주할 수 있게 고려되었으며, 건축주의 취향에도 많이 접근된 집이다.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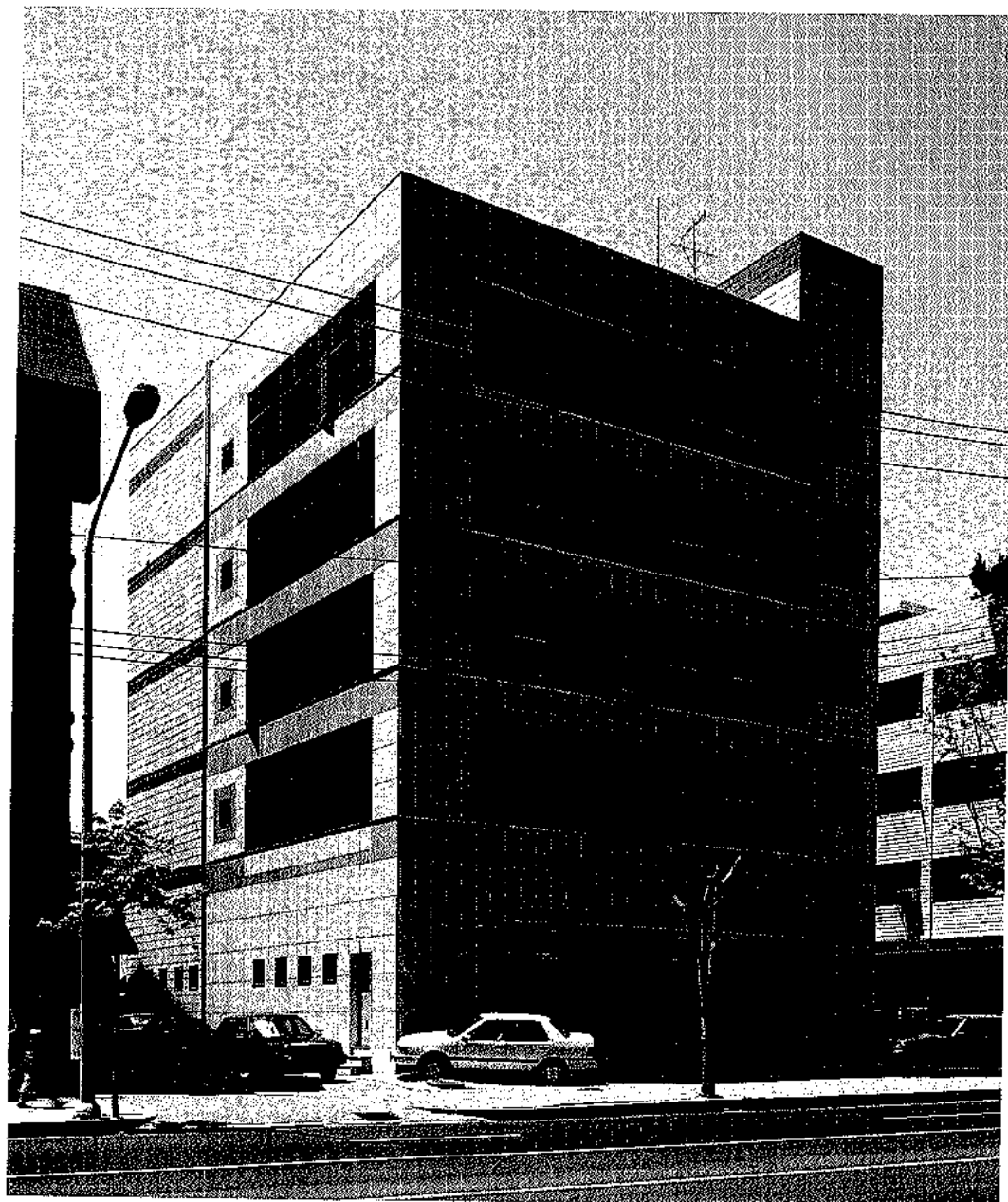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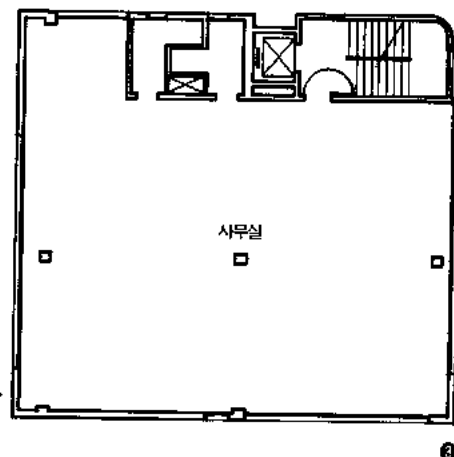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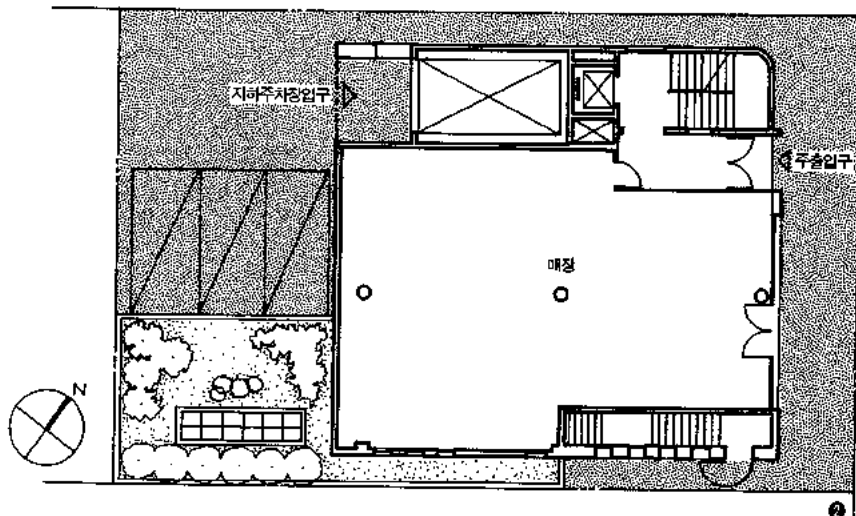
유림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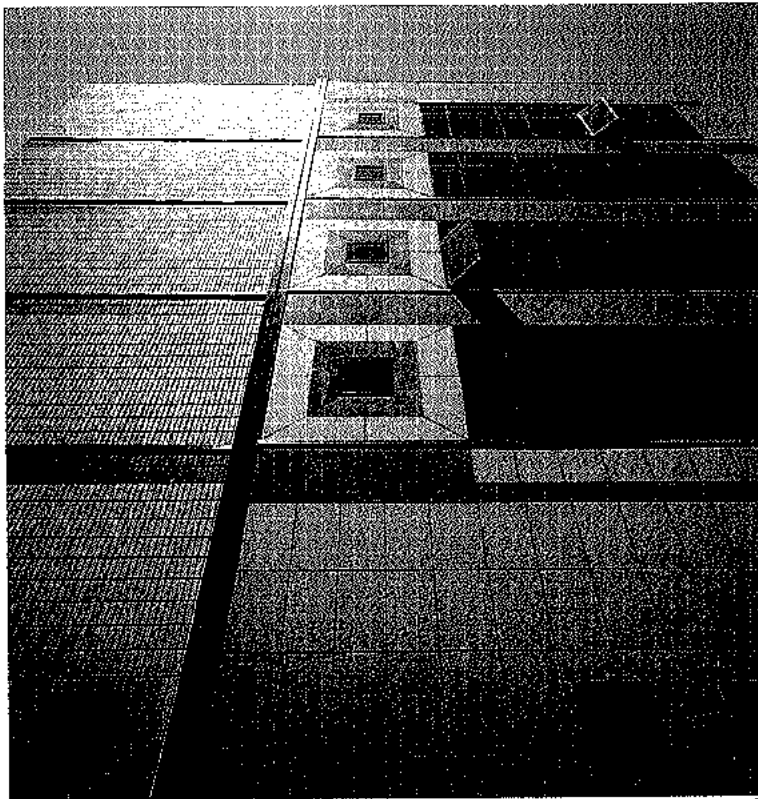
Youlim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6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4종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용도/일반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508.5㎡
건축면적/249.52㎡
연면적/1,923.31㎡
규모/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화강석+석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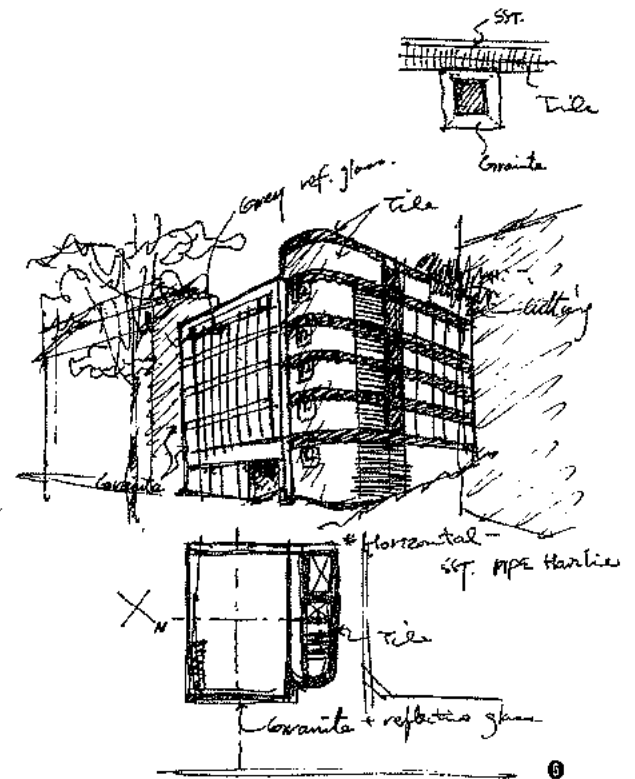


張基成
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Designed by Chang, Ki-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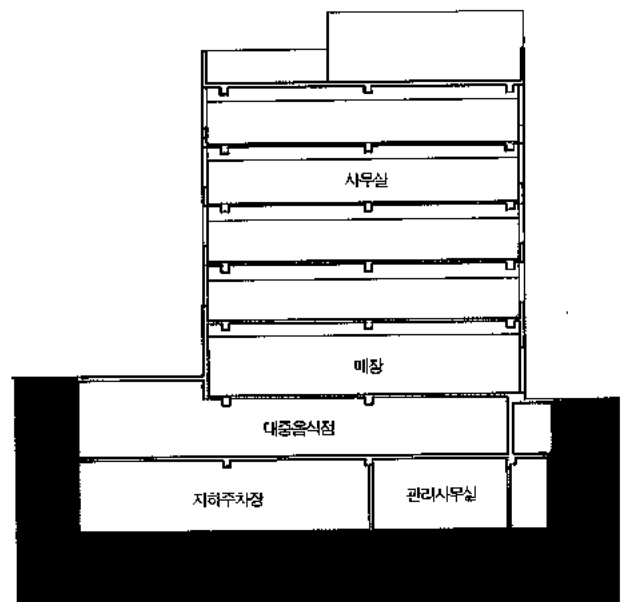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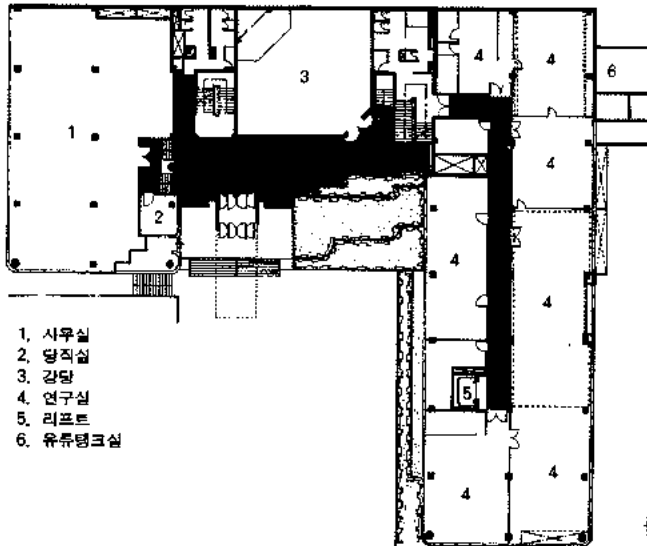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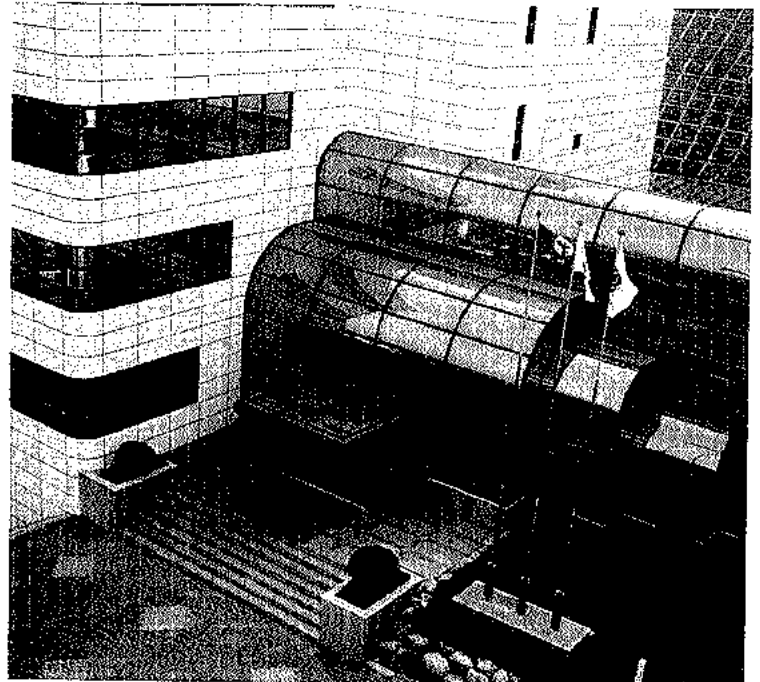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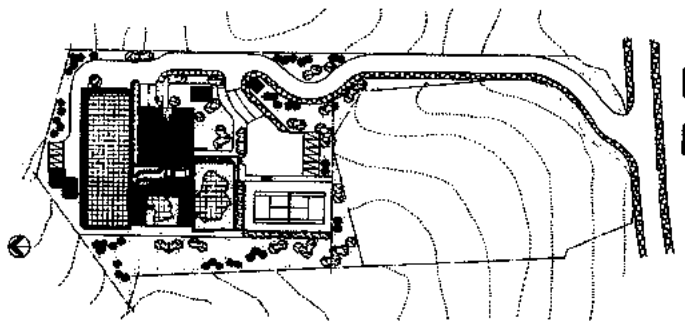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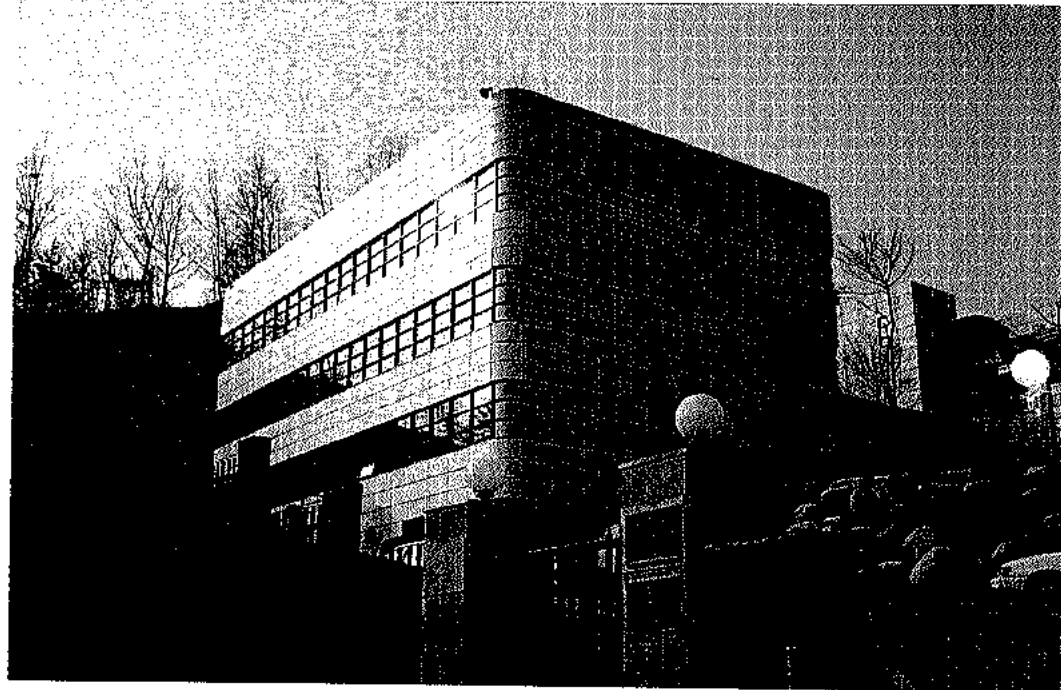
7

- | | |
|---------------|--------------|
| ① 전경 | ⑤ 현관로비 및 계단실 |
| ②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⑥ 개념 스케치 |
| ③ 기준층 평면도 | ⑦ 주단면도 |
| ④ 외벽 상세 | |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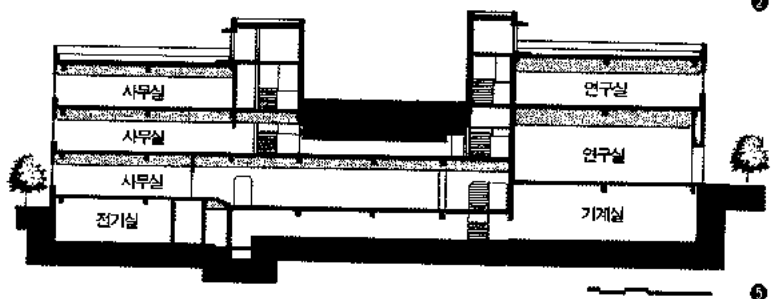
Korea Petroleum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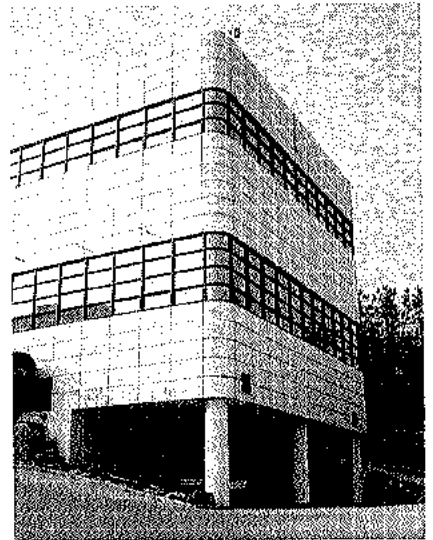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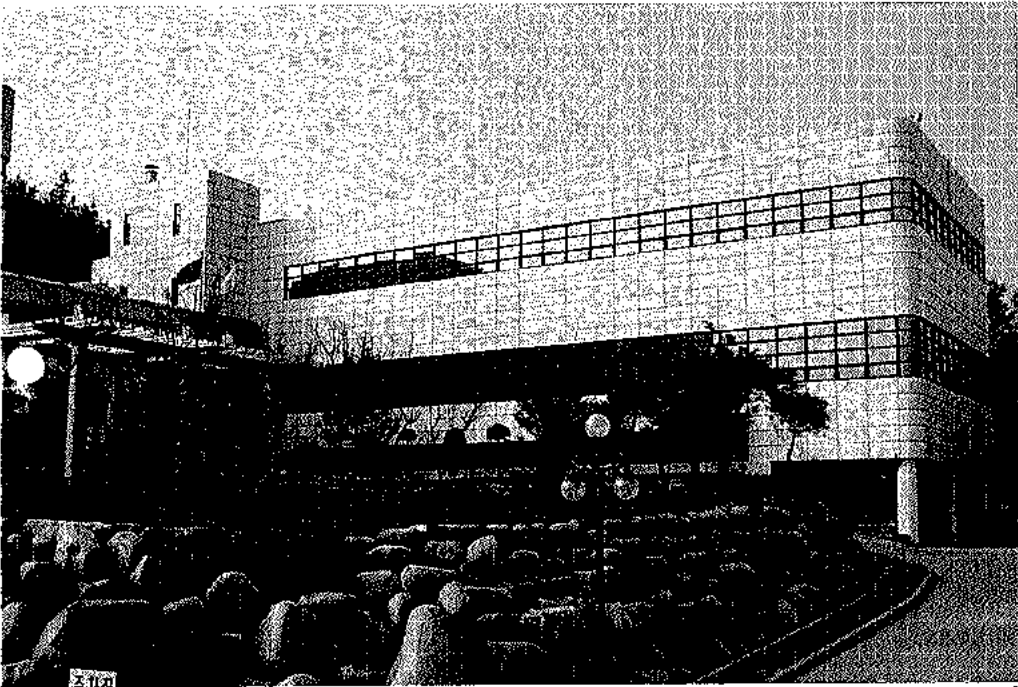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신34
지역/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8,487.0㎡
건축면적/1,549.59㎡
연면적/4,123.94㎡
건폐율/18.25%
용적률/48.59%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미감/에폭시 분타일+불소수지코팅
주차대수/13대



1. 사무실
2. 당직실
3. 강당
4. 연구실
5. 리프트
6. 유통탱크실

尹錫祐 / (주)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n, Suk-Woo





■설계소모

본 건물은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수원국도를 타고 1km 정도의 거리와 대지의 고저차가 심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면과 대지 정상부의 높이 차가 약 30m로서 대지이용율이 극히 떨어지는 대지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지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지를 4단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조성하고, 비교적 고저차가 적은 대지우측에 6m도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좌측 1단에는 테니스 코트와 주차장을 배치하고 1단과 2단이 접하는 면에는 건물 지층을 노출시켜 식당 및 관계실을 두고, 2단의 좌측 남향에는 사무동을 두어 분당 뜰이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부는 3단과 4단에 걸쳐있는 연구동(지하는 기계실을 설치하고, 두면은 외부와 면해 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케 하며, 2 단계에 면한 건물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함)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였다. 이 통로를 통해 연구원 및 사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 휴식공간을 두었고, 1층 중앙부에는 공용 공간(홀, 강당,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전면 주출입구의 외부는 휴식시설 및 소광장과 상호 연결하였다.

4단 북측에는 유류탱크, 창고, 주차장을 배치하였으며, 건물의 기능 및 동선, 입면 등을 고려하여 대지이용율의 극대화와 더불어 상호 독립된 기능 및 동선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입면은 600×1,200의 모듈에 맞추어 분리되면서 동시에, 상호 연결되도록 하고 모듈의 부각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결통로 상부를 원형으로 처리하였다. 또 연결통로 및 1층 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를 유리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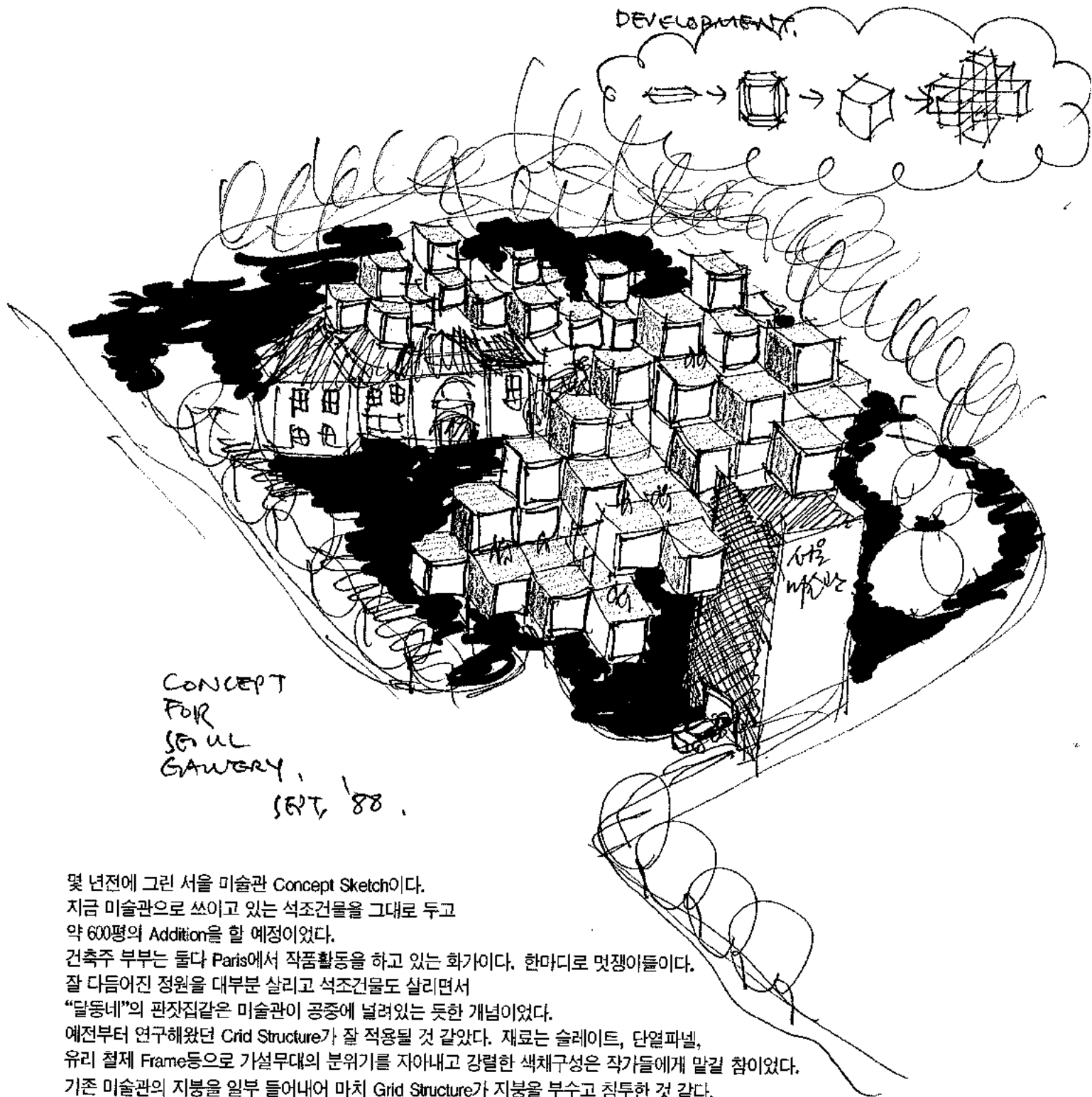
- ① 주진입로에서 본 사무동
- ② 주출입구측 상세
- ③ 배치도

- ④ 2층 평면도
- ⑤ 단면도
- ⑥ 연구동 남동측 전경

- ⑦ 외벽 상세
- ⑧ 실내 아트리움

서울미술관 계획안

Seoul Art Museum Plan



몇 년전에 그린 서울 미술관 Concept Sketch이다.

지금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는 석조건물을 그대로 두고
약 600평의 Addition을 할 예정이었다.

건축주 부부는 둘다 Paris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이다. 한마디로 멋쟁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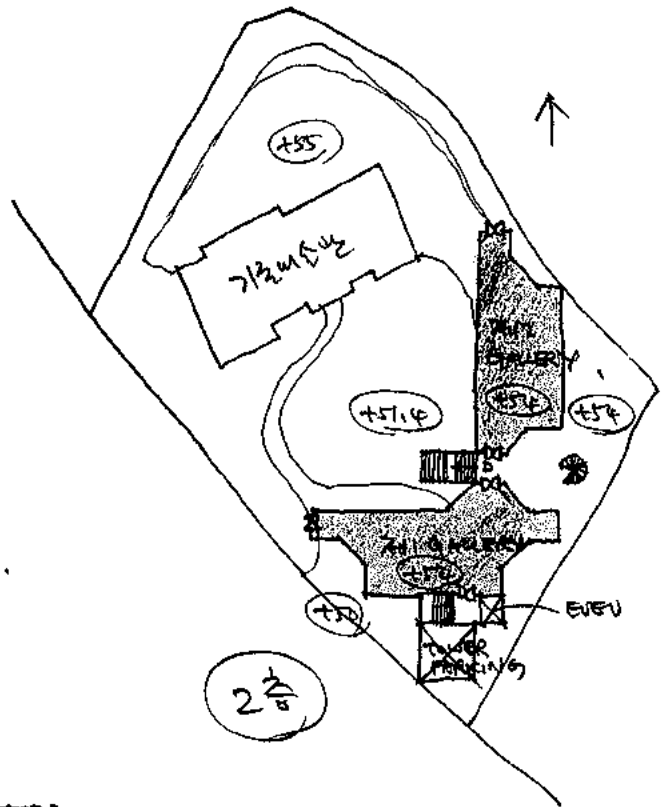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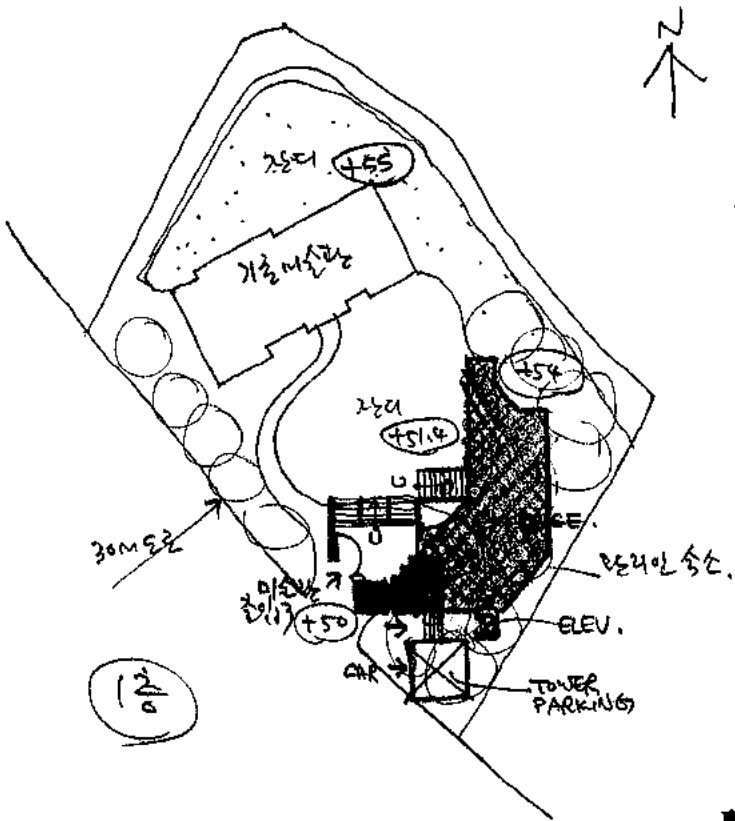
잘 다듬어진 정원을 대부분 살리고 석조건물도 살리면서

“달동네”의 판잣집같은 미술관이 공중에 널려있는 듯한 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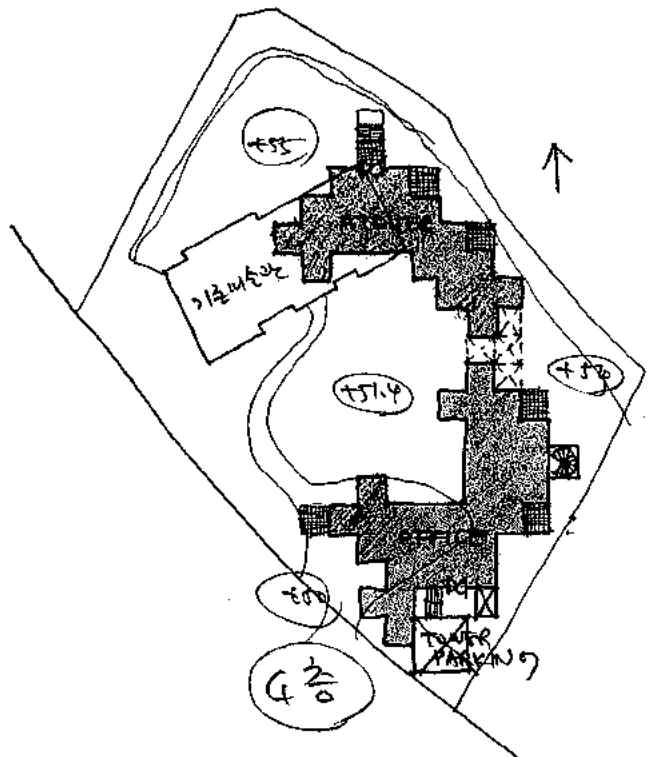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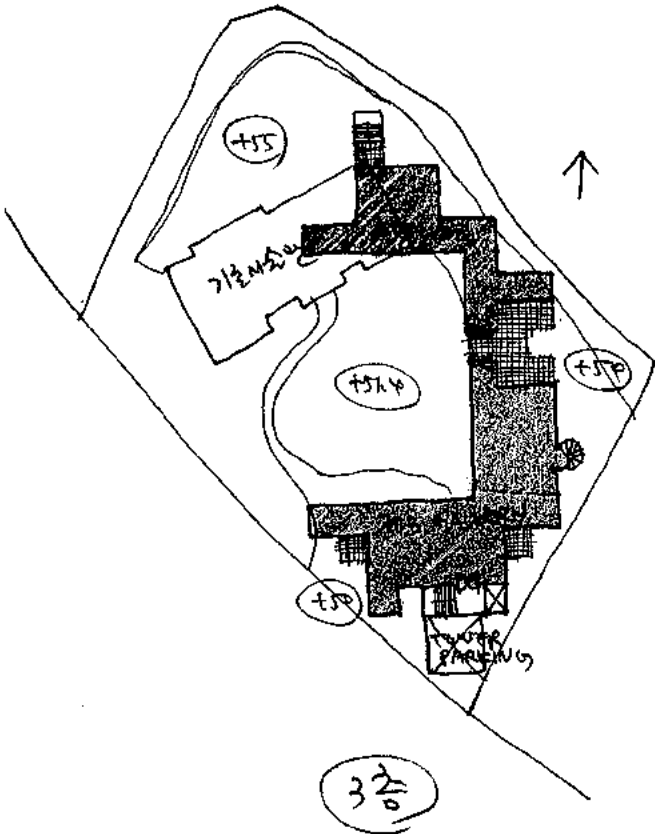
예전부터 연구해왔던 Grid Structure가 잘 적용될 것 같았다. 재료는 슬레이트, 단열패널,

유리 철제 Frame등으로 가설무대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강렬한 색채구성은 작가들에게 맡길 참이었다.

기존 미술관의 지붕을 일부 들어내어 마치 Grid Structure가 지붕을 부수고 침투한 것 같다.



曹建永
건축사사무소 기산



우리는 「모범건축사」가 아니다

—당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부쳐—

함인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일하며 생각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 괜한 생각만 든다.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의사·변호사에 비해 건축사는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그들은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 하는 얼굴, 문제가 있어 찌그러진 얼굴을 상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성공하여 새 건물 지을 꿈에 부푼 기쁜 얼굴과 일하지 않는가?” 그러나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환자와 의뢰인은 소위 아쉬운 사람이고 따라서 의사·변호사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되는 반면, 건축사에게 온 사람은 아쉬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건축사가 매달리게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역설이 오늘날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현금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라는 것 때문에 막상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땅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설계사무소들이다. 누가 재채기 하면 누구는 고개를 앓는다고, 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이 조치에 의해 애꿎게 설계사무소만 꿀탕을 먹는 것은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먹이사슬중에 가장 악한 고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평당 천만원의 땅과 평당 이백만원의 건물과 평당 삼사만원의 설계 사이의 힘의 논리랄까, 기실 허가제한 조치의 당초 명분은 과소비억제차원의 위락시설 중심의 제한이었다. 그러나 근 일년이 지난 지금 그 명분은 오간데 없고, 모든 민간 건축에 대해 전면 허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과열 건설경기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건설경기가 왜 과열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없고, 안일한 행정편의주의만 있다.

과열 건설경기의 원인제공자는 일관성과 장기전망이 없기로 유명한 한국정부고 그 원인은 개발공약의 남발, 주택 200만호 건설의 무리한 추진, 알맹이 없는 토지공개념도입등이다.

먼저, 6공화국에서의 두차례 선거를 통해 “아부 계획성없이 쏟아낸 무책임한 공약을 추스리느라 전체 개발의 균형성과 직결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두번째로, 한해 40만호 건설능력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70만호씩 지어 200만호를 산술적으로 채움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무모한 정책때문이다. 분배구조의 왜곡을 외면한채 공급만 늘이면 된다는 발상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 의해 잘못된 것이임이 드러났다. 세번째로, 수사학적으로만 의미있는 토지공개념도입이다. 금융실명제 등의 실질적 조치없이 토초세등의 미봉책으로 공개념을 실현하려니, 열려한 자본들은 빠져나갈 곳을 다 마련하고, 오히려 현재의 이상건설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이상의 논의를 더하는 것은 건설경기 과열의 근원적 원인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제한 조치같은 단발적이고 대중적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개발, 서해안 개발등의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적 건설사업에 비교해 볼 때 민간건축 제한의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정부 자체조사도로 밝혀진 바가

이렇게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조치가 일년이상을 지속되고 있는데
건축가들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인 이 조치에 의해, 실제로도 당하고
있는 주체이면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관련집단에서
일언반구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슬프기까지도
겠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부문을 계속 죄겠다는 것은
여기가 가장 손쉽고 만만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설계사무소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설계는
허가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용역을 인정 못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조치가 일년이상을 지속되고 있는데 건축가들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인 이 조치에 의해, 실제로도
당하고 있는 주체이면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관련집단에서 일언반구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슬프기까지도 하다.

한술 더 떠서 건축사협회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
「건축질서 건설화 결의대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건축 부조리를 배격하고, 환경개선을 할 것등을
결의하였다.

건축수나 건축공무원은 부조리 배격 결의대회를 하지
않는데 왜 건축사들은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응하는 인식 및 태도변화가 아우르지 않는
우리만의 결의대회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 관제태도를 통해 「모범」이 되기를 결의하는 직종에

드디어 건축사까지 거들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모범 건축사」가 되어야 할만큼 부조리의
주범이고, 허가제한조치로 인해 일차적 피해를 입어야
할만큼, 과열건설경기의 주범이었는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사회내에서의 건축전문가들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국가의 건축허가권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의의를
유지했던 면허건축사 제도에만 순치되어 있는 우리들은
하라는대로 결의대회나 하고, 목을 죄는 조치에도 정부
사책을 적극 호응하겠다고 숨을 죽인다.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권위는 폐쇄성(Closure)의
강약에 따른다. 다만 그 폐쇄가 비민주적인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되었는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되는 것일 따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건축사들이 의사·변호사에
비교하여 존경과 대접을 못받는 것은 그동안의 편력을 보아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하겠다」고 결의 하였다.

그런데 이 신뢰는 관제태모에서의 결의로서 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에 의한 경쟁사회에서의 기여 등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모범」이라는 접두사를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寺刹建築—

11. 조선시대 柱心包건축

조선시대의 주심포건축은 고려시대부터 발전되어온 전형적인 형식을 초기에는 계승하다가 중기 이후가 되면 독자적으로 간소화·유행시킨 특수형식으로 변형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 변형된 형식이 翼工과 柱三包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주심포형식에서 발전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익공식 건물은 조선초기에도 나타나고 이들은 주심포가 아닌 無공아집에서 발전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주심포 건축형식을 논하려면 이들까지를 포함시켜 논하여야 할 것이다. 주삼포집의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조선후기 개뿔대로 彫飾 또는 외장을 한 건축형식으로 별로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17~18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성행된 엄연한 건축형식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주심포형식을 연구하는데 무시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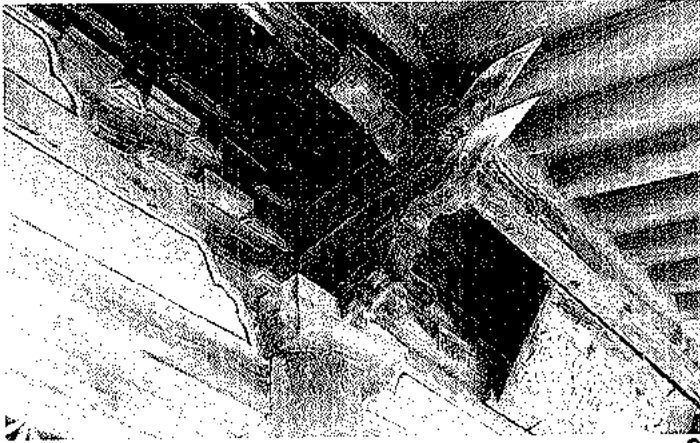
주삼포집과 익공집의 형식분류는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동서원의 중정당은 임진왜란 직후에 세워진 강당이나 그 포작형식이 주심포인지 익공인지 또는 후에 유행한 주삼포 형식 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장곡사 대웅전은 주심포인지 주삼포인지 또는 다포인지 명쾌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예는 찾아보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강릉문묘대성전은 헛침차를 둔 주심포의 특징도 보이고 한편 퇴보머리가 통체로 빠져나와 다포계의 특징도 있는가 하면 석서끝이 익공부리와 같이 뾰족한 익공의 특징도 갖고 있으며 주삼포의 기본형식도 보인다. 여하간 주삼포형식은 우리나라 전통건축중에서도 특히 서원이나 향교 등의 사당건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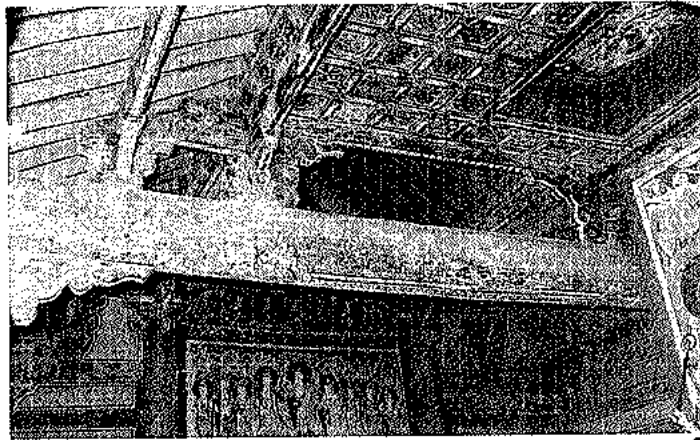
그래서 주삼포형식의 공통된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조선중기 이후에 유행한 형식으로 주심포를 익공형식과 같이 간소하게 꾸미면서 장식적인 기법을 강하게 표현하여 단청 등도 화려하게 채색하고,

둘째, 대부분 서원이나 향교의 사당이나 廟건축 등 유교건축에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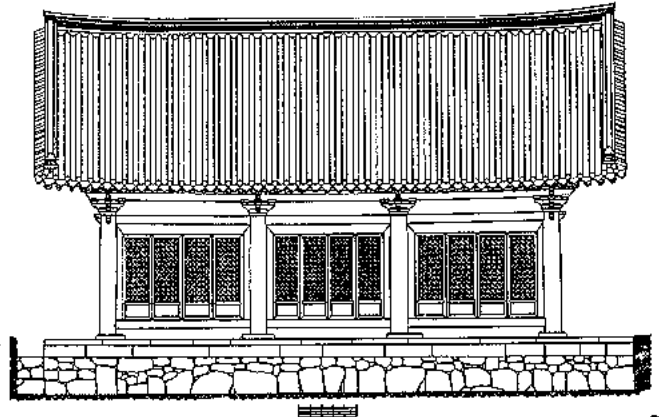
셋째로 이들은 출목을 하나 두고(2출목 이상일 때는 5包이상이 됨) 첨차나 살미 등 전형적인 주심포 계통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때로는 형식의 퇴락적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분류를 하자면 좀더 구체적으로 가구형식에서부터 연구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 한편 익공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주심포형식에서 퇴화·간소화 되어 발생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공포가 가설되지 않은 남도리나 굴도리집에서 대들보 밑을 보강하는 덧보아지 형식에서부터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형적인 익공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도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기둥, 주두 그리고 익공의 3부제가 함께 엮들려 출목없이 보를 직접 받쳐 결구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목이 있더라도 익공의 상면이 수평을 이루면서 외부로 뻗은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익공과 주심포형식의 차이점은 외부로 돌출한 살미가 어떤 형태로 포개지고 돌출되는지 하는데 특징을 보이고 다음 보머리가 살미 위에 직접 얹혀지는지 아니면 공간을 두고 결구되었는지 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조선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형식의 예를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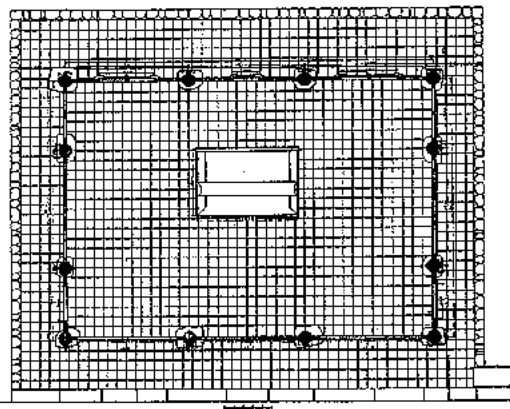
2



3



4



5

1. 無爲寺極樂殿

무위사는 事蹟記에 의하면 617년 진평왕때 원효대사에 의하여 창건된 절로서 당초에는 '觀音寺'라 불리웠다고 한다.²¹ 이 절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천면 율하리 율출산 중 병풍과 같은 산세를 배경으로 대체로 남향하여 놓여있다.

극락전은 이 절의 主殿으로서 절 북쪽에 남향하여 놓이고 그 남쪽에는 축을 맞추어 5층석탑과 석등이 놓여있다. 그리고 그 양측으로 명부전과 영산전 등 부속적인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그 길이의 비가 1.45 : 1인 古式의 비례를 보인다. 주심포 5량가 맞배집인데 내외주가 없이 변주로만 가구되어 대들보의 주간이 약 27尺으로서 비교적 크다. 특히 정면 중앙칸이 양협칸보다 좁아 보통 건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건물정면에는 꽃살처럼 격자와 사선의 격자문을 혼용한 4분합문을 전면에 달고 측면에는 남쪽칸에만 2짝 출입 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후면에는 널판문을 달았는데 중앙칸에 한 짝이고 양협칸에는 2짝문을 달았다. 건물내벽에는 조선초기의 귀중한 벽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보존상 보존각을 따로

건축하여 이곳으로 이전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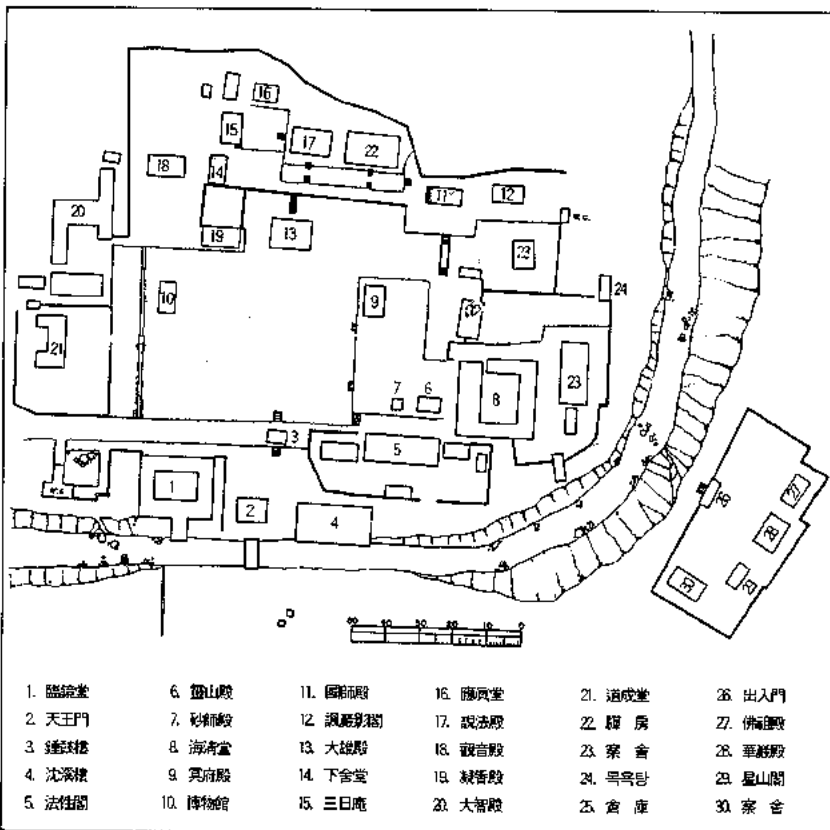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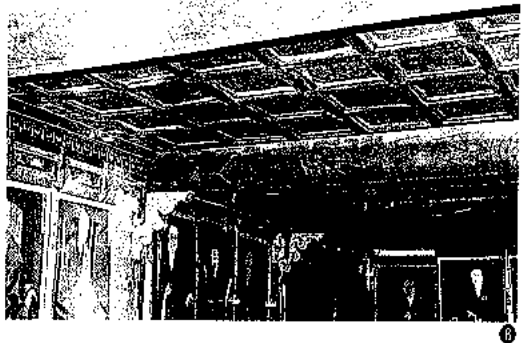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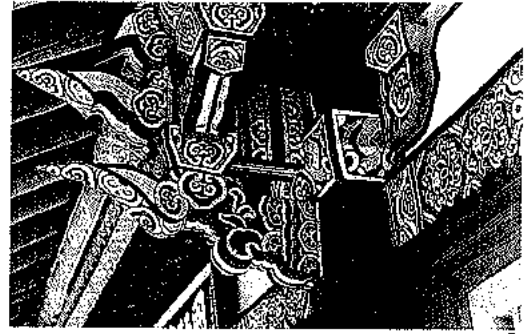
또 이 건물은 1956년에 해체보수하고 1974년에 벽화를 이전하고 다시 1983년에 해체수리하였는데 이때 종도리 받침장혀에서 墨書銘이 나와 이 건물이 1430년 세종때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²² 건물내에 고주가 없어 후불벽을 세우기 위하여 양측에 각재를 올려세워 그 사이에 벽을 팔라 벽화를 그렸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단을 놓고 반자를 짜 감실 보개천장을 만들었다. 1956년 수리시 발견한 후불벽화의 묵서명에는 1476년의 기록이 있어 이 후불벽화는 이 건물의 창건보다 46년이 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가구와 공포구조 형식은 수덕사대웅전에 비유할 만큼 아름답게 장식되어 비록 헛첨차와 우미량은 없지만 두공 위에서 짜여진 살미와 첨차 그리고 그 내부의 보를 받는 보아지, 또 마루대공에 波蓮花와 곡선의 人字대공, 中대공의 彫飾 등 이미 설명한 백제양식의 건축에서 계승된 형식으로 밀어진다.

2. 松廣寺國師殿 및 下舍堂

송광사는 「昇平續志」에 의하면 신라말 慧隣선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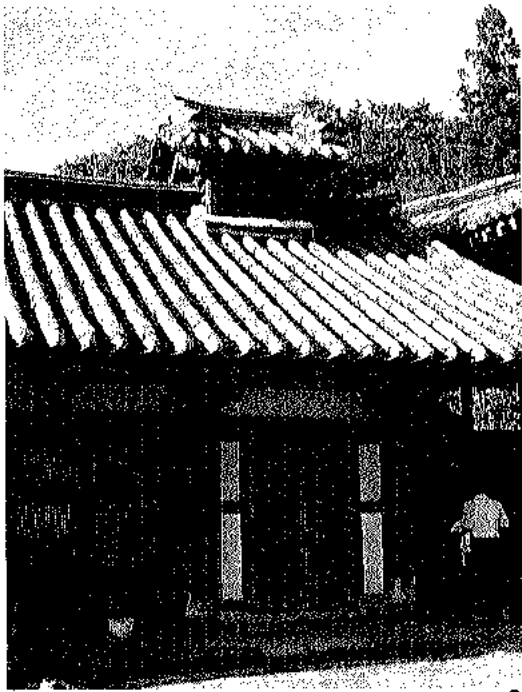
- ① 무위사 극락전 전경
- ② 전면 공포
- ③ 내부가구와 천장
- ④ 정면도
- ⑤ 평면도



- ① 송광사 국사전 전경
- ② 전방 공포
- ③ 내부천장
- ④ 송광사 배치도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조계산 서쪽 기슭의 동에서 서로 계류가 흘러 섬진강지류와 합쳐지는 곳에 이 절이 위치하고, 그리고 이 산 동쪽 기슭에는 선암사가 있다. 이 절은 우리나라 사찰중 三寶 중에 하나로서 佛의 통도사, 法의 해인사, 僧의 송광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여 이곳은 옛부터 수도승의 도장이기도 하다. 이 가람은 담이 없는 산지가람으로 분류하기도 하며¹⁾ 절은 방대한데 담이 없음이 특이하다. 가람은 대체로 서향을 하고 절 앞 하천의 다리를 겸한 우회각을 건너 천왕문을 지나면서 경역이 넓게 펼쳐지고 그 중앙 후측에는 근래에 새로 세운 대웅보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하사당과 국사전은 이 대웅보전 후측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떨어져 자리잡고 있다.

下舍堂은 절에 부속된 거처의 하나로서 평면이 정·측면 각 3칸이긴 하지만 민가의 일가집 평면을 하고 있어 한쪽에는 부엌을 두고 다른 2칸은 방을 들여 그 앞에 툇마루를 두었다.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는데 남쪽 퇴를 들어서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세살창문을 방 2개에 각각 한 짝씩 달았다. 또 동쪽협칸 부엌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2짝 판문을 달아 밖으로 여닫게 하고 지붕은 맞배지붕인데 부엌쪽에는 지붕 위에 통풍시설을 하여 작은 덧집을 지었다. 공포는 원주 위에 짜인 주심포 형식인데 출목을 하나 두고 행공첨차로 외목도리를 받치는 형식이다. 주두 밑에 헛첨차가 익공식으로 돌출하고 그 위에 이와 비슷한 두공을 올려 놓되 짧은 헛보와 같은 형태로 그 위의 퇴보를 받고 있다. 그리고 퇴보는 주심을 초공과 같이 받고 보머리에서 외목을 받치고 있다. 이 건물에서 특이한 것은 대공이라 할 수 있는데



10

측벽에서 보이는 대공은 소위 駝峰形 또는 山형의 대공을 사용하고 내부의 것은 초기적 覆花盤形을 하고 있어 일본에서 중세대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아다기에루마다'(板蕨脫)와 비유된다. 첨차는 당초새김형(雙S형)첨차로 주심의 첨차 역시 같은 형이다. 이 건물은 공포의 형식이나 대공형식으로 보아 조선초기에 속하는 건축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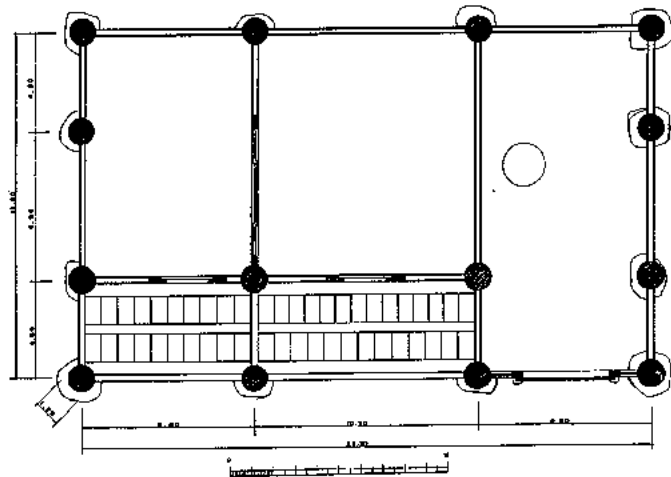
국사전은 하사당에 남쪽으로 훨씬 떨어져 서향을 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비교적 긴 방형 평면을 하고 하사당과 같이 맞배지붕의 양측에 풍판을 독특하게 달고 정면은 부연을 둔 겹처마에 후면은 홑처마이다. 정면이 偶數칸이 되어 좀 특이하나 주칸이 북측의 한 칸만이 한 자가 작고 나머지 3칸은 다 같은 것과 또 북측면이 2칸으로 남측면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북측의 한 칸이 후에 증축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전면에는 세살 4분합문을 달았고 북측면의 前夾間에도 출입문을 두었다. 공포 역시 하사당의 공포와 거의 비슷하여 일출목에 행공첨차를 두고 치마도리를 받들고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살미의 내부 끝이 보아지를 당초부리로 아름답게 조각하고 원래는 반자가 없는 연동천장인 듯 보이나 후에 우물반자를 달았다. 대공 역시 일반 판대공도 있고 복화반형도 있어 하사당과 거의 같은 조선초기 수법을 살펴볼 수 있다. 첨차는 출목에서는 당초형 첨차이고 주심에서는 교두형 첨차이다. 국사전에는 보조국사를 비롯하여 열 여섯분의 고대한 조사의 영정을 모셔있다.

3. 淨水寺法堂

정수사는 경기도 강화군 강화도 안에 주봉인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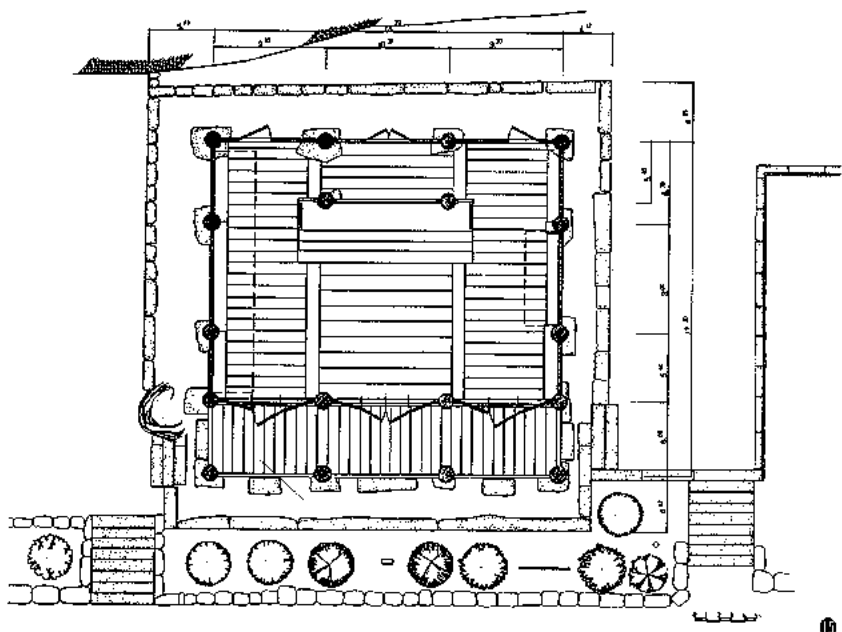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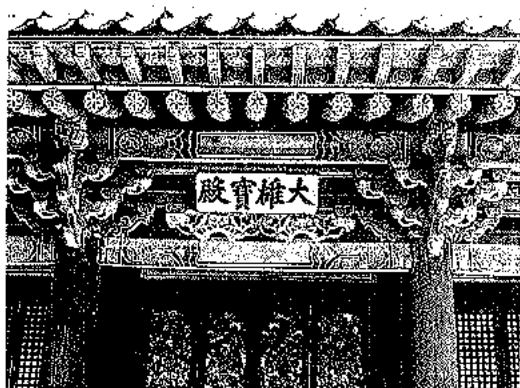
摩尼山 동축기슭에 있어 같은 도내에 있는 진등사의 작은 말사이다. 『傳燈寺本末寺誌』에 의하면 이 절은 신라 선덕왕때(639년)에 세워져 처음에는 '精修寺'라고 하였다 한다. 1957년에 법당 보수공사시 발견한 상량문에 의하면 법당의 초창이 1423년이고 그 후 조선 숙종때까지 5차례의 중창을 하였다고 한다.⁵⁾ 그래서인지 건물은 평면에서부터 특이하게 거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면에는 퇴칸을 두고 있어 어찌면 당초에는 없던 것을 후에 달아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이 퇴칸이 없으면 평면의 정·측면이 각 3칸으로 그 비가 1.34:1이 되어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뒷칸 전면의 공포와 본체의 공포형식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믿어진다.

기구는 맞배에 주심포 형식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 ⑩ 송광사 하사당 정면(지붕수리후)
- ⑪ 송광사 하사당 정면(지붕수리전)
- ⑫ 평면도



① 정수사 법당 전경
② 전면 공포 상세
③ 평면도



전면에 2층목 5포작을 꾸미고 퇴보머리가 통째로 돌출한 것 또 살미의 끝이 익공처럼 뽕족히 돌출하고 上下접침이 간격없이 붙어있고 평방이 없는 등 다포계와 익공계 그릭 주심포의 형식을 겸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의 출목침차를 앞에서 설명한 개암사대웅전의 것과 같이 연꽃을 장식하여 곡선으로 투각한 것은 그것과 맥을 잇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또 기둥과 기둥사이 창방 위에도 연꽃과 줄기를 투각한 화반을 두어 건물의 정면은 본체 중앙간에 달은 꽃살 4분합문과 함께 화려함을 강조한다. 기구는 원래 5랑구조였던 것을 전면 평주에 퇴보를 달아내어 기둥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텃칸의 변주는 본체의 변주보다 훨씬 낮다. 건물후측의 공포는 헛침차를 두고 일출목의 치마도리를 받치는 행공침차를 두었다. 이것을 익공계의 초기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송광사식 주심포에 가깝다고 보아진다. 건물내부 중앙 후측에는 후불벽을 두고 그 앞에 불단을 두어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는 불상을 봉안 하였다. 그리고 불단 위에는 전각의 단지를 꾸미고 그 위에 우물반자와 주위에 빗반자를 가설하였다.

4. 淸平寺廻轉門

청평사는 강원도 춘성군 북편 화천군과의 경계부근 북상면 청평리에 있는데 慶雲山을 주봉으로 하여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 소양맹 건설전에는 남쪽에 기린강이 흐르고 있어 그 강을 건너 절에 진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춘천에서 북으로 소양호를 건너 절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 절은 고려대에 세운 「淸平寺文殊院記碑」에 의하면 고려 광종24년(973)에 당에서 온 永玄이 경운산에 '白巖禪院'을 지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李資玄의 아버지 이개가 '普賢院'을 세우고 이자현이 산명과 사명을 다시 '淸平山文殊院'이라 하였다. 그 후 조선조 명종대에 普雨가 절의 건물들을 크게 증창하고 能仁寶殿을 수리하여 '慶雲山萬壽聖淸平禪寺'로 불렀다. 그러나 절안에 여러 번의 재화와 근래의 6·25동란으로 전에 있던 능인보전과 극락전 요사등이 모두 불타고 다만 절앞에 회전문만 화재를 피하여 오래된 건물로 남아 있고 기타의 건물들은 근래에 다시 세운 것이다. 그리고 1987년 이곳의 발굴조사로 능인전지와 사역앞 영지를 찾아 밝힌 바 있다. 이 절의 가람은 고려시대 궁궐이나 사찰의 가람과 같이 구릉을 따라 밑에서부터 위로 경사져 올라가면서 건물을 배치한 형식이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대웅전(능인보전)과 극락전은 건물축을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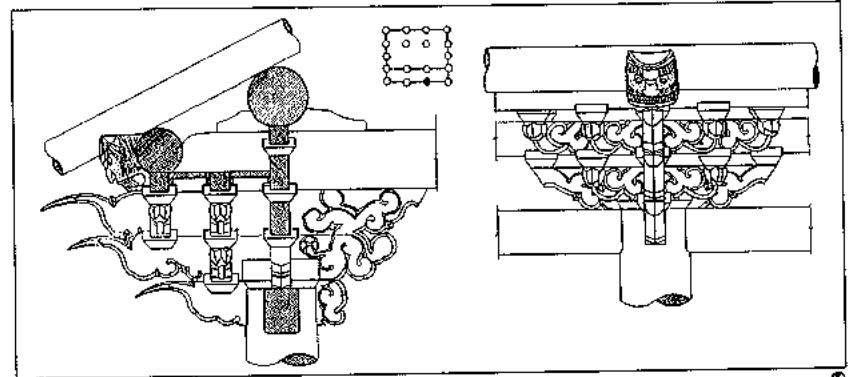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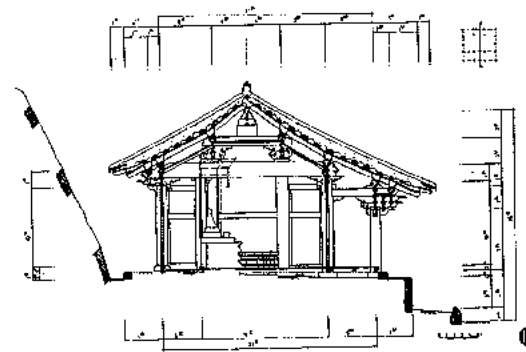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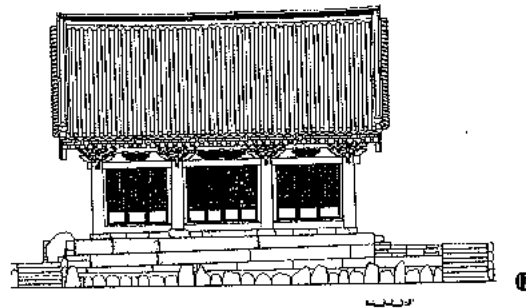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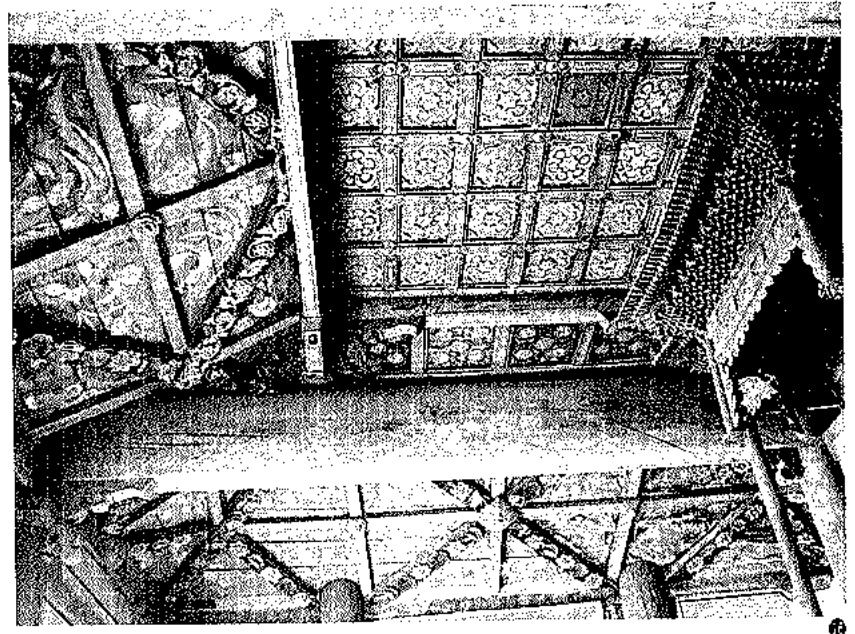
회전문은 도리칸 3칸에 보칸 1칸 맞배지붕 대문인데 정면 중앙칸에는 문짝을 달기 위함인지 보칸을 2칸으로 하여 가운데 기둥 하나 씩을 양쪽으로 세우고 그 위에는 다른 대문의 구조와 같이 상인방을 가로 대고 그 위에 홍살을 꽂았지만 막상 문은 달지 않았다. 그리고 양 협칸에는 바닥을 약간 높여 마루를 깔아 지나가는 사람이 걸터 앉을 수도 있게 하였는데 원래는 이곳에 力士像을 안치하려 하였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리고 협칸의 외벽은 북쪽을 제외하고는 심벽을 발랐다.

배흘림이 약간 있는 둥근 기둥 위에 짜여진 공포의 형식은, 주심포 형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보다는 익공형식에 가깝다. 다만 전형적인 익공과 같이 보머리가 통채로 돌출하지 않은 것은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지만 주두와 창방 익공과 보 등이 틈없이 밀착한 것은 전형적인 익공형식의 것과 같다. 파련대공과 어칸위에 놓인 화반 등의 형식으로 보아 지금까지 일본학자에 따라¹⁶⁾ 조선조 명종대로 보는 것에 좀 무리가 있고 그 후에 다시 중수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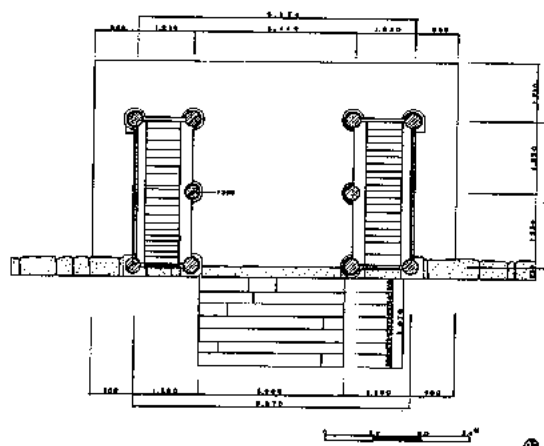
5. 觀龍寺藥師殿

관룡사에 대하여는 이미 앞선 호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사전에 대하여만 설명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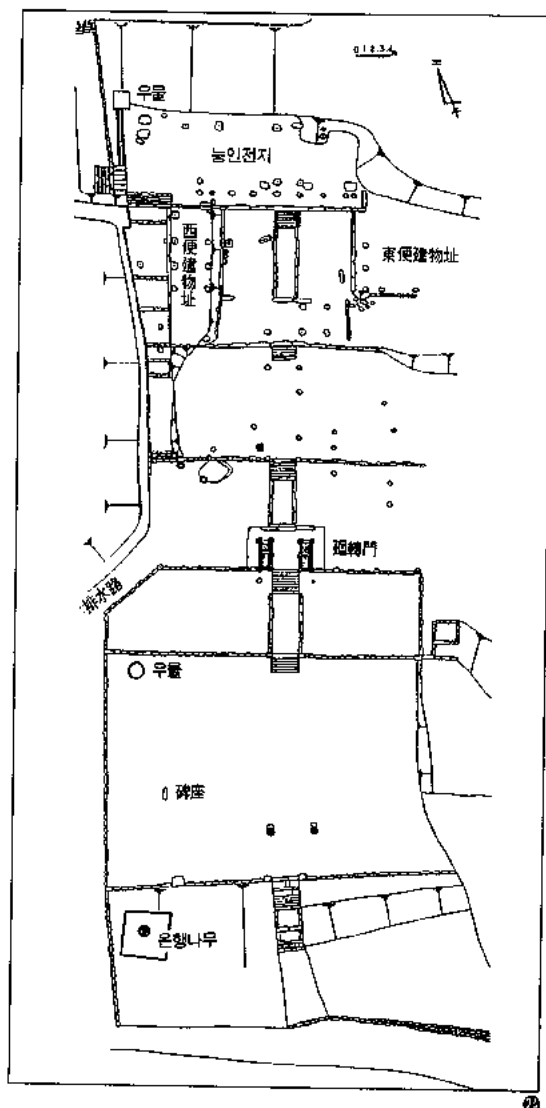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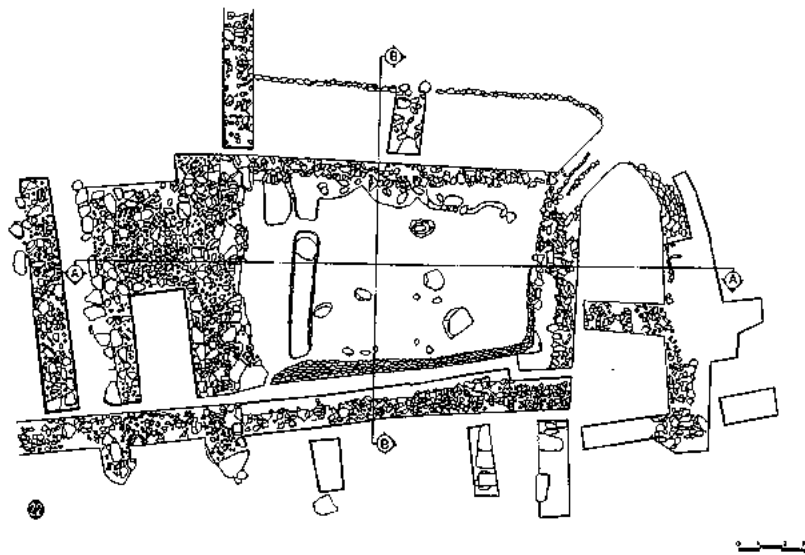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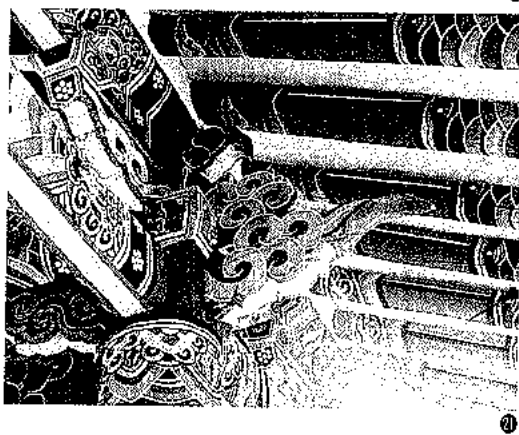
약사전은 사역 서남쪽 한구석에 위치하여 비교적 높게 마련된 기단 위에 정면과 측면 단칸의 주심포 맞배집이다. 정면 주칸이 11.7尺이고 측면이 10尺으로 정면이 약간 크다. 전면에만 장자살 4분합문을 두고 그 외에는 벽을 쳐 막았다. 건물주칸에 비하여 지붕면적이 크게 되어 약간 불안한 감이 있다. 즉 측면 박공쪽은 주심에서 약 6.5尺이 돌출하고 전·후면은 처마가 약 7尺이 돌출되어 있다. 약간의 배흘림을 가진 기둥 위에 1출목의 주심포를 결구하고 포작 위에 보를 얹고 이 보 위에 다시 중보와 종보를 얹었는데 이들 중보와 종보는 그 양끝부분을 우미량처럼 구부려 밑의 보위를 얹히게 하고 그 중간에는 판대공으로 보밀을 받치고 있다. 그리고 마루도리 밑에는 소위 駝峰形대공으로 굴도리를 받고 있다. 공포는 측면의 창방 뿔목을 헛침차처럼 이용하여 그 위에 두공을 한 단두고 이 위로 보를 받게 하였다. 두공의 살미끝은 밖으로는 익공처럼 뿔죽하고 안으로는 교두형으로 보를 받는 보아지 기능을 한다. 또 보머리는 주심과 외목도리를 받치는데 보의 끝이 주심에서부터 수장쪽으로 좁아져 장식화되었다. 굴도리를 받는 장혀의 양끝은 단장혀의 특징을 나타내고 행공첨차는 윗부분에 공안을 둔 교두형이나 대공이나



- ① 내부천장과 기둥
- ② 정면도
- ③ 종단면도
- ④ 전면공포 상세도



- ⑩ 청평사 회전문 전경
- ⑪ 익공 상세
- ⑫ 청평사 발굴 배치도
- ⑬ 회전문 평면도
- ⑭ 청평사 배치도
- ⑮ 관통사 악사전 전경



헛첨차에서는 당초 새김형 첨차도 사용하고 있다.

건물내부는 마루를 깔아 후측 중앙에 8각 연화대좌의 불좌를 두어 약사여래조상을 모시었고 위에는 반자없는 연등천장이다. 또 내벽에는 여러 草花를 그린 벽화가 둘러있다. 이 건물은 우미량과 공포의 특징 등으로 보아 조선초기의 건물로 판단된다.

6. 道岬寺解脫門

도갑사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의 도갑산 西麓에 위치하여 있다.

「道岬寺事蹟」에 의하면 661년 신라 무열왕대에 창건되었고 신라말 고려초 道詵國師에 의하여 크게 중흥하고 조선 성종4년(1473)에 해탈문을 완성하였다고 한다.⁷⁾ 사역을 따라 들어가는 길목에 하천이 있고 이를 건너 해탈문 옆으로 진입하게 된 계단을 오르면 西向한 해탈문을 맞이하게 되고 그 문을 지나 경사도를 따라가면 대웅전 앞뜰에 다다르게 된다. 이 뜰에는 중앙에 석탑이 있고 그 양편에 3층과 5층의 석탑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들 바깥쪽으로는 요사채와 승방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 해탈문과 대웅전 사이에는 중문이 있었을 것이라 하며 사찰의 동서측 양쪽으로 회랑지와 유사한 유구가 노출되어 원래는 신라식 가람을 연상케 하는 회랑이 있었다고 하나⁸⁾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해탈문은 1957년 수리시에 종도리 장려에 쓰여진 上樑文에 의하면 成化9년(1473)에 立柱를 하였다고 분명한 기록을 남겼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정면의 중앙칸에는 2짝편문을 달고 양협칸 통로측에는 金剛欄을 세워 그 안에 금강역사상을 봉안하였다. 건물은 주심포계의 맞배집인데 그 특징은 대량 위에 우미량을 두고 이 우미량이 종보를 받고 있는데 종보의 뿔목은 밑에서 소로로 받치고 계자늬를 조식한 점 등 먼저 설명한 관룡사약사전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 종보 위에 작은 화엄대공과 人자대공을 두어 고식의 형식을 보인다. 공포는 헛첨차 위에 초공살미를 돌출시켜 외목도리를 받되 행공첨차를 두지 않고 소로와 상회를 바로 받치고 있다는 점은 부석사조사당의 기본적인 형식과 같은 점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쇠서끝이 수덕사대웅전의 것과 비슷하고 살미의 내부끝도 당초무늬의 보아지로 조각되어 보를 받고 있고 헛첨차에 당초문 첨차를 사용한 것도 좀 다른 점이다.

보머리는 주심에서부터 폭을 약간 좁게 빠져나와 외목도리를 두공과 같이 받치고 주심의 두공첨차와 종보 밑 짜여진 포대공의 첨차는 양쪽 밑이 원호를 이루고 윗부분에 공안을 둔 교두형 첨차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우리나라 古式의 건물형식들을 혼용한 아름다운 건축미를 보이는 것이다.

7. 海印寺藏經板庫

해인사는 「伽耶山海印寺古籍」에 의하면 신라말 802년에 창건한 절이라 한다. 이 절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三寶사찰 중 법보사찰로 유명한데 그 불법을 보관한 곳이 바로 가람중심인 대웅전 뒤 높은 대지에 있는 脩多羅藏殿과 法寶殿안의 고려 八萬大藏經이다.

이곳에는 평면으로 보아 남쪽과 북쪽에 약 50m 간격을 두고 동서로 길게 평행된 건물 2동과 그 간격 양측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무로 된 경판을 보존한 창고건물이다. 남쪽의 것이 脩多羅藏전이고 북쪽의 건물은 法寶전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국보인 고려대장경이 총 81,137권이 보관되어 있고 또한 건물자체도 국보인 것이다.

수다라장전과 법보전은 정면 15칸 측면 2칸 우전각 흘처마집인데 이 건물은 주심포에서 초익공으로 탈바꿈한 건물이다. 내부구구로서는 5량가에 人자대공 그리고 대공 아래쪽 양측에 초공을 물려받친 것은 봉정사대웅전의 대공과 비유되고 내부 중앙열의 고주 상부에 종보를 받치는 첨차는 당초 새김형으로 조선 초기적 기법을 보이나 처마도리 밑에 놓인 초공은 익공형인데다 보머리가 봉채로 돌출하여 이들과 밀착된 익공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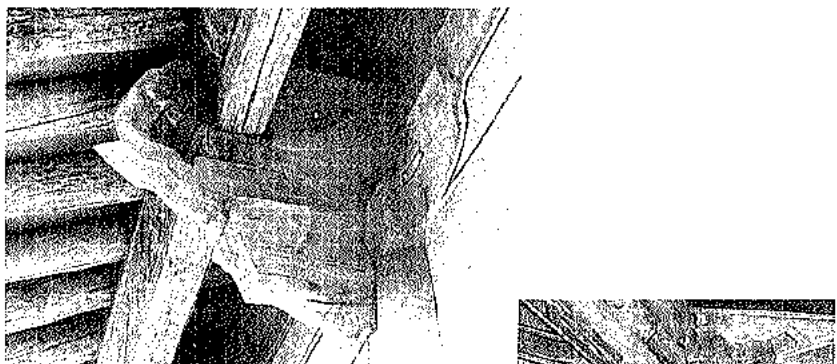
단 東·西寺刊庫의 공포는 헛첨차가 보를 직접 받지 않고 떨어져 있으므로 주심포의 기능을 아직 남기고 있고 법보전은 익공의 부리가 없는 초공으로 되어 있으며 또 후측은 익공을 直斜切시킨 것이다.

이곳에는 평면으로 보아 남쪽과 북쪽에 약 50m 간격을 두고 동서로 길게 평행된 건물 2동과 그 간격 양측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무로 된 경판을 보존한 창고건물이다. 남쪽의 것이 脩多羅藏전이고 북쪽의 건물은 法寶전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국보인 고려대장경이 총 81,137권이 보관되어 있고 또한 건물자체도 국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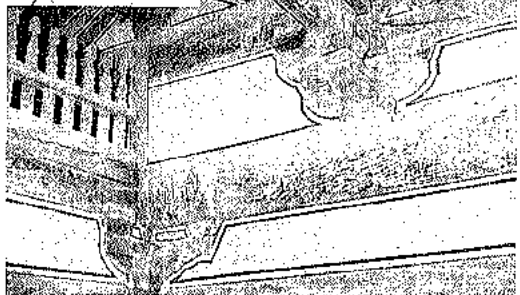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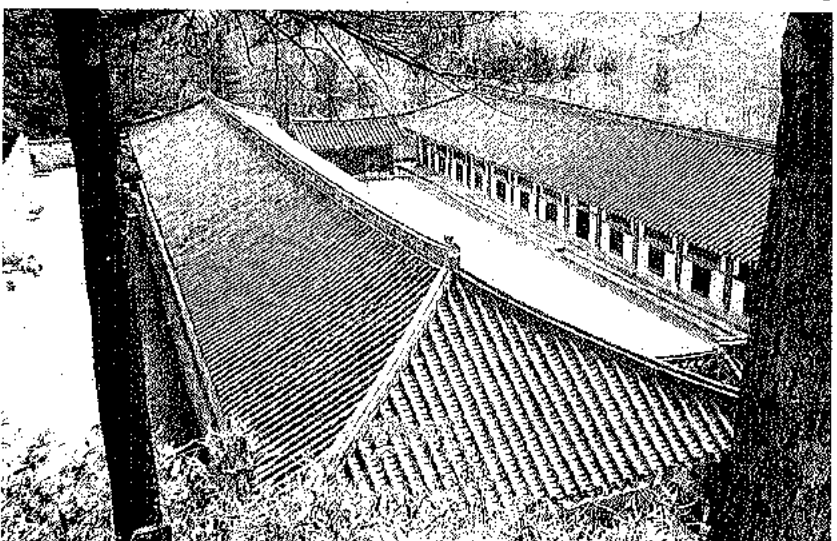


②

- ② 도갑사 해탈문 전경
- ③ 전면공포 상세
- ④ 내부가구
- ⑤ 해인사 장경판고 전경



⑥



⑦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1488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건물을 굳이 소개하는 것은 건축양식보다는 이 건물이 갖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능은 목관으로 된 경판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기구의 복잡성을 피하고 되도록 간략하게 익공형식을 취한 것이다. 건물내부는 바닥이 높이고 천장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연등천장이고 중앙열과 양측열에 맞추어 板架를 설치하고 경판을 옆으로 세워서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관집의 보관을 위하여 건물벽에는 불박이 살창을 아래·위로 배치하여 이 개구부로 공기의 유통을 꾀하여 경판의 부식을 막았는데 이 개구살창은 벽의 上·下에서 크기를 달리하고 또 건물 전·후면에서 그 크기를 逆으로 하여 기류에 따라 통풍에 최대효율을 갖게 하였다. 즉 수다라장전 전면의 개구살창은 벽을 상·하로 나누어 밑에서는 장방형으로 크게 시설하고 상부의 것은 이것에 약 25% 밖에 안되는 작은 것을 시설하였고 또 후면에는 이와는 반대로 위의 것이 크고 밑의 것은 그것의 약 50% 되는 정방형 살창을 시설하였다. 그러나 법보전에서는 전면의 것이 수다라장전의 것과 같았으나 여기서는 아래쪽의 살창이 후자보다 약간 더 컸다. 또 그 후면에서도 하부의 살창이 수다라장전의 것보다 컸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법보전이 북측의 구릉지 밑에 놓여 습기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건물의 배면에도 밑의 작은 창외 크기가 위의 창외의 70% 정도로 크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환기창의 구조적 기능이 유체역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이곳의 경판고는 근 400년을 지나도록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판을 지금까지 잘 보존시킨 것은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이라 하겠다.

환기가 교차되는 전 후면의 창살과 반자가 없는 깊은 지붕밑의 공간들은 건물내의 기류를 충분히 돌게 하여 습기가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바닥의 높은 온도차이로 생기는 수분을 흡수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상 몇 개의 조선시대 주심포 형식의 건축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들 예 이외에도 많지만 이만 줄이고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주심포 형식의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고 끝맺고자 한다. 이들의 특징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려시대의 주심포형식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비교적 소규모의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고 기둥에 배흘림을 두고 있고 지붕은 맞배지붕이

대부분이다.

둘째, 우미량이 있고 대공을 화려하게 파련이나 포대공을 사용한 것 그리고 人字대공의 오랜 형식을 갖는 것이 있는데 우미량의 사용은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우미량은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도갑사해탈문, 판룡사약사전, 고산사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다음 人字대공은 무위사극락전, 도갑사해탈문,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개목사원통전, 해인사장경판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덕사대웅전과 같이 곡선을 이룬 것은 위에서부터 3번째까지의 건물이다. 또 파련대공 등 내부장식을 화려하게 꾸민 것은 무위사극락전과 도갑사해탈문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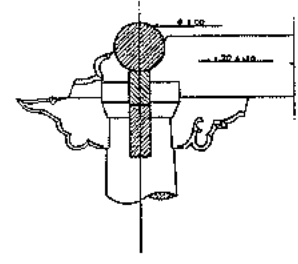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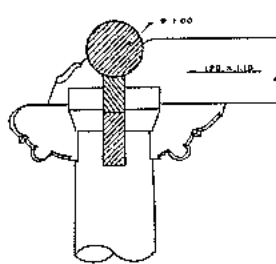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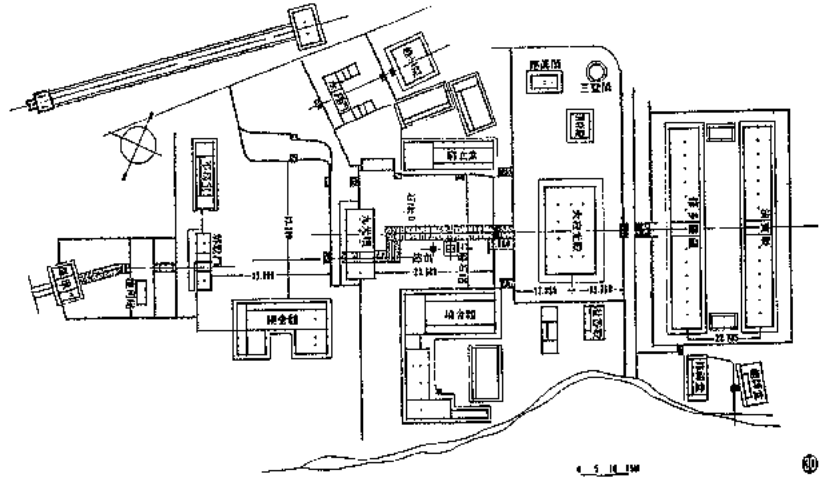
셋째, 공포에 있어 헛침차를 둔 것과 헛침차없이 두공에서부터 짜은 형식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헛침차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헛침차 부리가 익공형으로 되어 익공형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적지 않다.

넷째, 헛침차가 있든 없든 간 제1초공이 돌출하여 외출목 위치에서 행공침차를 통하여 외목도리를 받치는 것과, 중간에서 위의 두공을 행공없이 한번 받치고 위의 두공이 외목도리를 받치게 한 것 즉 소침과 대침의 개념으로 겹쳐 짜여지는 형식이 있어 이러한 후자의 형식은 고려시대 건축에서 보이는 오래된 형식인데 그 예로 도갑사해탈문, 무위사극락전, 은해사거조암영산전 등이 있다.

다섯째, 특수형 주심포형식이 있는데 홍성高山寺대웅전은 주심포건물이면서 다포형식과 같이 창방과 평방을 돌리고 그 위에서 포작을 짜았고 또 지붕이 팔작이고 충량을 두었고 연등이 아닌 우물반자를 시설했다. 특히 이곳에는 조선시대 이미 사라진 소로받침이 남아있어 주목을 끈다.

또다른 특수건물은 장곡사상대웅전이나 전등사약사전과 같은 다포와 주심포 사이에 놓인 형식이다. 장곡사상대웅전은 주심포계 건물에다 평방 없이 간소화된 공간포를 두어 다포형식의 특징을 일부 나타냈고 전등사약사전은 평방은 없지만 팔작지붕에다 전면 공간포도 다포계의 격식을 갖춘 석서와 출목교두형침차를 둔 것 그리고 내부에 우물반자와 충량을 기구한 것등 다포계에 가까운 형식인데 다만 평방이 없고 측면에 공간포가 없는 주심포형식의 특징을 일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혼합형식으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전통건축의 형식분류를 시도할 경우에도 이러한 양면성을 보이는 혼합형식을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註)

- ① 이달훈, 익공계 공포의 발생과 변천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9.
- ② 無爲寺事蹟
- ③ 文化財管理局,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所報告書, 1984.
- ④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1988, 6刷版.
- ⑤ 文化財管理局, 韓國의 古建築 제6호, 1984, 再引用.
- ⑥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 ⑦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제1호, 1973.
- ⑧ 鄭寅國, 前掲書.

- ⑨ 해인사 배치도
- ⑩ 해인사 법보전 전면
- ⑪ 도동서원 중정당 공포상세

일본의 외국인건축가들

Foreign Architects in Japan

김문덕
건축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수도 도쿄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건축가를 기용하는 경향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걸쳐 현저하다. 해외디자이너의 일본유입과 때를 같이하는 이 동향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상업주의가 구하는 집객력(集客力)도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 일본의 도시상황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프로듀서들이 그들의 무대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1. 일본에 있어 해외건축가의 유입의 역사

일본은 과거 유럽이나 미국건축가들에게도 디자인의 영감을 많이 주었지만, 해외건축가들이 일본에 유입하여 활약한 역사도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일본의 건축 및 관화나 문양 등은 반 고흐의 미술이나 아르 누보의 건축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 1868-1928), 그리고 익히 알려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 : 1867-1959)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오늘날은 현대 일본건축가들이 서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외국건축가들의 일본에서의 활동도 만만치 않아서,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 1880-1936)나 라이트 그리고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 1887-1965), 안토닌 레이몬드(Antonin Raymond : 1888~1976)등이 일본에 와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 활동하였으며 특히 안토닌 레이몬드는 일본건축의 현대화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그의 대표작의 몇 개는 일본건축계의 주요 건축물이기도 한 것이다. 레이몬드 이후 상기한 라이트와 르 꼬르뷔제 이외에 폴 루돌프나 프랭크 게리 등이 각각 한 동의 건축물을 실현시켰으며 최근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와서는 기하 외국인 건축가들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건축가들이 일본에 와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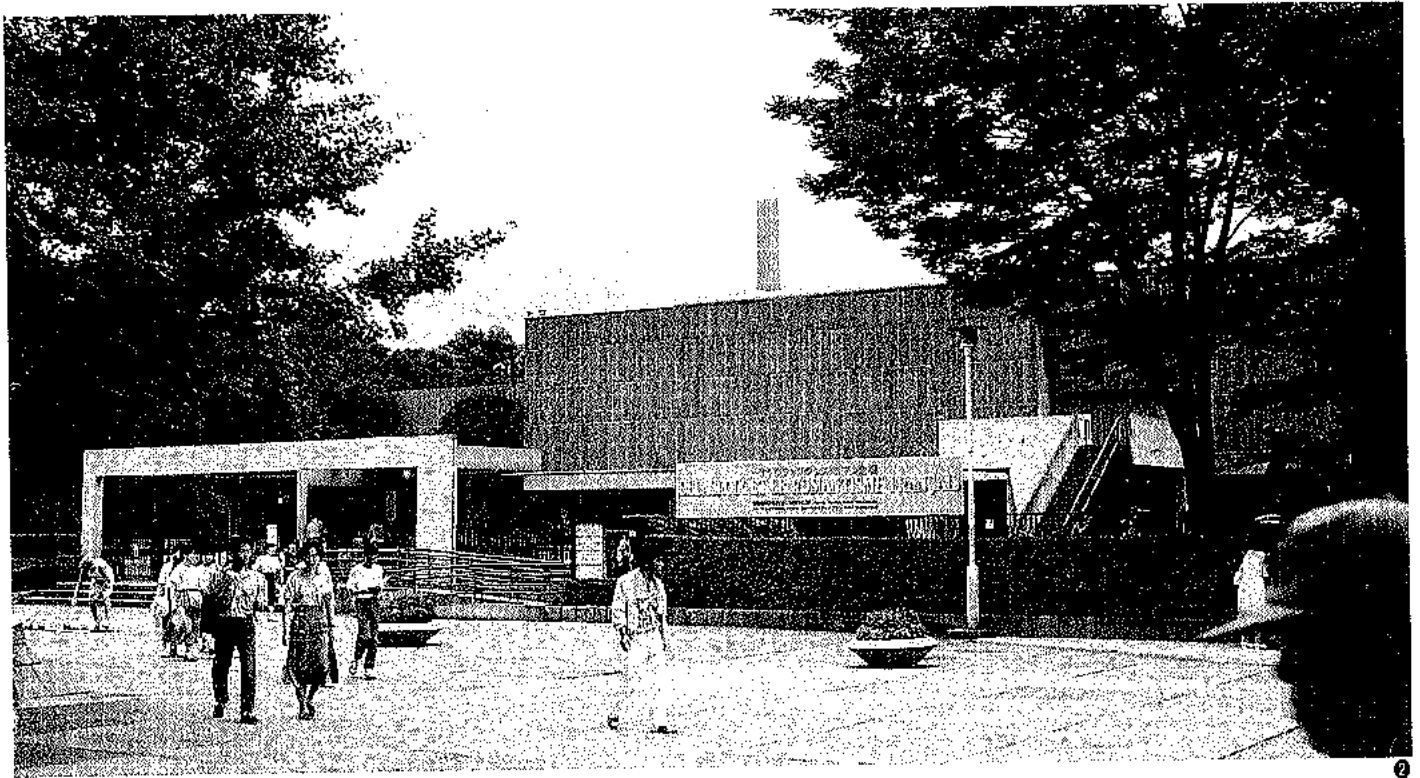
최근만 한정하더라도 마리오 보타, 피터 아이젠만, 리차드 로저스, 마이클 그레이브스, 스텐리 타이거먼, 자하 하디드, 코프 힘멜블라우, 나이젤 코츠, 필립 스타크, 알도 로시 등 셀 수 없이 많은 건축가들이 일본으로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배경은 엔고(円高) 및 일본 경제의 활성화, 해외건축가들의 상품적 가치의 상승, 디자인의 왕국 일본이라는 일본인들의 자신감이 상승효과를 발휘하면서 해외건축가들이 단독 혹은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단체로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프로젝트로는 1990년의 오사카 꽃박람회의 폴리(Folly)디자인과 후쿠오카의 가사이(香椎) 지역의 집합주택 프로젝트, 역시 후쿠오카의 알도 로시 설계에 의한 호텔 일 팔라조(Il Palazzo)와 동호 호텔의 카페나 바등의 인테리어 프로젝트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2. 라이트, 르 꼬르뷔제와 그들 이전의 외국인 건축가들

르 꼬르뷔제와 라이트! 근대에 있어 일본건축에 영향을 준 건축가이면서 일본에 건축물을 남기고 있는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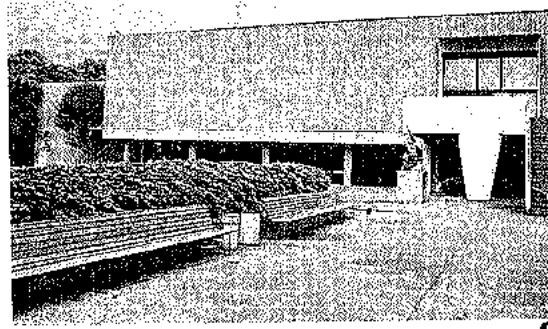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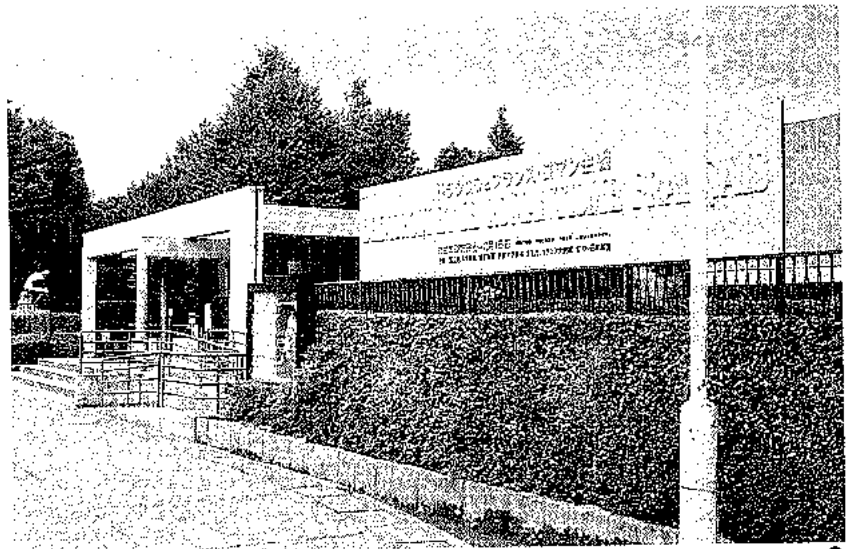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제국호텔(1915-22)만을 안토닌 레이몬드와 공동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가 6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설계한 것은 제국호텔을 포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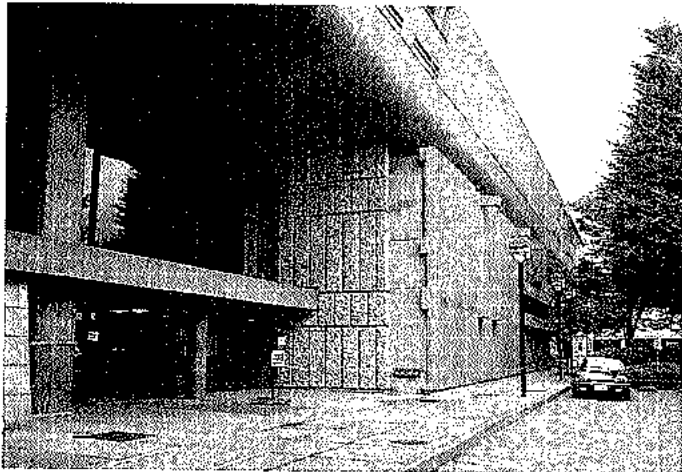
12건에 이르고 그중에 6건이 주택작품이었던 것이다. 이 제국호텔은 그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라이트의 조수로서 내일한 안토닌 레이몬드를 계속 일본에 머무르게 하여 리더스 다이제스트 도쿄지사(1951)같은 걸작을 남기게 하였으며 마에가와 구니오(前川 國男)나 요시무라 준조(吉村 順三)같은 일본 근대건축의 거장을 배출케 한 공로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트의 주택작품중 하나는 요도가와(淀川)제철소 영빈관으로 개조, 수복된 야마무라(山邑)저택(1918-24)을 들 수 있으며 이 야마무라저택은 1922년 라이트가 제국호텔의 준공을 보지 않고 귀국한 후, 그의 제자였던 앤도 아라타(遠藤 新)와 미나미 마코토(南 信)등에 의해 건설되었다.

필자는 실제 이 건물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리들리 스코트감독의 블랙레인의 몇 장면에서 그 실내를 볼 수가 있었다. 일본의 야쿠자들이 구수회담을 하는 장면에서 선보인 이 건축물은 라이트의 프래리 하우스(Prairie House : 초원주택)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벽난로가 평면의 중심을 이루는 수평이 강조된 형태의 주택이었으며 라이트가 아르데코풍의 건축물을 다사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마야건축의 문양이 도입된 듯한, 그 특유의 직물블록같은 패턴의 장식이 주택 내외부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1985~89년에 걸쳐 수복되었다.



- ① 라이트 설계의 야마무라 저택 현재 요도가와 제철소 영빈관으로 사용 중이다.
- ② 르코르뷔제 설계의 국립서양 미술관 전경
- ③ 주출입구 부분 건축적 구조가 입구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외관의 부분적 입면처리 입면에서의 솔리드와 보이드의 처리가 분명하다.



5



6

- ⑤ 국립 서양 미술관 반대편에 자리잡은 마에가와 설계의 도쿄
- ⑥ 문화회관 전경
- ⑦ 국내의 자유문화 센터와 비슷한 분위기가 표출되는 것은 두 건축물이 다 꼬르뷔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⑧ 아래서 위로 올려다본 다이에이 빌딩의 외관
- 원형 파이프의 루버 처리가 특징적이다.

라이트가 일본건축의 영향을 받아 서구건축에 있어 독자적 영역을 확립했던 데 비해, 르 꼬르뷔제는 다만 그의 건축을 통하여 일본에 영향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르 꼬르뷔제 이전에 다른 유럽의 건축가가 일본에 와서 활동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메이지(明治) 10년경까지 워터스시대라고 칭했던 한 시기에 활동했던 영국인 토마스 제임스 워터스(Thomas James Waters),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메이지 10년경 내일하여 대학교수 겸 건축가로 활동했던 조시아 콘더(Josiah Conder : 1852~1920), 메이지 19년 엔테 벡크만의 내일후 메이지 23년 내일한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 라란데(Georg de Lalande : 1872~1914)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라이트와 동행했던 상기한 레이몬드 역시 유럽계인 체코출신의 건축가였고 미국계로는 성직자로, 메이지 38년 내일했던 윌리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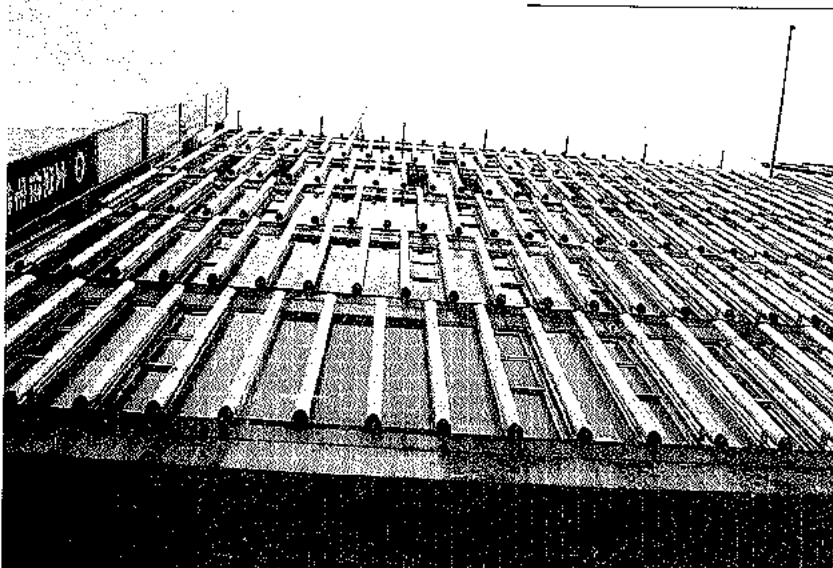
메렐 보리츠(William Merrell

Vories : 1881~1968)로서 그는 건축활동을 하면서 후에 일본에 귀화하였다. 일본의 동서양의 교차로같은 지정학적 위치는 상기한 외국건축가들을 통하여 서구건축을 일본에 전파시킨 동시에 일본건축을 서구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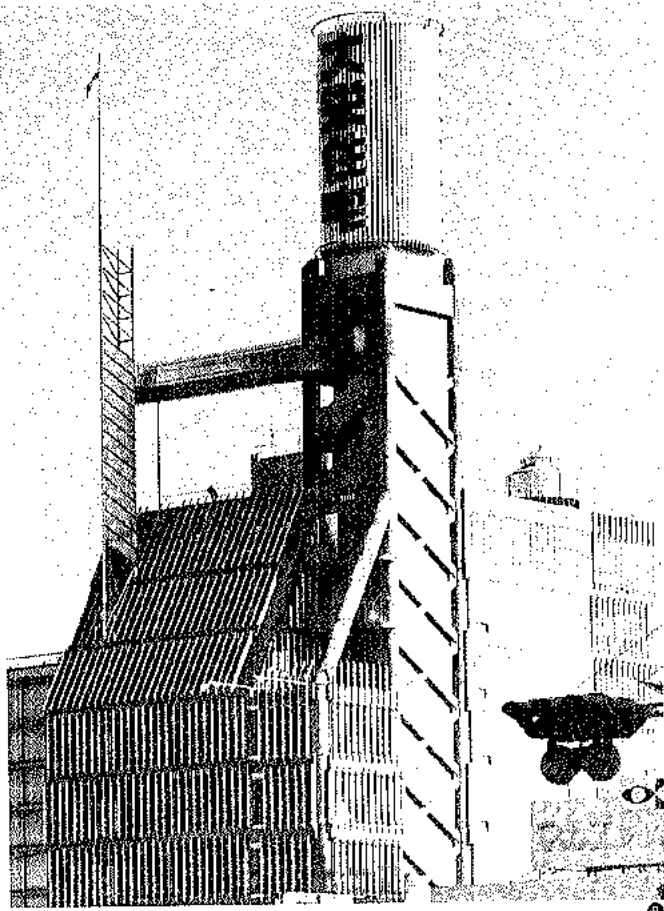
다시 르 꼬르뷔제로 돌아가서, 도쿄 다이도(台東)구에 위치한 우에노(上野)공원 입구근처에는 르 꼬르뷔제가 설계한 국립서양미술관(1959)이 자리잡고 있다.

르 꼬르뷔제의 성장하는 미술관의 개념을 실현한, 이 미술관은 일부를 그 특유의 건축언어인 피로티로 처리하여 진입공간과 실내공간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내전시공간은 개방공간을 칸막이로 조정하는 가변적인 시스템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르 꼬르뷔제는 이 건축물을 그의 제자이면서 레이몬드사무실 출신인 상기한 마에가와 구니오와 요시무라 준조와 함께 완성시켰으며 이 미술관 건너편에는 마에가와가 설계한 도쿄문화회관(1961)이 서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합리주의적 접근과 조형적 비약을 포함한 직관적 접근이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다.”고 평한 이 건축물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영향이 명백히 보이는 건축물로서 르 꼬르뷔제건축의 영향이 일본의 현대건축가들에게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소자키 아라타의 초기작들에서도 르 꼬르뷔제의 영향이 나타났던 것은, 그가 즐겨 사용했던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지진국 일본에 있어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과 함께 그의 건축의 가소적 조형미가 일본 건축가들에게 매력적인 형태적 공간적 장치로 어필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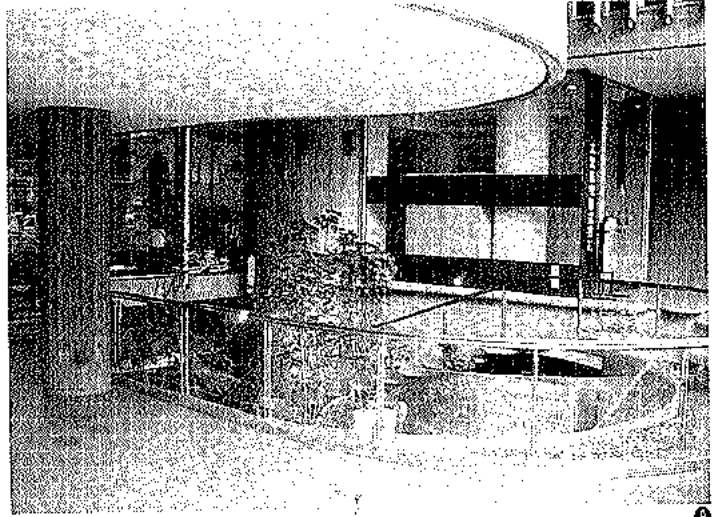


7



⑧ 나고야 소재의 다이에이 주택
빌딩 전경
⑨ 도로에 면한 외부
지하가 선문가튼으로 처리되
어 1층과 연결되고 있다.

⑩ 실내홀에서 바라본 선문 가든



3. 폴 루돌프의 다이에이(大榮)빌딩

폴 루돌프(Paul Rudolph)라고 하면 지금은 홍콩의 본드센터(Bond Center : 1988)나 동남아의 몇 개의 주거 프로젝트 외에는 잊혀진 건축가이지만, 필자가 대학에 재학중이던 70년대 초반에는 지금의 유명한 건축가에 비길 수 없을 정도의 저명한 건축가였다.

지금처럼 건축서적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었겠지만, 그의 건축의 역동적인 형태와 노출콘크리트를 거칠게 마감한 부르탈한 표현은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필자도 과제중 하나를 얻. 브릿지 도서관(Earl W. Brydges Library : 1969)에서 인용한 적이 있음은 그 당시 그의 존재의 화려함을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예일대학 건축학부동(1958-64)은 후일 창고로 전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그의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이 슬피한 바 처럼, 이론적이기 보다는 감각에 의존하는 건축가이었기 때문에 한때 예일대학 건축학부 학장이라는 명성이나 4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친 화려한 활동에 비해, 어느날인가 부터 세인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상기한 동남아의 프로젝트 등을 간간히 발표하고 있는 정도이다.

'80년 나고야 디자인박람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겨 나고야에 위치한 구로가와 기쇼오의 근대미술관을 방문하는 겸해서 학생시절 홈모의 대상이었던 루돌프가 일본에 설계한 다이에이빌딩(1971)을 방문하였다.

다이에이빌딩은 건설회사 사옥으로 상기한 근대미술관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의 제자인 야마시타 쓰카사(山下 司)와의 공동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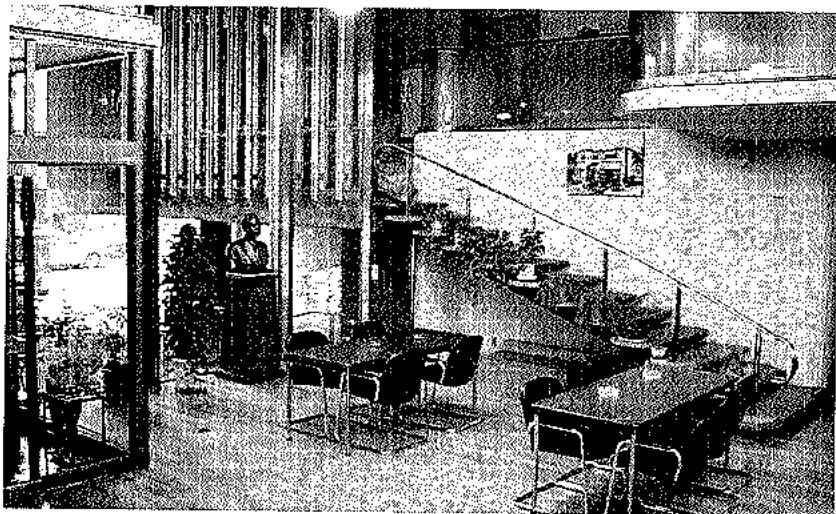
외관이 노출콘크리트위에 원형의 알루미늄파이프를 루바처리한 형태로 구성된 이 지하4층 지상10층의 건설회사 사옥은 비록 상자형 구성에다 상부층에서 사선제한 때문에 경사로 처리된 단순한 형이지만 내부에서는 유동하는 역동적 공간을 시도하고 있었다.

르 꼬르뷔제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공간의 역동적인 처리는 그가 하버드대학에서 월터 그로피우스와 마르셀 부로이어에게 배웠음을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그가 그의 기반이었던 근대건축을 자유롭게 확장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움직임에는 속도가 있으며, 그것은 공간도 물처럼 어떤 볼륨에서 다른 볼륨으로 유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간의 어떤 볼륨과 별도의 볼륨과의 결합이다. 건축공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의 움직임이다. (중략)...

용기로서의 공간의 기하학은 단면도와 평면도에 있어서, 대각선적이 아닌 곡선적인 수직과 수평에





①

갖가지 힘과 반력을, 축과 그것에 대립하는 축을, 팽창과 수축을 창조한다.”¹⁾고 그가 주장한 것처럼 이 다이에이빌딩의 내부공간에서의 특징과 의도도 공간의 움직임인 것이다.

정확히 다이에이주택이라는 건설회사의 사옥인 이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설회사=건축적 공간과 형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운, 이 건축물에 적합한 형태와 기능을 풀 루돌프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루돌프는 사옥이면서 쇼룸일 수도 있는 이 건축물을 내부의 유동적인 공간적 측면에서 계획하였던 것이다. 즉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내부공간의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 건설회사 사옥을...

그가 공공건축의 계획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진정 훌륭한 건물은 스케일, 비례, 건물상호간의 공간 등에 있어 서로 관련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간 전체중에서 그 건물이 지닌 의의와 역할을 명쾌히 정의하고 표명해야만 한다. ... (중략)

공간에는 연속하는 계가, 분절, 위계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예견의 감각을 부여하고 방향을 암시하고 공간의 질서중에서 클라이맥스로 유도한다.”²⁾고 한 말을 과연 이 다이에이 빌딩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나 살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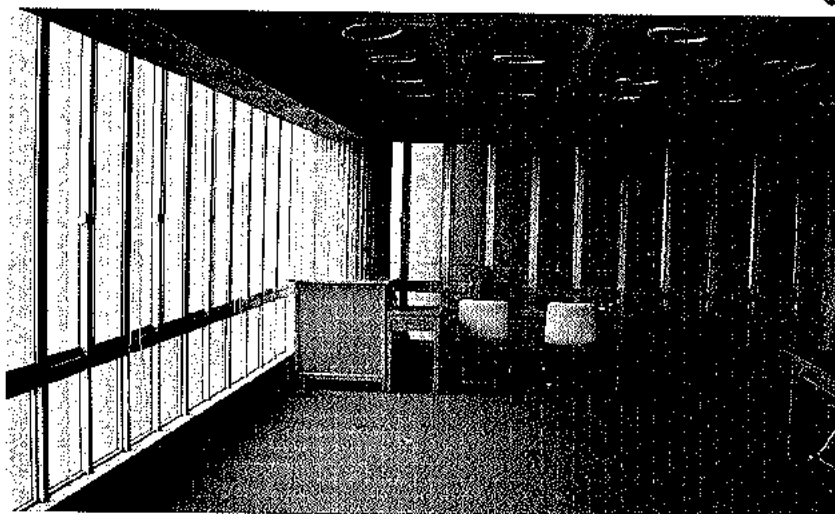
도로에 면한 주출입구부에서 보면,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전면에 배치된 선긋가든에 의해 서로 공간적인 관계성을 이루고 있으며, 지상1층 역시 중이층으로 처리되어 중이층에 설치된 전시공간과 1층 홀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각층마다 원형으로 처리된 화강실이 단조로운 공간에 운동감을 부여하고 있었고 지하1층에서 중이층까지는 계단이나 오픈된 공간의 형태, 알코브적 공간이나 원형으로 처리된 시청각실 등이 공간에 운동감을 부여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유기적 곡선으로 처리된 공간은 실내공간에 운동감을 만드는 동시에 각 공간을 레벨차를 이용해 위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루돌프는 이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에 있어 원형적 형태와 공간을 다용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상기한 형태와 공간이 실내공간에서 운동감을 유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건축물에서 원형의 알루미늄파이프에서 실내의 외플구조에 매입된 서클라인 형광등에 이르기까지의 형태에서 부터 카운터나 화장실 그리고 오픈공간에 이르는 공간적 처리까지가 원형에 기본을 둔 형을 취하고 있어 마치 루돌프가 원형편집광에 걸린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노출콘크리트로 처리된 실내공간의



②

- ① 1층홀에서 바라본 중이층으로 오르는 계단
- ② 기준층의 실내공간 천장이 외플 구조로 이루어 졌다.
- ③ 주출입구 부분
- ④ 각층 평면도 및 단면도
- ⑤ 옥상에 설치된 축소화 된 사당



③

모노코롬적인 표현이 실내공간이 확장된 역량을 지니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대부분의 건축물 외관이나 실내를 구경할 때, 항상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었는데 이 건축물에서는 건설회사사옥답게 이 건축물 전면에서 기웃거리는 우리일행을 수위가 친절히 각층을 안내해 주어 실내까지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고, 이 현대적(?) 건축물 옥상에 자리잡고 있던 축소화된 사당의 존재가 일본적이었다고 느꼈던 기억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후에 다시 홍콩을 방문해, 본드센터를 구경하였지만 공간적 완성도는 다이에이빌딩에 뒤떨어지는 감을 느꼈다. 다만 폴 루돌프의 근황을 그의 최신작으로 다시 대면한다는 감회는 있었지만...

4. 마이클 그레이브스와 스탠리 타이거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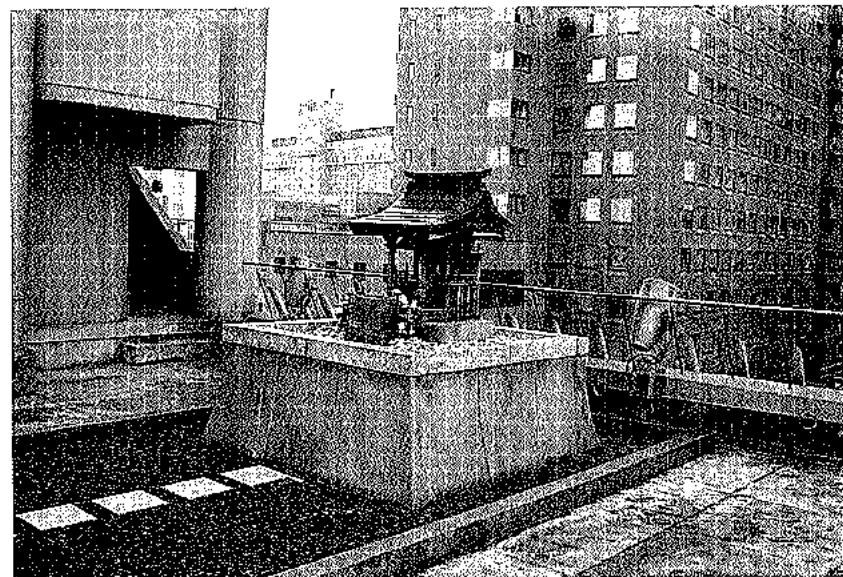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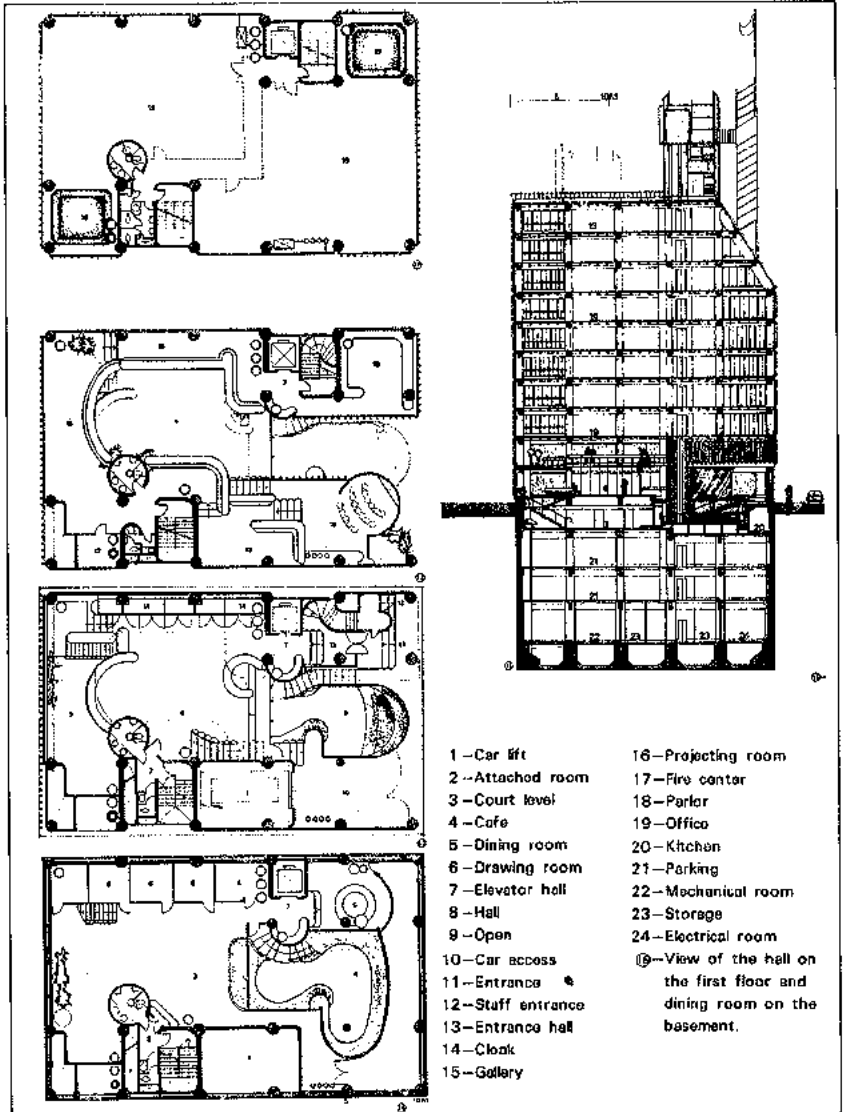
89년 나고야 디자인박람회와 상기한 폴 루돌프의 건축물을 방문한 다음, 일행과 떨어져 혼자 코베에 위치한 프랭크 게리의 파쉬댄스(Fish Dance : 1987)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후쿠오카박람회와 병행해 개최중이던 「후쿠오카해변의 도원경」이라는 건축전시회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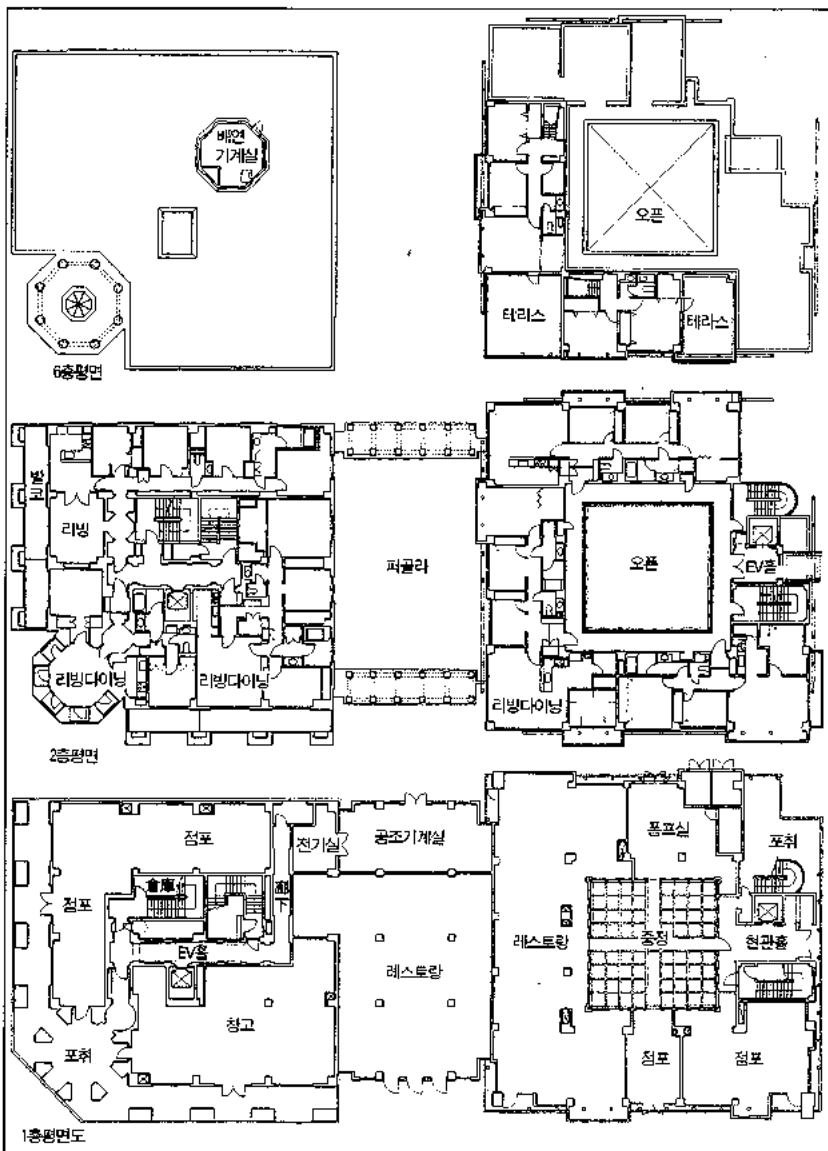
주택환경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시회는 베를린 IBA 건축전처럼 실제 집합주택을 건설해 놓고 전시회를 한 다음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건축전시회가 될 후쿠오카 가시이(香椎)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전시회도 병행하고 있었다.

물론 이 주택환경전에는 어제 소개할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나 스탠리 타이거맨(Stanly Tigerman) 외에도 구로가와 기쇼오나 요 쇼에이(葉 祥榮), 기지마 야스후미(木島 安史)가 설계한 전시관도 있어 후일 은행이나 전시관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시회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건축물은 상기한 외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집합주택 겸 전시관(전시회 기간동안 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로버트 벤츄리나 찰스 무어와 함께 미국의 탈 근대건축의 기수로 알려졌던 1934생의 프린스턴대학의 교수건축가로, 그의 포틀랜드시청사(Portland Building : 1982)는 탈 근대를 시청각매체로 전세계에 전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때 뉴욕 파이프(New York 5)의 일원으로 네오 모더니즘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모더니스트에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에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 후쿠오카 프로젝트 외에도 몇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혹은 완성하였다.

즉 일본에서도 그의 명성은 상업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축가 마이클 그레이브스와 스탠리 타이거맨의 건축물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후쿠오카해변의 도원경」이라는 주택환경전의 성격을 간단히 소개해야 될 것 같다.

이 전시회는 1987년 5월 시행되었던 「해변도원경 주택용지개발계획공모」에서 그 시발이 이루어졌으며 공모전의 주제는 「하카다(博多)만의 경관을 채색한다.」는 캐치프레이즈이었다. 주택단지는 탈단지라는 개념으로 출발해, 백도(百道: 100m의 길)라는 두 외국인 건축가의 집합주택등을 포함한 집합주택의 거리와 이 집합주택의 배경이 되는 독립주택단지로 계획의 골격이 구성되고 있었다.

집합주택의 설계에 있어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처럼, 집합주택과 관련된 기존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에 의한 공동체적 장점과 독립주택단지에 의한 프라이버시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는 구상인 것이다.

이런 개요를 갖고 있는 집합주택등을 설계하면서,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계획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계획지가 모서리부인 것에 나는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상점과 상층부에 있는 집합주택으로의 공공출입구가 지상에 있는 이 건물의 설계작업에도 흥미를 느꼈다. 이 집합주택은 거실이 가능한한 자연채광을 취하는 것이 제일의 포인트였다. 따라서 자연광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계획을 고려했다.

발코니는 소방방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되었고 내외부의 세계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냈다. 건축의 외장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풍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이 건물도 일본의 석조건축처럼 도시의 맥락에 융해될 것이다.”

이 백도거리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집합주택등은 집합주택인 동시에 이 거리를 알리는 랜드마크적 성격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는 모서리부에 8각형의 실린더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1층에서는 점포와 집합주거로의 입구를 암시하고 2~5층까지의 집합주거평면에서는 거실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6층인 옥상층에서는 옥상정원의 퍼골라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즉 이 실린더형 구조물은 실내에서는 기능적 장치이고 외형적으로는 이 거리의 존재를 알리는 형태적 장치인 것이다.



또한 1층에 주랑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점포공간을 활성화하도록 고려하고 있었다.

고전적인 3부구성의, 사암으로 마감된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동과 격자구조의 조합으로 구성된, 타일마감의 스텔리 타이거맨의 동은 인접해 있으며 1층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층부터는 분리,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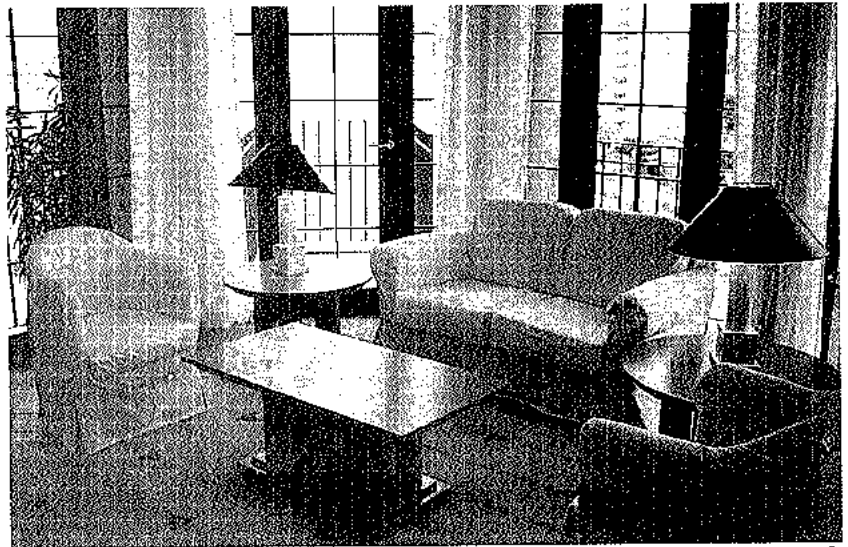
그레이브스는 형태적인 위계와 고전적 3부구성, 주랑과 8각형의 포취등의 건축적 요소에 의해 탈 근대적 성격을 이 집합주택에 강하게 부여하고 있었고, 실내공간에서도 그 분위기는 연장되고 있었다.

방문당시 마이클 그레이브스동의 1층부에서 FIAC(Fukuoka International Architects' Conference '89)이라는 이 집합주거동의 건축가들과 가사이 프로젝트의 건축가들(크리스티앙 드 뽀잠박, 램 쿨하스, 오스카 투스켓, 스티븐 홀, 마크 맥, 이소자끼 아라다, 이시아마 오사무)의 도시집합주택 건축에 대한 견해와 그의 실행될 작품들을 비디오와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스텔리 타이거맨은 국내에서는 그레이브스만큼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탈 근대성격의 작품을 하는 건축가이다.

1930년생의 이 건축가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인등과 타이거맨, 머큐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그의 집합주택동을 설계하면서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이룰 수 없는 시도"라고 표현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나의 신이론을



구체화한 건축이다. 1m의 격자로 구성하는 증정은 「원초적 개념적인 공동(空洞)」을 나타내며 치유곤란한 상처에 해당하고, 2m 격자로 구성하는 외측 프레임은 증정의 「치유곤란한 공동을 둘러 싸서 회복시키려는 이룰 수 없는 시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거실과 발코니가 이 프레임의 망을 돌파하여 튀어 나온 것이 이 건축의 특징이다."라고 그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스텔리 타이거맨동의 특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집합주택동의 중앙에 채광과 환기, 조망을 위한 정방형 오픈스페이스의 존재와 격자로 된 형태에 부분적으로 격자의 틀을 이탈해 물출하고 있는 거실의 존재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과거 데이지 하우스(Daisy House : 1977) 등에서

- ⑫ 백도 입구에 자리잡은 마이클 그레이브스 동
모서리의 8각형 구조물이 인상적이다.
- ⑬ 마이클 그레이브스와 스텔리 타이거 맨 설계의 집합 주택동 평면도
- ⑭ 그레이브스와 후면의 타이거 맨 동 전경
- ⑮ FIAC 전시회에 전시되고 있는 후쿠오카 가사이 프로젝트의 모형
- ⑯ 기준층에서의 거실부분 8각형 구조물의 실대이다.

폴리라는 개념은 파리 라 빌레트 공원현상에 당선되었던 베르나르 चु미(Bernard Tschumi)에 의해, 넓은 라 빌레트 공원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카페, 진료소등 편의시설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라 빌레트 이후 오사카 꽃박람회,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비디오폴리 등 각국의 이벤트 행사에 일종의 전시장치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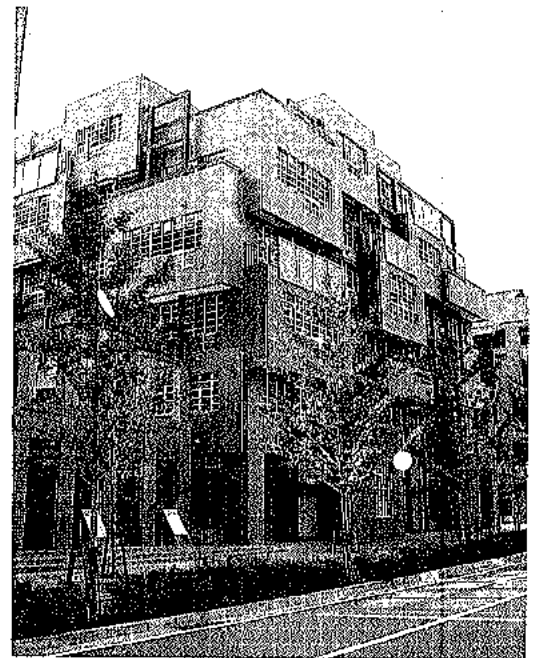
표현되었던 인체의 일부를 유추했던 그의 건축의 감각적 경향은 사라지고 격자시스템에 기본을 둔 합리적 경향에의 회귀는 그가 한때 미스 반 데 로에의 추종자였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다.

다시 후코오카를 방문해 가사이 프로젝트를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집합주택단지를 떠났다.

5. 오사카 꽃박람회의 폴리들

오사카 꽃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초대된 건축가들이 13개의 폴리를 건설하였다. 몰포시스, 라페냐와 토레스(José A. M. Lapeña, Elias Torres), 코프 험멜블라우, 자하 하디드, 안드레아 브란쥬, 크리스 맥도날드와 피터 솔터, 피터 윌슨, 다니엘 리베스킨드, 피터 쿡과 크리스틴 홀라, 엘레니 지간테스와 엘리아 젤렐리스(Eleni Gigantes, Elia Zenghelis), 그리고 스즈키 료지(鈴木了二), 야츠카 하지메(八束 はじめ)가 그들이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국적을 지닌 상기한 건축가들은 폴리(Folly)족, 19세기 영국에 유행했던 픽취레스크 정원에 건설되었던 특별한 기능을 지니지 않은 건축물을 꽃박람회라는 가설정원에 건설하려고 이곳 오사카로 모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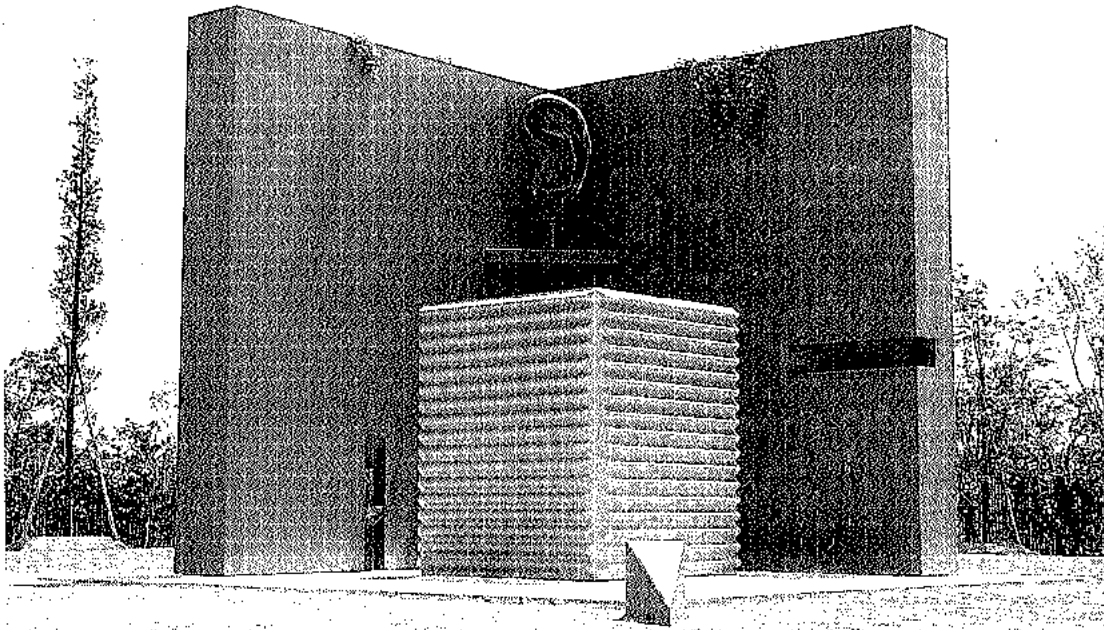
대부분의 상기한 건축가들은 각국에서 전위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로 꽃박람회의 종합프로듀서 아라따 이소자키와 AA스쿨의 학장이었던 알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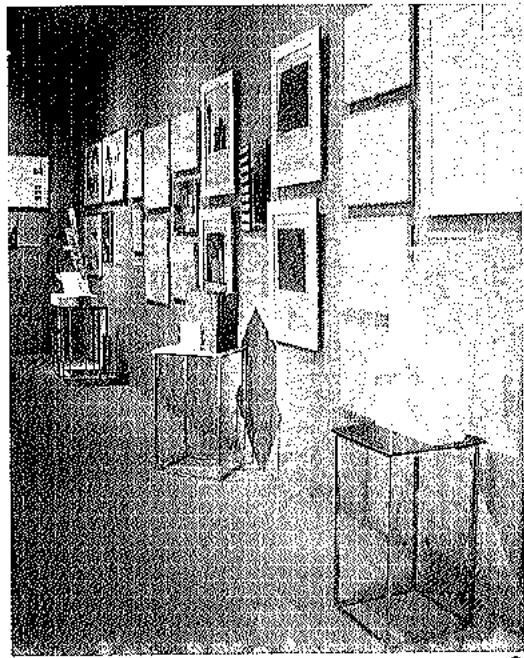
보알스키에 의해 선발되었다.

폴리라는 개념은 파리 라 빌레트 공원현상에 당선되었던 베르나르 चु미(Bernard Tschumi)에 의해, 넓은 라 빌레트 공원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카페, 진료소등 편의시설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라 빌레트 이후 오사카 꽃박람회,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비디오폴리 등 각국의 이벤트 행사에 일종의 전시장치로 등장하고 있다.

- ① 코베에 위치한 프랭크 게리 설계의 피스 댄스 1층에서 전시 중인 FIAC 전시회 풍경
- ② 스텔리 타이거맨동 격자의 입면구성이 인상적이다.



두개의 회색 벽으로 구성되어있던 이 폴리는 귀와 코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얼굴, 풀과 나무 등 자연의 아이템이 통합되고 있었다. 커다란 귀는 폴리의 주제인 「사람과 인공적 자연과의 새로운 드라마틱한 관계성」을 표현한 것이고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일종의 도덕같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오사카 꽃박람회에서는 휴게소나 기업의 홍보활동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넓은 박람회장의 한적한 곳 등에 이 폴리를 설치하여 박람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치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 폴리들은 거대한 오브제적인 것에서 개성적 표정을 지닌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주로 해체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것들이 선보였는데, 이것은 폴리의

개념을 선보였던 추미가 해체주의적 경향을 지닌 건축가였다는 점과 거의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폴리의 특징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도쿄의 GA갤러리에서 가사이 프로젝트와 오사카 꽃박람회 폴리들의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도면과 모형으로 보았던 폴리들의 실현작과의 조우인 셈이었다.

위낙 폴리들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관심을 가졌던 몇 개의 폴리를 설명함으로써 꽃박람회 폴리들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처음 조우했던 것은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브란찌(Andrea Branzi)의 폴리로 이소자키가 설계한 국제진열관앞의 잔디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개의 회색 벽으로 구성되어있던 이 폴리는 귀와 코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얼굴, 풀과 나무 등 자연의 아이템이 통합되고 있었다. 커다란 귀는 폴리의 주제인 「사람과 인공적 자연과의 새로운 드라마틱한 관계성」을 표현한 것이고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일종의 도덕같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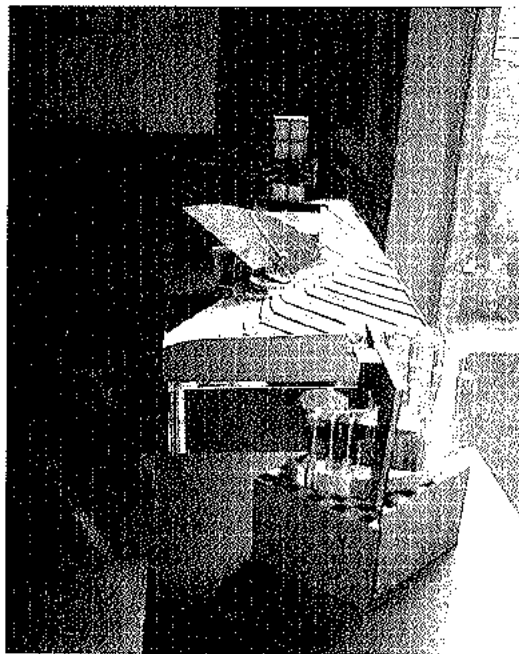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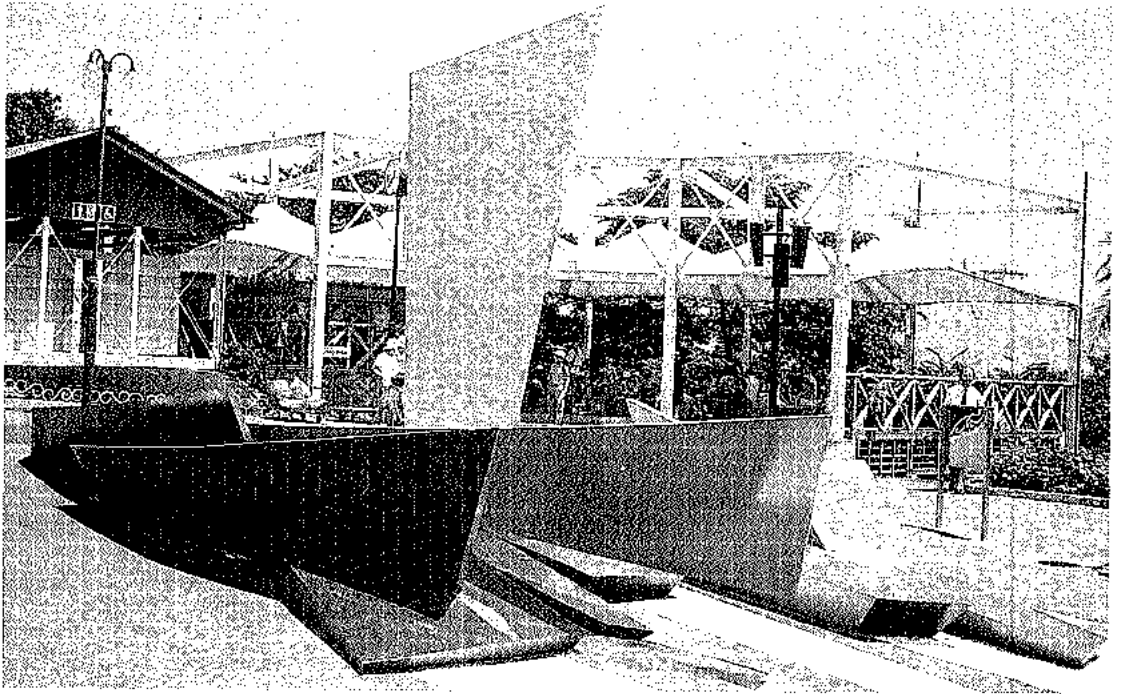
브란찌가 “인공은 바야흐로 새로운 자연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공적 세계중에 인간감각의 반응이 이 폴리의 주제인 것이었다.³⁾

다니엘 리베스킨드는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페이퍼 아키텍트의 오명을 벗어나려는 폴란드계 건축가로 현재는 상기한 프로젝트때문에 베를린에 머물고 있다.

③ GA 갤러리에서 개최된 오사카 꽃박람회에 전시중인 안드레아 브란찌의 폴리. 두개의 회색벽사이에 귀의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④ 오사카 꽃박람회에 전시중인 폴리의 모형과 도면들

우루과이 라운드의 여파를
 걱정하는 국내 건축가들은
 마리오 보타의 교보 프로젝트의
 진출 등을 람보의 출현처럼
 두려워 하고 있고,
 일본건축가들은 일본건축에 대한
 흥도의 기회와 자신감을 피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일제치하에 있어, 개방과
 쇄국정책의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던 선조들의 입장을
 떠오르게 하였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의 말이 이 폴리를
 대변하고 있다.

피터 쿡(Peter Cook)과 크리스틴 홀리(Christine Hawley)하면, 영국 아키그램(Archigram)의
 멤버로서 전위적인 활동을 했던 피터 쿡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 멤버였던 론 헤론이나 위렌 초크 등이
 각자의 독자적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있지만, 한때
 젊은 건축가들과 학생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던
 아키그램의 멤버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피터 쿡 역시, 페이퍼 아키텍트의 이름을 배틀런의
 집합주택으로 벗고 있으며 그는 이 폴리를 마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보기에 정적인 이 오브제는 내부로 들어 가면,
 투명한 지붕에서 물이 흘러 나오게 연출되어 있다. 이
 폴리는, 그가 설계한 구조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전설적인 전위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는 이라크태생의 불운의
 여류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현상설계에
 당선해, 실현을 눈앞에 두었던 홍콩 피이크
 프로젝트가 무산됨으로 그녀는 상당히 실망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인테리어 프로젝트 정도를
 실현시키고 있다.

그녀의 홍콩 피이크에서의 날아 다니는 이미지의
 건축단편처럼 이 폴리에서도 적색과 흑색의 예리한
 구조적 단편들이 비상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았다.

⑤ 건축적 단편들이 비상하는 듯
 한 자하하디드의 폴리

⑥ 전면의 피터 쿡과 후면의 아
 초가 하지메의 폴리모형들

리베스킨드의 폴리는 상자형 구조물에 삼각형의
 벽체의 단편들이 절단되어 돌출하고 있는 기하학적
 조형물로 내부에는 검은 색의 석판이 서있고, 구조물
 내면은 스테레스판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리베스킨드는 이 폴리의 주제에 대한 질문에
 “주제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지만, 부재와
 무, 경험이라는 텔레케이트한 단어가 이 조형물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은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경험해야

하디드의 폴리는 몇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박람회종료후 후쿠오카의 가시이프로젝트의 주택광장으로 이설될 예정이다.

비상하려는 그녀의 건축물처럼, 그녀의 건축적 성과도 비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폴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크리스 맥도날드와 피터 솔터(Chris Macdonald, Peter Salter)는 생소한 이름의 캐나다와 영국출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폴리는 일본의 민가를 연상시키는 목구조의 상자형 구조물이었다.

내부에 들어가면 상부는 하늘을 향해 개방되어 있고, 일부는 표주박형을 한 탱크가 걸려 있었다.

이 폴리의 외벽에 사용된 흙은 일본 각지에서 수집된 것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비바람에 의해 그 표정이 변할 것이다.

솔직하고 가식이 없게 마감된 이 폴리는 원초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목재와 흙등으로 구성된 자연적 재료가 물과 공기에 용해되면서 도시공간의 불협화음에 시달리는 관람객들에게 원초적 감정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폴리를 다 돌아 보고 나서 느낀 것은 국내와 일본에 있어 외국건축가들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르파이 라운드의 여파를 걱정하는 국내 건축가들은 마리오 보타의 교보 프로젝트의 진출 등을 람보의 출현처럼 두려워 하고 있고, 일본건축가들은 일본건축에 대한 홍보의 기회와 자신감을 피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일제치하에 있어, 개방과 쇄국정책의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던 선조들의 입장을 떠오르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하나라는 구호처럼 개방화 추세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건축인들은 대책이 없는 막연한 패쇄적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건축언어와 철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빛과 비바람, 풍토에 의해 훌륭한 약효를 생성하는 우리의 인삼은 다른 나라에 심으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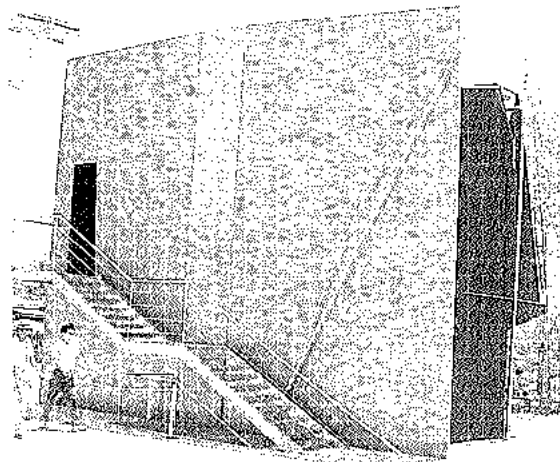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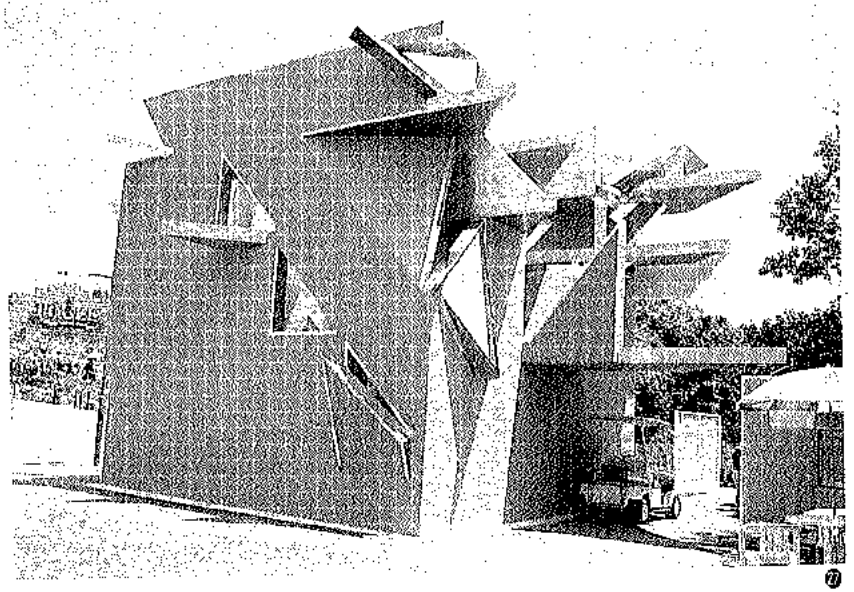
인삼처럼 그런 고유하고 독창적인 건축물로 국내외에 우리의 건축을 홍보할 날은 언제가 될지 기다려지는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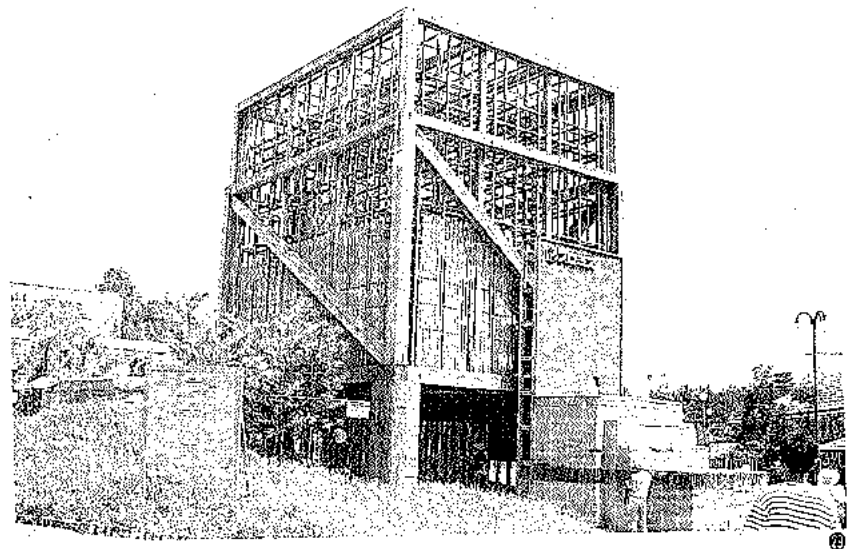
1) "建築の謎": Paul Rudolph(Atu 1977년 7월 임시증간 Paul Rudolph 작품집), P8

2) "福岡 シーサイドもち住宅環境展": Michael Graves(新建築 住宅特集 1989년 6월호), P. 30

3) "ネオモダン 建築 13相"(FP 1990년 7월. 31호), P. 44



- ㉑ 리베스킨드의 폴리
- ㉒ 피터룩의 폴리
관람객이 내부로 들어가면 지
붕에서 물이 흘러 내린다.
- ㉓ 맥도날드와 솔터의 목재로 구
성된 폴리



조선시대 말기 교육시설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 Facility from 1875 to 1905

李榮漢

(주)아키프렌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an

1. 예비적 고찰

1. 교육의 일반적 성격

1) 근대적인 학교교육제도

구한말 정부는 종래의 經書中心의 교육을 지양하고 세계 정세에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에서 혁신적인 氣風을 세우고 실력을 배양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95년에 선포된 한국 최초의 헌법에서 서구식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官學에서 서양의 근대교육을 수용하여 국가의 중흥을 꾀하였다. 또한 개항이후 민족의 선각자와 각종 단체들은 신문화의 수용과 국권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혁신관료들이 정부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甲午改革이 진행되었다. 1894년 協藏制 입법기관인 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하는 새 혁신 정권이 수립된다. 이 정부의 수반인 영의정은 金弘集이었으며, 이 기구에서 교육행정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한 기구가 學務衙門이었다. 학무아문에는 전문학무국이 있어서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등을 맡았다. 또한 군국기무처는 많은 사람들을 근대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인 학무아문의외에 工務衙門, 農商衙門 안에 기사들의 학습과 시험을 맡아보는 기구들을 설치하였다. 1895년 칙령 제46호 학부관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학교 교육제도가 법제화되었다.

2) 미국의 新敎 유입과 宣敎私學

1882년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은 조선정부와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개신교를 전파한다. 한미수호조약에서 미국측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기독교의 공개적인 전도사업은 여전히 규금의 상태로 있게 된다. 1884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 선교사들은 전도의 한 방편으로 많은 학교를 설립한다. 이들 사학은 주로 미국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게 된다. 1900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이 호전되면서 포교활동이 활기를 띠며 한일합방 이전까지 신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기독교는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들 기독교계 학교의 건학정신은 신문화의 도입과 기독교인을 교육하려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2. 각 학교의 변천과정

1) 官學 및 民族私學

通譯學校는 參議와 協辦의 직위에 있었던 金玉均에 의해서 1883년에 설립되어 개화운동에 필요한 通譯官의 養成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첫 학교였으나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폐교하게 된다.

機器廠의 加工機能傳習班은 혁신관료 金允植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기술자 4명을 초빙하여 기초자연과학과 기계학을 배우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적 기술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廣惠院은 1885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인 국립병원으로서, 의료행위와 서양의학을 교육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민의료기관인 惠民院과 活人署는 폐지되어 새로운 의료기관인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병원은 설립되며 일반백성의 병을 치료하는 廣惠의 뜻으로 廣惠院이라고 칭하였다. 광혜원은 1899년 의료와 교육의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기능은 지식영을 교장으로 하여 관립 제중원의학교가 된다.

법관양성소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司法檢察機構가 근대적으로 개편되어 많은 사법기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법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폐지되었다가 1903년에 다시 개소된다.

상공학교는 1899년 상업과와 공업과로 구성되어 설립되며 1904년 농과를 증설한 후에 農商工學校로 개편된다.

보성학교는 1905년 李容翊에 의해서 설립되며, 법률, 경제 및 농상공업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먼저 법률, 경제양과를 설치하였다. 이 학교는 한성법학교, 돈명외숙과

강희학당이 해산되어 생긴 학생을 수용하였으며, 1906에 인쇄기관 普成社를 설치하는 등 민족문화운동을 펼쳤다.

2) 基督教系 私學

이화학당은 1886년 감리교 여선교사 Mrs. M. F. Scranton에 의해서 설립된다. 숭실학당은 1897년 미국 북장노회 선교사 W. M. Baird(배위량)에 의해서 관서지방의 개화와 기독교의 중심지인 평양에서 설립된다. 이 학교는 1900년에는 수업연한 4년의 중학교로 발전하며, 1905년에는 미국의 장노교와 선교부가 대학의 합동경영을 합의하여 대학부를 신설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이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1904년 Oliver R. Avison에 의해서 뉴욕 북장노회 외교선교부의 도움으로 설립된다. 이 병원은 기존에 서울에 있던 간이진료소의 중심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및 의학교육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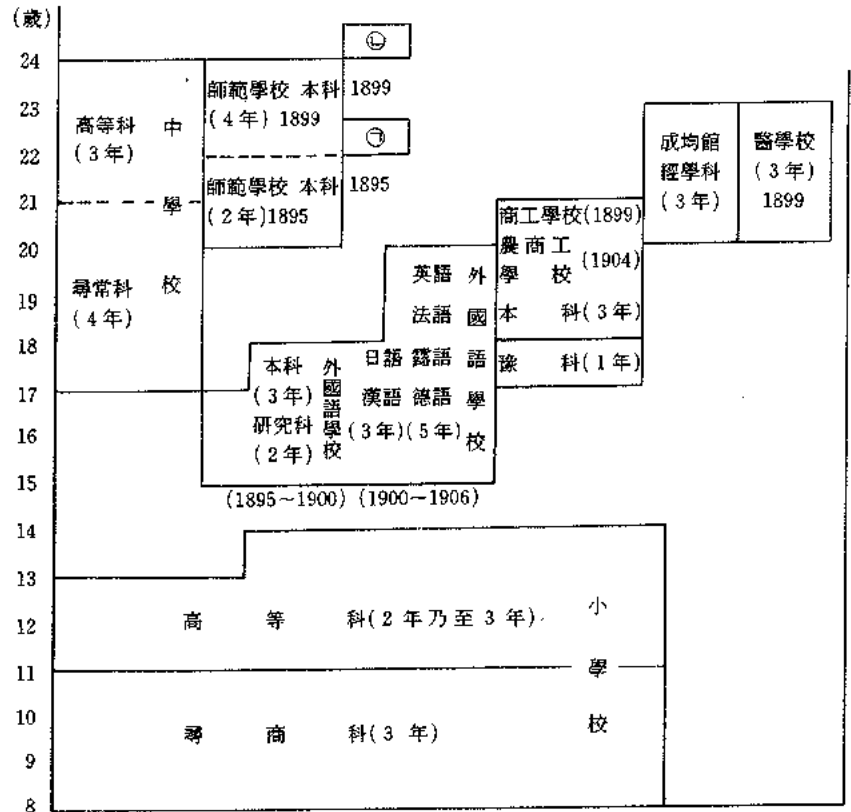
3. 학교시설 관련 설계 및 시공조직의 특성

각 학교들은 설립당사에는 기존 한식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그후에는 한식건물을 신축하며 본격적인 교사건물로서 양식건물을 신축한다. 기존한옥을 개조하거나 한식건물로 교사를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건물설계는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시공청부는 韓式木手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양식교사는 외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한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 시공청부업자에 의해서 공사되었다. 이화학당의 Main Hall은 미국에서 건축설계도를 가져와서 공사를 행하였는데,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마츄어 건축가가 아닌 전문적인 건축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브란스병원은 캐나다 건축가 H. B. Gordon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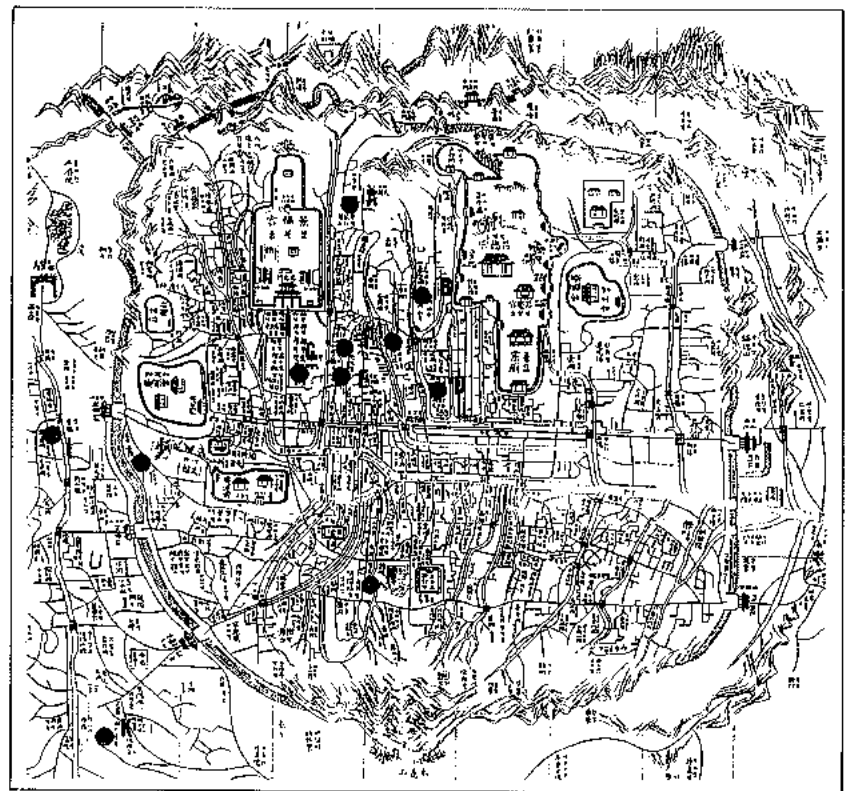
이러한 건축조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시기에는 설계와 시공청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들은 기초적인 설계를 하고 많은 부분은 시공청부업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설계과정에 있어서 설계자의 역할 못지 않게 시공청부업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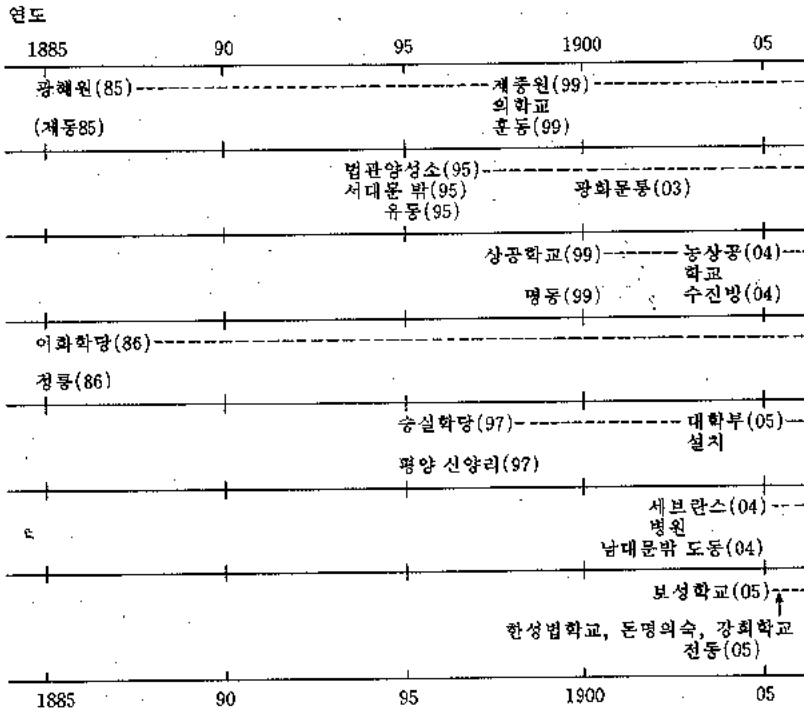
둘째로, 양식건축의 설계는 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되거나 미국에서 설계도를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설계과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축은 한국적인 통양이나 대지의 장소성을



[도-1] 1895~1905년의 학교 제도



[도-2] 조선시대 말기 각 학교의 행정지리적 입지 현황



[표-1] 조선시대 말기 각 학교의 변모과정

양식건물을 신축시에 한국인 건축기술자들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한국인 기술자로는 沈宜錫이 있다. 그는 1887년부터 중요한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여하며, 서양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당, 학교건물을 시공청부한다.

고려하지 못하고 洋式建築을 획일적으로 移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로, 양식건물을 신축시에 한국인 건축기술자들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한국인 기술자로는 沈宜錫이 있다. 그는 1887년부터 중요한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여하며, 서양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당, 학교건물을 시공청부한다. 1887년에 배재학당을 지은 인연으로 내무아문의 기사가 된다. 1897년에 이화학당 메인홀을 건축하는데, 이 당시 그는 10년 이상 양식건물공사에 관하여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는 크게 활동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메인홀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메인홀은 다른 양식건물에 비하여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입지유형분석

1) 각 학교의 입지분석

통변학교는 한성부의 齊洞(B)에서 설립된다. 가공전습반은 삼청동 배창에 있던 兵品廠에서 개설된다. 광혜원은 구 외부아문에 인접하고 있는 재동에 있는 洪英植家(B)를 물수하여 개원되며, 1887년에 구리개(東峴)에 있는 에비슨의 집으로 이전된다.

1899년에 의학교로 개편되면서 전 총리대신이며 혁신관료였던 金弘集의 집(C)으로 이전하게 된다.

법관양성소는 서대문밖 鎭洞(I)에서 설립되며, 1903년 광화문동(G)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유동은 鎭洞이라고도 하였으며 敦義門 바로 밖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는 한정부청이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서대문사거리 일대로 추정된다. 1903년에 이전한 장소는 한성부시대 호조자리로서 광화문동의 전기통신공사 자리로 추정된다.

상공학교는 명동(H)에 설립되며, 1904년에 수진방(E)에 있던 제용감으로 이전한다. 명동교사는 명례방 청국대사관 동측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수진방으로 이전한 후에는 선린상업학교에서 인수하게 된다. 농상공학교 수진방터는 일찍부터 재상의 주택지로 사용되었으며, 한성부의 중학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용감은 조선시대 宮屬官廳으로서 궁중에 진상하는 물품의 보관과 납품을 관장하였다. 제용감의 성격은 농상공학교의 성격과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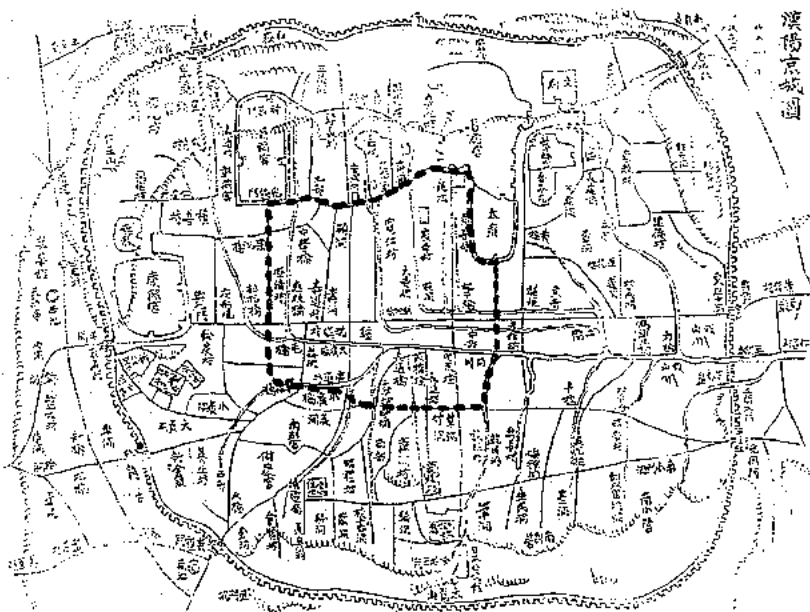
보성학교는 전동(F) 구노어학교 교사에서 설립되며, 곧 金敎獻의 주택으로 이전한다. 이 학교가 노어학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설립자 이용익이 新露性向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화학당은 정동(J)에 있던 설립자인 스크랜튼부인의 자택에서 개교한다. 학당주위 길 건너 동쪽에는 덕수궁이, 남쪽으로 담남어서는 배재학당이, 길 건너 동쪽에는 미국대사관이, 길 건너 동북방에는 러시아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학교는 이국적인 정서를 풍기는 정동에 자리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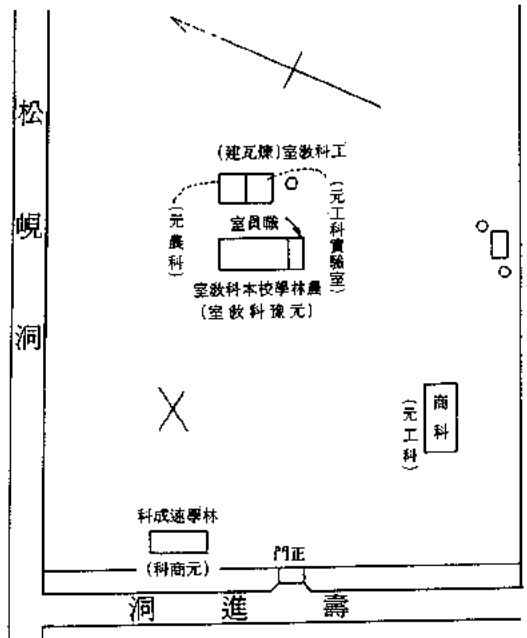
세브란스의학교는 남대문밖 동측구룡의 도동(K)에서 설립되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한성부의 관문인 남대문정거장이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주변지역을 관조할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하였다.

2) 행정지리적 입지유형 분석

관학과 민족사학은 그 대부분이 서측으로는 경복궁과 광화문동을 경계로 하고 남측으로는 종각을 중심으로 하는 六美園이 있었던 종로동, 동측으로는 종묘와 창덕궁, 북측으로는 돈화문과 광화문을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에워쌓여진 범위에 입지하였다. 한성부는 성내와 城底十里로 이루어지고 5부 49방으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었다. 위의 지역은 5부중 중심구역인 중부에 해당되며 중부 내에서도 종로동의 북측에 입지한다. 이 지역 이외의 장소에 입지한 학교로는 삼청동에 위치한 가공전습반, 서대문밖 유동에 위치한 법관양성소,



[도-3] 漢陽府의 中部 배치도



[도-4] 農工商學校 蕪進坊校舍 추정 배치도

명동에 위치한 상공학교가 있었는데 법관양성소와 상공학교는 1903-4년을 기하여 상기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1905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지역에 입지한다.

기독교사학은 한성부 중부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게 되는데, 한성부의 서부에 속하는 정동에 위치한 이화학당,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던 남대문역 근처인 복숭아골에 위치한 세브란스의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3) 장소적 입지유형의 분석

이 시기에 설립된 학교는 규모가 비교적 컸던 양반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관공서 및 기존교사를 사용한다. 기존한옥을 개조하여 자리잡은 학교로는 광혜원과 이화학당, 제중원의 학교, 보성학교 등이 있다. 특히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사학은 설립자인 선교사의 자택인 전통적인 한옥에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사로 사용된 한옥은 구한말시기에 개화파의 혁신관료소유의 주택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에 자리잡은 학교로는 육영공원, 농상공학교, 광화문통의 법관양성소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학교의 소속관서와 관련이 있는 관공서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배치유형분석

1) 각 학교의 배치분석

이 시기의 교사배치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관학인 농상공학교 수진방교사, 법관양성소 광화문통교사, 광혜원 제동교사와 기독교계 사학인 이화학당

정동교사, 승실학당 평양 신양리 교사, 세브란스의학교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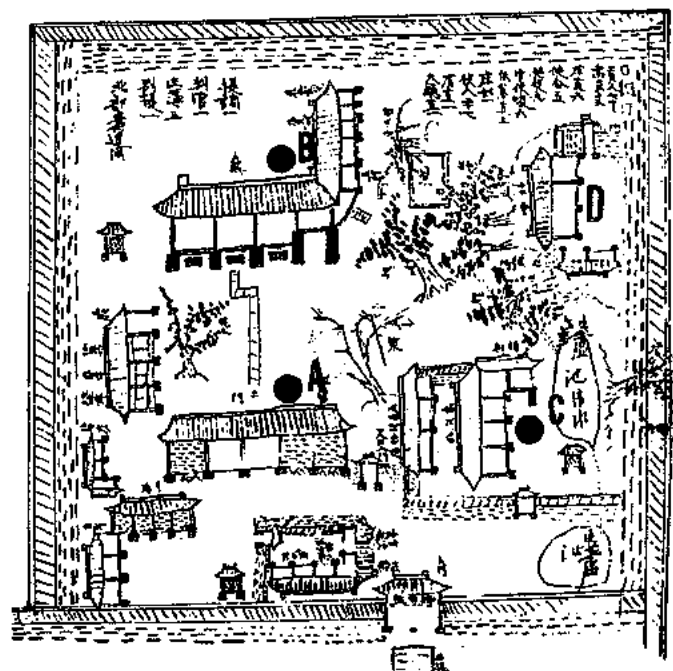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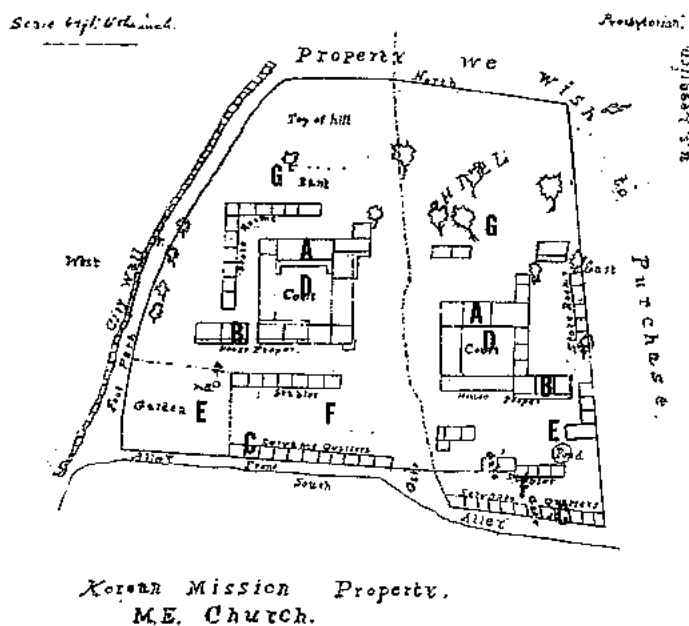
농상공학교 수진방교사는 조선시대의 濟用監자리에 위치하였다. <도-4>배치도는 이 학교에 관련이 있었던 45인의 애기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건물의 배치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좌측에 원래는 상과건물이며 후에 입학속성과 건물이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며 그 뒤로는 덕풍유치원(X자표시)이 있다. 그 뒤로 농림학교 농과교실, 공과교실이 있다. 정문의 우측으로는 상과건물이 전면도로와는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 작은 건물이 하나 있다. 그리고 공과교실 우측에 槐나무(O자로 표기)가 있다.

이 농상공학교는 배치에 있어서 제용감과 같다. 즉 제용감 <도-5>에서 A는 덕풍유치원으로, B는 농과교실로, C는 상과로 사용하였으며 B건물 뒤에 煉瓦造로 공과교사를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도-5>의 B건물과 <도-8>의 사진에서 농과교사는 ㄱ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도-4>에서 一字型으로 표기한 것은 추정배치도를 약식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학교의 배치도에는 전면에는 수진동이 있으며, 좌측에는 송현동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치의 향은 남서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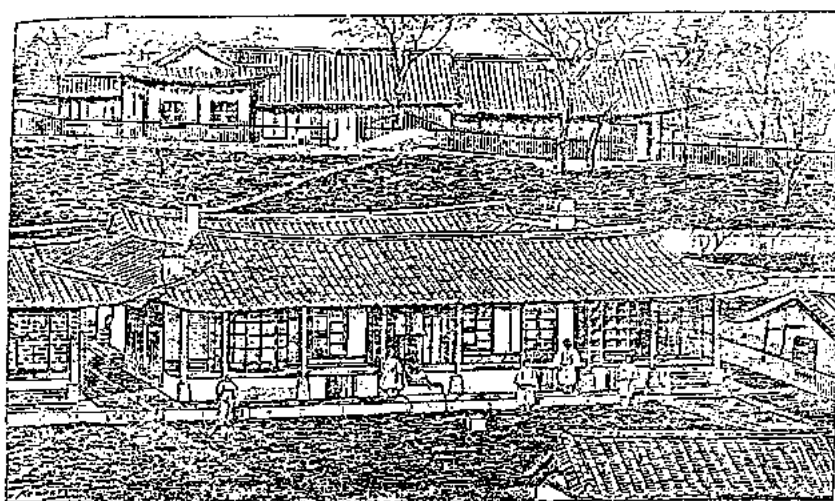
이화학당이 개축하여 사용한 최초의 교사는 설립자인 스크랜튼여사의 주택이었다. 이 주택의 측면에는 아펜젤러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주택은 전형적인 한옥주택으로 1885년에 6120평의 대지에 큰 집 한 채와 작은 집 18채가 있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설립된 학교는 규모가 비교적 컸던 양반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관공서 및 기존교사를 사용한다. 기존한옥을 개조하여 자리잡은 학교로는 광혜원과 이화학당, 제중원의 학교, 보성학교 등이 있다. 특히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사학은 설립자인 선교사의 자택인 전통적인 한옥에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도-7)에 의하면 행랑채(C)와 행랑마당(F)이 있고, 중간에는 사랑채(B)와 사랑마당(E), 안쪽에는 안채(A)와 안마당(D)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일 안쪽에는 후원(G)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한옥을 일부 개조하여 각 건물별로 적절하게 교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화학당은 女子學堂과 婦女院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1886년에 준공하였는데, 한국칸수로는 195.5칸이었다. 이 신축한옥은 ㄷ자형의 평면으로 되어있는데, 〈도-6〉, 〈도-7〉, 신축교사 전경사진인



(도-9)를 분석하면 □자형의 안채에서 전면부(House Property라고 쓰여진 바로 위부분)를 헐어내고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승실학당 평양 신양리교사는 평양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1901년 조선교회 선교사의 찬조로
있다. 이 누마루도 원래는 다른 종류의 문을
설치하였을 것이나 격자형의 유리문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학당은 학생들이 실습을 겸하여 교사를 1886년 준공한다. 이 교사는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기와집으로 높이 산 축대위에 세워져 있고, 7, 8개의 방들이 꼭 늘어져서 놓여 있고, 그 앞에 마루가 놓여져 있었다. 마루 끝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끝방에는 스크랜톤 부인과 교사들이 사용한 방이었고 그 가운데 방6개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였다. 이 건물은 전면부 벽면에서 외건주선 내부에 외벽면석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마루를 두었다.

이화학당은 최초의 신축교사인 한옥을 헐어버리고 1896년에 붉은 벽돌로 2층 양옥을 짓기 시작하였다. Main hall이라고 칭하여 진 이 건물은 1900년에 준공되었으며, 교사숙소, 교실, 강당, 학생기숙사, 사무실, 회계실등이 수용되었다. 이 건물은 ㄷ字型 평면으로 1층과 2층 일부에는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았다.

숭실학당은 1901년 2층 한식교사를 준공한다. 이 건물은 32'×40' 평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6개의 16'×16' 교실과 16'×40' 방 하나로 이루어졌다.

1층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에 전후면, 좌우측면에 퇴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졌다. 1층 네모퉁이 퇴칸 1칸을 실외로하여 외부공간화하였다. 주출입구는 전면 御間에 위치해 있다.

2) 평면유형의 분석

기존한옥 한식교사 양식교사
교사로 개조 신축 신축

이시기의 학교들은 초기에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며, 학교의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존 한옥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관학과 민족사학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학교는 규모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새로운 신축행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규모에 맞는 한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후에는 한옥의 개조보다는 한식건물로 교사를 신축하며,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양식건물로서 교사를 신축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계 사학에서 평양부 서문밖에 한식 2층교사를 준공한다. 이 학교가 위치한 장소는 평지로 이루어졌으며,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마주보고 선교사 사택지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2) 불럭배치유형의 분석

기존 한옥을 1교사로 사용한 학교는 기존 건물이 分棟型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학교의 각 기능에 따라서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 예로는 농상공학교 수진방교사가 있다. 이러한 유형 교사는 口字型을 기본 단위로 불럭배치되어 있으며, 교지를 둘러서 한식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울타리의 중앙에 솟을 대문의 정문이 있다. 그 내부에는 여러 건물에 의하여 여러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건물들은 別棟으로 되어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Scale로 되어 있다.

새로이 교사를 신축한 학교의 교사는 단독건물형으로 이루어지며 한 건물안에 여러 기능 즉, 사무실, 강당, 교사, 기숙사, 관사 기능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특히,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교사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으며, 예배당 성격의 강당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이화학당 신축교사를 들 수 있다. 이 단독형은 단독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의 배치가 결정되는데, 교지를 경계지우는 울타리가 없이 단독교사가 직접 외부로 노출되며, 주변의 소규모 건물이나 외부공간은 이 주건물에 의하여 지배된다.

새로이 교사를 신축한 학교의 교사는 단독건물형으로 이루어지며 한 건물안에 여러 기능 즉, 사무실, 강당, 교사, 기숙사, 관사 기능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특히,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교사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으며, 예배당 성격의 강당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이화학당 신축교사를 들 수 있다. 이 단독형은 단독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의 배치가 결정되는데, 교지를 경계지우는 울타리가 없이 단독교사가 직접 외부로 노출되며, 주변의 소규모 건물이나 외부공간은 이 주건물에 의하여 지배된다.

4. 평면유형분석

1) 각 교사의 평면분석

광혜원 제동교사는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되었다. 이 병원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알랜은 “다만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장소에 대형 한옥 1동과”라고 구한국 정부에 건의하여 마련된 건물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외벽체에서 좌측 2칸은 외진주선에 외벽면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측 3칸은 외진주선의 안쪽에 외벽선이 있다.

농상공학교 수진방 농과교사동은 정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을 한 한식건물인데, 정면 4칸중에서 좌측 1칸은 외진주선에 외벽면선이 놓이지만 중앙 2칸에는 외진주선에 유리문이 설치되었다. 원래의 건물에는 유리문이 없이 외벽선이 외진주선의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교사로 용도변경되면서 이 마루공간을 유리문을 설치하여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측의 1칸 공간은 루마루식으로 하여 좌측의 3칸에 비하여 바닥을 높게 설치하고



농 학교 의 교 사 동
[도-8] 농상공학교 露進坊校舍 農科 건물

양식건축으로 신축된 교사는
우선 그 당시 지어진
양식건물중에서 큰 규모로
건축되는 등 규모에서 특보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능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
집중형 평면을 보여 준다.

비록 규모에서 거대하였지만, 외벽체구성방식은
전통한옥과 같았으며, 외부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외진주선과 외벽선을 배열하였다. 숭실학당
한옥교사는 한식구조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코너기둥을 강조하여 전통건축에서는 생소한 처리를
한다.

양식건축으로 신축된 교사는 우선 그 당시 지어진
양식건물중에서 큰 규모로 건축되는 등 규모에서
독보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능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 집중형 평면을 보여 준다.



[도-10] 숭실학당 초기 한옥 교사

강하게 나타난다.

초기 한옥을 교사용으로 개조한 유형의 특징은
실내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조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마루공간은 외부에 면하여 유리창문을
성치하여 실내공간으로 개조된다. 즉 외진주선에
외벽면선을 일치시켜 최대한 실내공간을 확대한다.

한식 교사를 신축한 유형은 기존 한옥에 비하여
거대한 스케일로 신축하여 2층으로 하거나 1층의
간수를 크게 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조선시대에 일반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한식건물은
전통목수들이 새로운 양식건축기술을 습득하여
서양의 건축설계가와 공동으로 건축 설계·공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초기의 교사로는 기존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한옥식으로
교사용건물을 신축하며, 이 과정에서 건물의
스케일이나 세부 수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건축과는
무관한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렇다가 양식건물로
교사를 신축한다.

참고문헌

- 1) 金永上, 서울 600年, 韓國日報社, 1990
- 2)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大出版部, 1984
- 3)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 도서출판 한아당, 1989
- 4) 이만열편, 아펜젤러,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 5) 김정호, 首善全圖영인본, 광우당, 1983
- 6) 수원고등농림학교일람, 1931
- 7) 이화8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80년사, 1967
- 8) 평양숭실학교, 숭실학보 제1호, 1915
- 9) 金晶東,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1)-(15), 건축사, 1987, 2-1988, 2
- 10) 李榮漢外, 근대한국 초중등학교의 건축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7, 8



[도-9] 이화학당 韓屋校舍

5. 맺음말

구한말 시대상황에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한말 정부는 기울어가는 국문을 되살리기
위한 기본정책의 하나로 서구의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근대적이고 실리적인 교육을 시행하려
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들도 조선에서
교육을 매개로 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급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종류와
성격의 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그 학교건축은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환경에 적응 및 대응한다.

학교의 입지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학교 설립자의 정치성에 의하여 결정되어
해당 정치세력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관학과
민족사학은 한성부에 전통적으로 정치의 중심지였던
중부중에서 종로동 북쪽지역에 위치하여, 이러한
경향은 국운이 기우는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심화된다. 기독교계 사학은 서구거류민의
집단지거지였던 정동을 중심으로 입지하며, 또한
새로운 개발지, 교통요지에 입지하게 된다.

학교건물의 배치 및 평면공간은 전통건축의 적응과
서구양식건축의 수용이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간다. 이러한 특성은 건축
설계·시공조직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 (9)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배원태 / 構美건축구조연구소장
by Bae Won-Tae

인류최초의 주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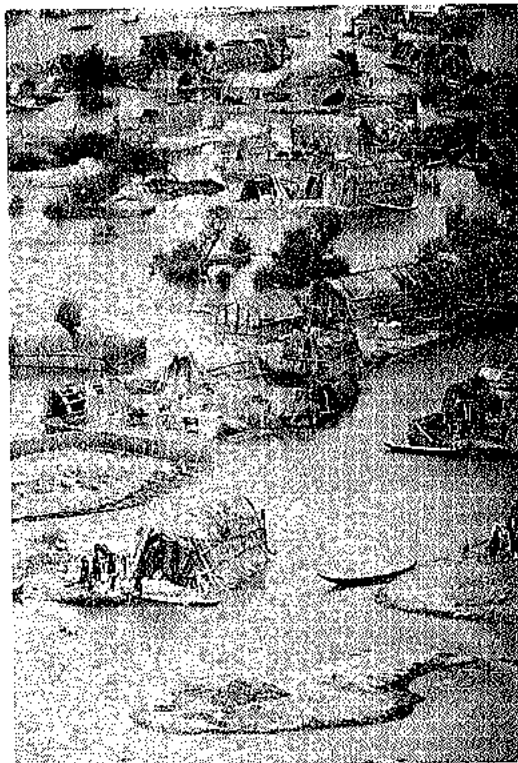
1. 갈대집 (Grass and reed nocturnal shelter)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두 강이 어울려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넓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인류문명이라 거의 변화가 없는 주거생활이다. 이곳에서는 늪과 갈대숲과 개펄의 풍경이 끝없이 계속되고 그들의 생활은 6천년전 강하구의 물과 갈대뿐인 토지에 최초의 유목민이 정주하여 만들어낸 양식 그대로이다.

옛날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개펄에서 물고기를 잡고 부풀지 않는 빵을 굽고 물소를 기르고 높고 큰 아치형의 갈대집을 지어 살고 있다. 이곳에는 기원전 4천년 경 수메르인이 가축으로 삼은 아래 지금까지 이곳의 불가결한 동물인 물소(사람들은 그 젖을 마시고 분(糞)을 연료로서 이용한다)의 오두막도 있다.

이 지방(marshland area)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고 돌이나 채석장도 없다. 이곳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인 갈대로 집을 짓는다.

필자는 갈대로 만든 이색적이고 특이한 주택으로 찾아 들어가 보았다. 대문도 갈대이며 담장(울타리)도 갈대로 만들어졌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갈대로 짠 틈사이로 공기가 통하고 그들이 저 생각보다 시원했다. 집 전체가 하나의 방으로 되었는데 연결하여 배치하기에 따라 1동씩 직각방향으로 붙여 몇개의 별실로 연장, 연결도 된다. 내부에는 기둥이



없이 큰 폭의 실내와 높은 Arch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모두가 갈대로 만들어진데 놀랐다.

또 Baghdad의 Tigris강변에 이러한 갈대로 지어진 찻집이 있는데 의자와 Tea Table까지 갈대로 엮어만들어 도속적 고유의 맛이 있었으며 가끔 시간이 날때 차 한잔 하는 그 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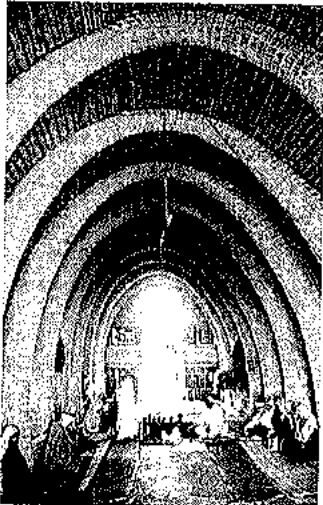
“우리의 서울도 한강변에 이러한 고유의 한옥(초가나 기와집)으로 찻집이나 Rest House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옛날 초가집에 살 때 이 사람들은 풀로써 이렇게 큰 Span의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것이 얼마나 구조적이었으며 건축적인 합리성과 기초가 되어 있었던가를 볼 때 이러한 사고력이 고대문명을 탄생시킨 잠재력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렇게 연약한 갈대로 큰 공간의 집을 지은 그 지혜에 놀랐다.

이러한 집은 남부지방 늪지대의 갈대가 많은 지방의 주거형태이며, 늪지대의 주변인 물가에 주로 위치하여 Water Magic of the Marshes라고 표현된다.

이곳 늪지대의 갈대는 20Fect(6m) 높이까지 자란다고 한다. 갈대집은 이 갈대를 잘라 다발로 묶는데 갈대기둥 다발의 하부는 땅속에 1m깊이로 묻어 세우며 위쪽이 가늘어 이 다발을 휘어서 두개의 다발을 마주치게 하여 하나의 갈대다발 아치기둥을



2



3



4

- ①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의 갈대집들
- ② 갈대집의 내부
- ③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에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늪과 갈대숲의 풍경
- ④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
6천년전 물과 갈대뿐인 강하구에 최초로 유목민이 정주하여 그들의 생활양식인 갈대집을 만들어 냈다.

만든다. 이러한 아치로 된 갈대다발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며 이 아치기둥에 가로로 작은 갈대다발을 가로대로 걸치고 그 위의 지붕과 벽에 풀과 갈대로 짠 돛자리같은 갈대거적을 얹어 만든 집이다.

이러한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대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뿐이다.

우리도 생각을 잘하여 갈대보다 더 좋은 대나무다발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더욱 거대한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생각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最古의 기둥, 아치, 둥근 지붕을 활용한 집이 세워졌으며 인류최초의 갈대 아치주택을 지금까지도 이곳 주민들은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어 살고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는 건축양식일 것이다.

2. 흙집

인류는 수렵과 유목의 시대가 지나서 농경시대에 들어 농본경제조직의 문화발전을 가져왔으며 최초의 농업발상지는 최근 조사로 메소포타미아 동부에 농인 자그로스산맥의 서남쪽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양 강 유역에서의 곡물재배로 수메르인시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메르인은 기름진 평야에 식량 우려가 없는 농경생활을 했으므로 여유있는 시간과 노력을 흙집(Pise Housing)건설의 정착생활에 들었던 것이다. B. C. 5천5백~4천2백년경의 「핫수나」유적과 B. C. 4천8백~3천6백년경의 「야르모 주택」은 이를 입증하는 유적들이다.

핫수나는 티그리스강 상류 현재의 Iraq의 모술에 가깝고 그 발상은

우베이드朝(4천5백~3천 B. C.)부터여서 인류史上 最古最初의 작은마을(小寒都)에 속한다.

핫수나의 「우물이 있는 흙집」은 1952년의 발굴에 의하면, 地面에 갈대돛자리와 아궁이의 흔적이 있고 우물이 있는 흙집은 남북2호가 맞붙은 계획이었다.

남쪽 흙집은 前庭과 창고, 현관, 주방, 침실 등이 있고 이웃집 마당에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서쪽에 공동의 작업장이 있다. 흙으로 된 벽은 흙에 벼짚을 섞어 Buttress로 보강하여 구축하였다.



문턱은 土器質이며, 돌로 만든 門軸받이, 灰혼합의 바닥등이 있으며 특히 놀랄만한 사실은 배수구가 石造로 前庭에서 집 뒤까지 설치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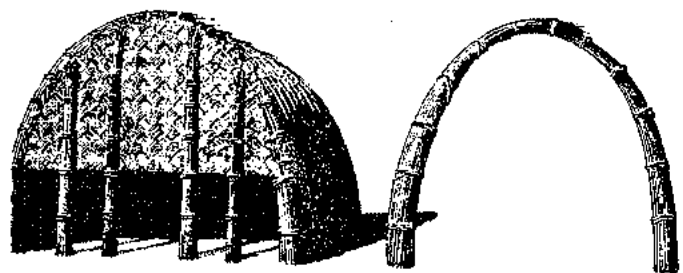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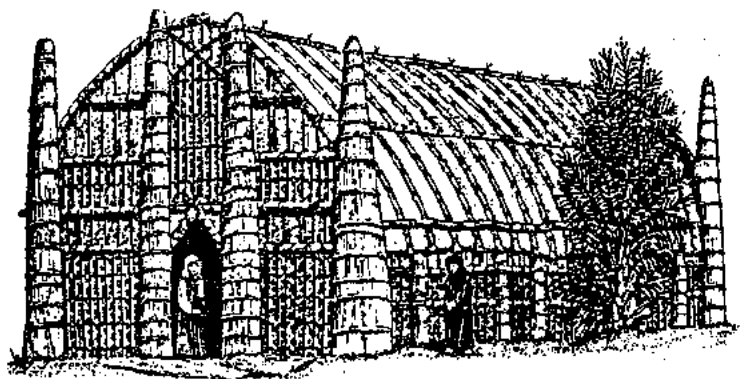
인류가 처음으로 촌락을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래 흙(unbaked earth)은 모든 대륙에서 사용된 주요한 건축材 중의 하나였다. 오늘날 세계인구의 1/3 이상이 아직까지도 흙집에서 살고 있다.

흙은 古代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널리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이 지방의 도시 변두리나 시골에서는 흙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메소포타미아의 중부지방(Iraq)의 도시 변두리의 흙으로 된 마을을 찾아 들어가 보았다. 그곳 청년(대학생)을 사귀어 그 청년의 집에 안내됐다.

마을주위는 야자숲이며 담과 벽, 지붕까지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다. 대문안을 들어서면 마당(中庭)이 있고 그 주위에 방들이 둘러쳐진 배치로서 대지 가운데 집이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운데가 마당(中庭)이 자리잡고 담을 따라 방들이 마당을 감싸면서 배치되어 있었다.

벽은 내부와 외부 모두 흙으로 노출된 그대로이며 창은 채광상의 최소 크기이며 지붕은 야자나무 줄기를 서까래로 걸치고(야자나무는 풀줄기와 같이 강도가 약해서 건축재료로 사용할 목재가 되지 못한다), 그 위에 갈대와 같은 풀줄기를 가로로 걸치고 그 위에 흙으로 마감한 것으로 덮은 평지붕이 신기했다.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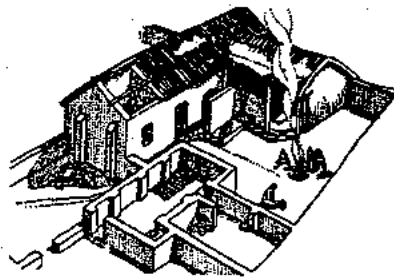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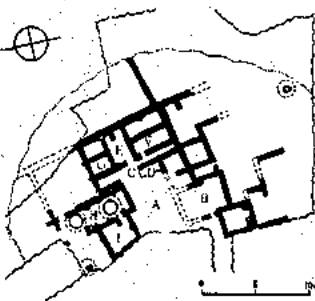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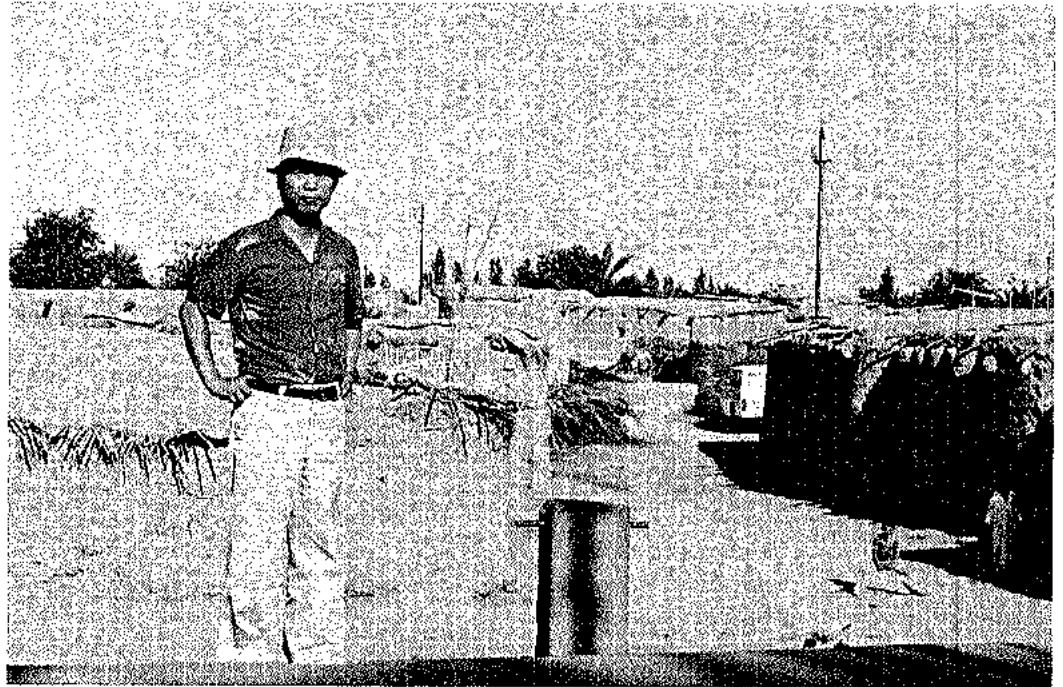


- ⑤ 갈대숲 풍경
말, 갈대집이 보인다.
⑥ 큰 아치로 이루어진 갈대집의 내부벽면

- ⑦ 갈대로 만든 갈대집
갈대로 묶어 만든 다발을 마주 세워 구부려서 큰 여치를 만든다. 아치 하부는 약 1m 깊이로 땅에 묻어 세우고, 벽과

지붕은 갈대풀로 짠 것을 덮는다.

Abram은 족장이자 유다민족의
始祖이고 또한 유목민인데, 그
형제, 친척과 더불어
「神意」대로
갈데아地方(메소포타미아의
남부)의 우르(Ur)를 떠나
가나안地方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비옥한 목축지를 찾아
유목생활에서 농경민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유다 민족의 先祖들이
單間房의 천막주거에서
群棲생활을 계속하면서
近親婚의 혈통적부족으로
결연되어 갔음도 看破되어질
것이다.



두 딸이 단칸방의 동굴생활에서 기거한 탓으로
近親混濁하게 되었음도 명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유목시대의 천막주거문의 문제는 그 주거공간이
단칸방으로 계획되었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구약성경의 또다른
구절(태위記20:10-21-15)에 단칸방의
천막住居에서 혼숙하는 가족들이 범해 왔던
近親相姦의 再犯을 경고하고 있다.
라스사(Larsa)에서 출토된 우베이드期(Ubeid
Period; 4천5백~3천 B.C.)의 명문은 이러한
단칸방의 폐해를 戒告하는 古文이다.

4. 中庭式 住宅

우르크朝 B.C. 3천9백년 경에 건설된
테페-가우라의 中庭式 주택은 室배치가
中庭중심이었고 평면계획의 분리성과 공간구성의
대칭성이 최초로 시도된 것이므로 건축史上
중요시되고 있다.

햇수나의 개방적인 前庭式주택이 그후 폐쇄적인
中庭式 주택으로 변천된 이유는 메소포타미아의
촌락이 알-우베이드朝(B.C. 3천9백년경)이래
상공업도시로 발달해 감에 따라 주택배치도 도로축과
직교되어지고 이웃주택과의 경계벽마저 공유되어
지면서 이른바 시가지 주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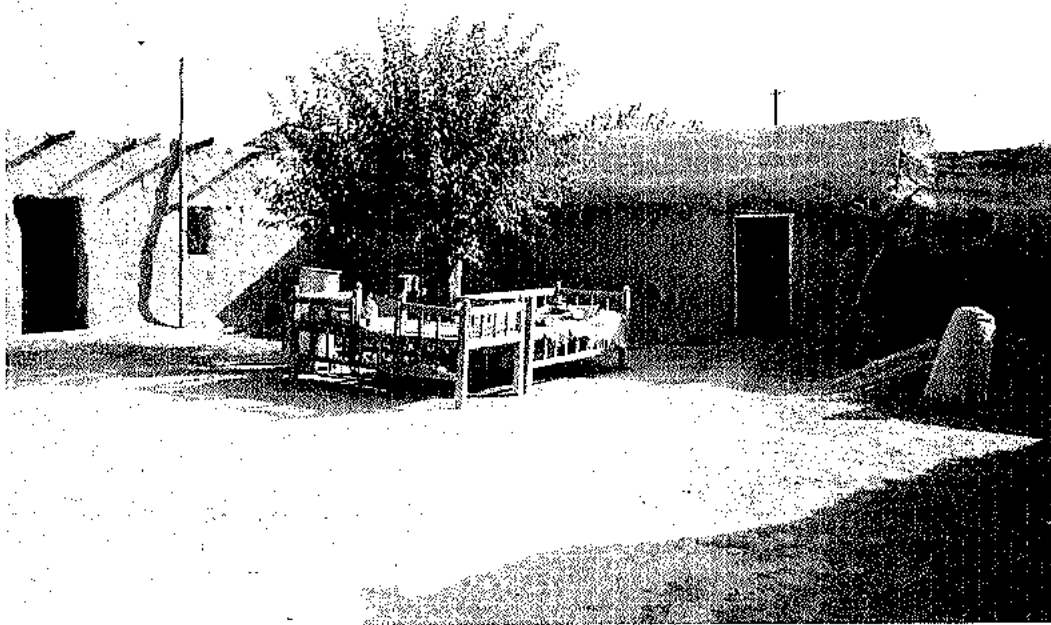
이러한 주택평면계획의 변천이유는 이지방의
풍토성에 적응되어 객관적인 자연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③ 흠집들이 모여 있는 흠마을 전경
- ④ 햇수나 우물이 있는 흠집 평면도와 단면 조감도

3. 天幕住居(Tent dwelling)

유목집단을 취급한 最古의 기록은 구약聖經의
구절(창세기 11:27-)일 것이다.

Abram은 족장이자 유다민족의 始祖이고 또한
유목민인데, 그 형제, 친척과 더불어 「神意」대로
갈데아地方(메소포타미아의 남부)의 우르(Ur)를
떠나 가나안地方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비옥한
목축지를 찾아 유목생활에서 농경민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유다 민족의
先祖들이 單間房의 천막주거에서 群棲생활을
계속하면서 近親婚의 혈통적부족으로 결연되어
갔음도 看破되어질 것이다. 이 故事는 B.C.
18세기에 있었던 일이며 다른 구절(창세기
19:30~38)에서는 Abram의 조카이던 Lot과 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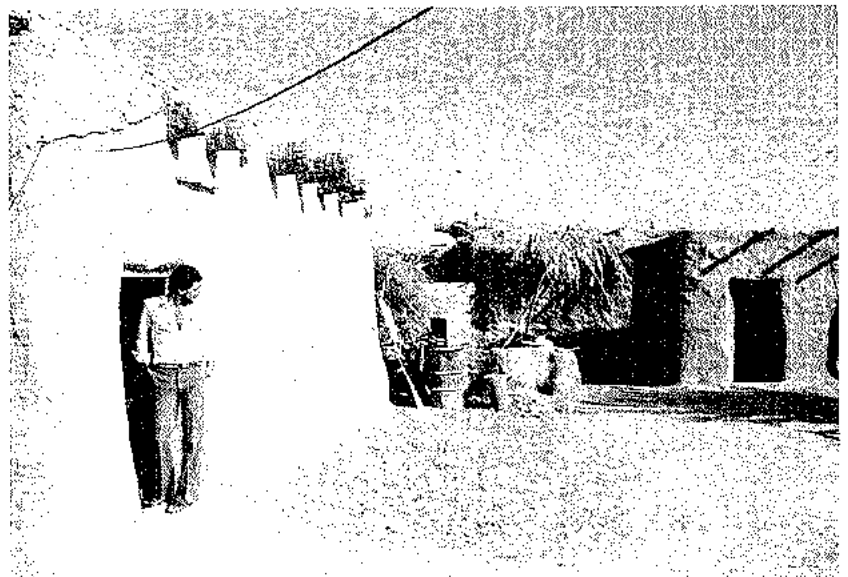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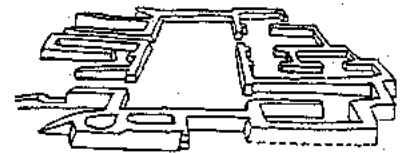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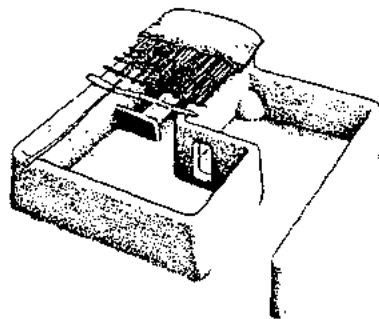
- ⑩ 흙주거의 중정
- ⑪ 粘土주택, 아르모
- ⑫ 테페-가우라의 중정 주택
- ⑬ 중정쪽으로 향한 문간방의 흙벽과 작은 출입문
지붕에 걸쳐진 야자줄기 끝이
튀어나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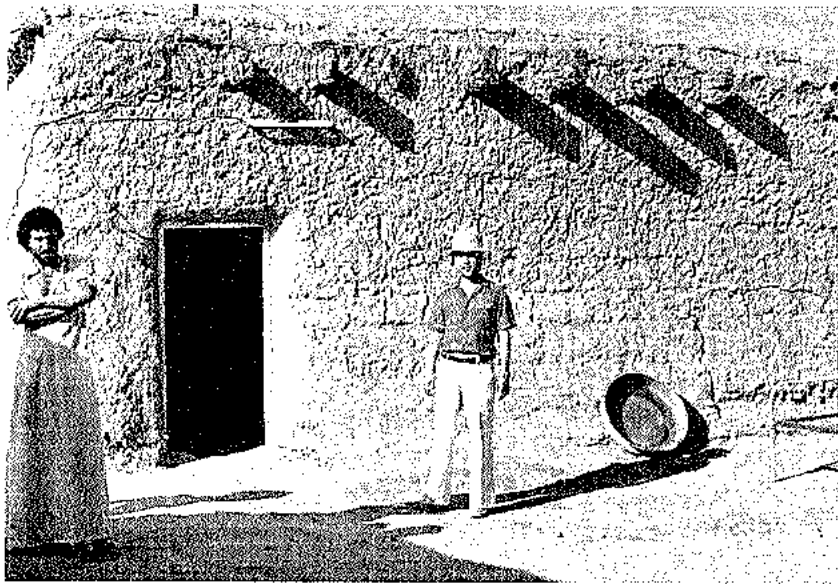
테페-가우라의 신전(B. C. 3천5백년경), 하파예의 신전(B. C. 3천년경), 텔아스마르의 궁전(B. C. 2천년경), 우르에 지은(B. C. 1천8백년경) 아브라함의 주택, 바빌론의 주택과 궁전, 호르사바드의 Sargom II 궁전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中庭式 주택의 전통성이 답습, 반복, 확대되어왔다. 中庭式주택群의 전형적인 마을의 예로 B. C. 2천3백년경, 현 바그다드의 북쪽 25km지점에 텔-아스마르都邑이 있었다.

이 집단中庭式주택은 좁은 도로에 면해 카운터가 있는 방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Hall이 있으며 좌우에 작업장과 中庭, 응접실, 변소, 가족실, 주방, 대장간, 침실등이 계획된 대규모 주택건설이었다. 이곳에서 특기 할만한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에 의자식 변기가 있었다는 것과 그 의자식 변기는 벽돌조에다 Asphalt Coating이 되어 방수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천3백여년전의 사실이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아파트 주거가 생기면서부터 그후 의자식 양변기가 처음 보급되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4천3백여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주택에서부터 사용됐던 것이 4천3백년이나 지난후 처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때 건축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대건축과 현대건축이 같은 생리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2백배 이상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기름진 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 ① 흙주거의 출입문과 흙벽
- ②③ 흙주거의 실내 천장에 야자수 줄기를 걸친 것이 보인다.
- ④ 우르의 중정식 주택의 내부투시도와 평면도

양강의 하류지역이며 시리아(Syria), 앗시리아(Assyria), 페르시아(Persia), 메디아(Media) 등의 주변 地方에 있어서는 그렇게 쾌적하고 기름진 땅은 아니었다. 수메르인의 농경문화설, 유다민족의 에덴동산설, 셈족의 태몽설, 노아의 홍수설, 지구렛의 건설 목적론, 바벨탑 건설 중단설, 바빌론의 운하 건설론, 각 민족 천도설 등 기타 여러 사실들은 모두 理想郷, 強風, 홍수, 건설, 파괴, 흥망, 갈수, 혹서의 정도가 어떤한가를 실증해 주는 예들이다.

太古로부터 寒冷温暖과 強風洪水의 현상이 반복되던중 인류의 결집을 보게 되고 史上最古의 都市건설이 실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메소포타미아가 걸으로는 「낙원복지」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변화무상한 대륙이어서 인간생활을



적응시키기에는 자연 대 인간의 투쟁으로서 자연에 적응될 수 있는 현실의 생활공간을 이루게 하는데서부터 그 주택건축은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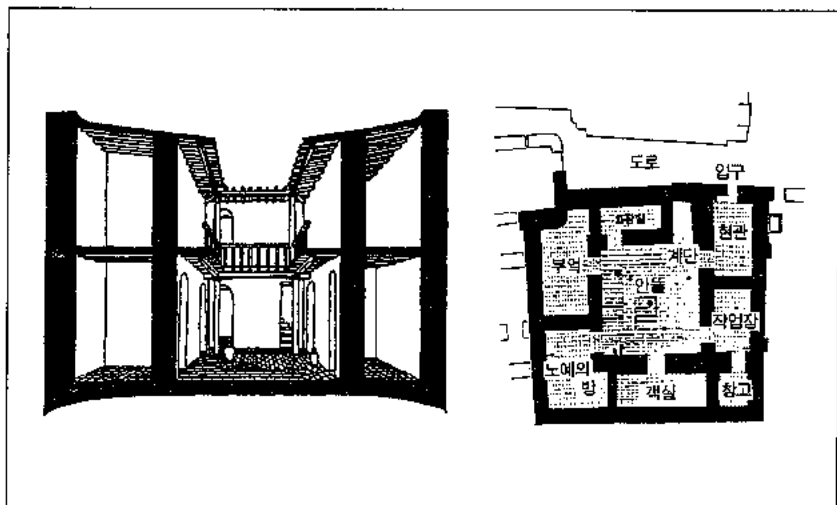
中庭式 평면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을 자연적 피해와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자그로스산맥(Zagros Mts.) 동쪽의 대륙성 기후는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 東岸까지 건조, 강풍, 저온의 현상을 이루며 또한 晝夜에 걸쳐 寒暑의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자고로 群盜의 약탈과 외적의 침입이 잦았으므로 차단과 방어의 수단이 절실했다. 더욱이 끝없는 평지의 지평선으로 지형적인 차단과 방어가 없는 자연이었다.

중정식 주택의 공간성이라 바로 이에 대응코자 하여 고안해 낸 인간지혜의 창조적 소산이다.

현 존재성을 현실적으로 인식적응하려는 건축행위 즉 건축을 구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호화찬란한 재료사용과 허실스러운 장식기술이 아니라 「인간 대 자연과 환경」의 적응 조화가 메소포타미아 주택의 특징이다.

「헷수나의 흙집」과 테페-가우라의 中庭式주택 건축에서 보듯이 주택건축은 「자연 대 인간」관계에서 발생되어진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소산이며 인간적인 생활의 근거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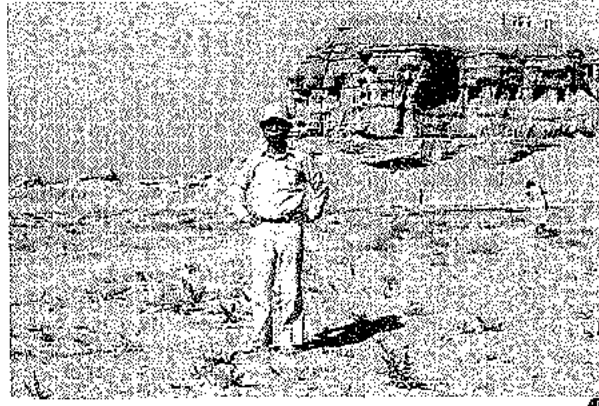
주택공간 건축은 휴양, 식사, 생식, 양육, 오락, 사교, 단락 및 사회와 개인의 생활근거지가 되게 한 것이다. 城壁內는 개방적인 공간성이며 주택건축은 폐쇄적인 공간성으로 자연에 대한 방어가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주택공간계획에 있어서 그 주위벽 둘레에 無窓室을 口字形 또는 ㄷ자형으로 배치하여 출입구를 중정으로 내어 중정광선이





- ① 우르의 중정식 주택
- ② 동굴 주거 전경
- ③ 바빌론-메르케스의 대주택 평면도
- ④ 텔-아르마스의 집단주택 평면도

⑤ B.C 2천년 경의 마을 평면도
이러한 마을의 모습은 4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메소포타미아 마을의 평면양식은 거의 변함이 없다.



放射的으로 그 주위 無窓室에 스며들게 하여 포악한 직사광선과 태풍의 暴威에 방어적 계획이며, 1棟단위는 이웃져서 그 한정된 성벽내의 개방적인 공간을 향해 전개되어 王宮중심의 집단생활권을 이루게 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이다.

기쉬, 우르크, 라르사, 라가쉬등을 비롯해서 바빌론, 나네베, 남로드, 호르사바드의 도시계획과 사라센제국때의 바그다드, 사마라의 도시형식의 기본은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의 思考필연적인 자연과학정신에서 이루어진 結晶이었다. 그레시아, 로마의 주택양식도 이 中庭式과 같아졌을 뿐더러 동양주택건축에도 또한 유사성이 되어지기도 했다.

5. 인류최초의 주택문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3천년 경에서부터이다.

유목 생활에서 생산적 정주 생활로의 혁명적 의의를 지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금부터 1만년 전의 일이다. 일찍부터 전문가들은 그것이 일어난 장소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라고 생각했다. 메소포타미아가 인류의 도시화 혁명의 발상지라는 것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인류의 발걸음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의 하나는 식량채집의 유목생활에서 식량생산의 경제생활로 정주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발전이 이루어진 때와 장소를 입증한 것이 고고학자 브라이드(시카고 대학교수)이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구릉지 자르르에서 브라이드가 발굴한 것들은 그때까지 알려졌던 가장 오랜 정주 농경사회인 기원전 7천년

경의 촌락 유적이었다.

유목생활에서 정주농경사회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류가 유목 방랑 생활에서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인류 최초의 주택을 가진 생활을 했음을 의미하며 그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것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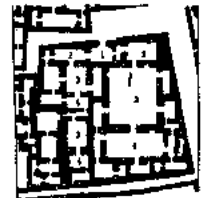
인류가 처음 주택을 갖기 이전에도 住居는 있었다. 住居, 家屋, 住宅의 세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뜻은 「住居」는 「어떤 곳에 머물러 삶」을 뜻하고 「家屋」은 그냥 「집」을 뜻하며 「住宅」은 「사람이 사는 집」을 뜻한다. 그래서 天然의 洞窟이면 住居라 할 수 있겠으나 住宅은 아니다. 따라서 삶을 위한 人爲의 家屋이면 住宅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사마라(Samarra)지방에서 B.C. 8천~5천년경의 수렵시대의 洞窟住居가 발견되었으며, 야르모(Jarmo)에서 발견된 흙집을 「야르모의 粘土住宅」이라 한다.

이 메소포타미아 야르모의 주택유적은 원시인들의 단순한 수렵생활상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건축수법인데 건축재료는 Mudbrick(흙벽돌)이며 지붕구조는 원목의 중도리를 걸친 위아다 Reed(갈대잎)를 덮는 방법이었다.

오늘날 이곳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자연 환경뿐 아니라 인위적인 여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메소포타미아의 주택문화의 재창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재현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주택은 수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주거의 영원한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



(1) 앞구 (2) 현관 홀 (3) 中庭 (4) 침실



街道(1) 카운터(2) 前庭의 室(3) 正玄閣(3) Hall(4) 作樂室(5), 第1中庭(6), 膳室(7), 便所(8), 家庭室(9), 廚房(10), 使用人室(11), 宗廟(12)의 대청간(12) 世子(13)의 化粧室(13), 寢室(14)



개정 건축법

'91년 5월 31일 국민 생활의 편의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었다.
이날 공포된 내용의 주요골자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建築法 改正理由

1962年 建築法을 制定한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部分的으로 改正하여 왔으나, 經濟·社會 各 분야의 自律化·民主化趨勢에 부응하기 위하여 現行 規定을 全般的으로 再整備하여 그 規制爲主的 性格과 경직된 운영을 脫皮하고, 節次簡素化를 통한 國民便益을 增進하며, 創意的인 建築活動과 都市의 효율적인 이용·開發을 促進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建築物의 높이제한등 主要 建築基準에 대한 條例의 規定範圍를 8種에서 20種으로 擴大하여 地域實情에 따라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도록 함.

2. 大型 高層建築物의 建築許可를 함에 있어서 都市美觀의 增進을 위하여 施行되고 있는 事前審議節次를 발전시켜 일정한 用途 및 規模이상의 大型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主는 建築許可를 申請하기 전에 自己의 建築이 建築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事前決定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建築許可時 발생할 수 있는 民願을 豫防하도록 함.

3. 建築許可 및 使用檢査時 一括하여 처리되는 다른 法律上의 認·許可事項을 6種에서 17種으로 擴大하여 國民의 便益을 도모함.

4. 現제 工事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許可·申告事項의 變更에 대하여는 變更時

마다 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使用檢査時 一括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節次를 簡素化함.

5. 現제 市長·郡守·區廳長의 建築許可는 建設部長官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市·道知事도 地域計劃 또는 都市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市長·郡守·區廳長은 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當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當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履行強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

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업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금면·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회화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것을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

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축사”라 한다)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축물
3.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4. 철도 또는 궤도의 노선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건축위원회) ①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5 조(적용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33조제2항·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제52조제2항 및 제53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또는분뇨정화조에관한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 7 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6.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8.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동의 허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중축의 경우에는 그 중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의 건축에 관한 계획을 현저히 변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각호 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공급신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각호 및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결정전에 그 협의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대상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 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의 기간동안 그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안에 있어서는 그 제제로 인하여 파파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청금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제해복구·홍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 내지 제7장(제30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착공신고등)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중간검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指定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工事監理者의 署名을 받아 申請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정시키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현장의 위태방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건축사 또는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건축물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내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대지의 안전등) ①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케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안의 조성)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대지를 조성하

기 위한 용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2조제11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建築線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建築線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구조내력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사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 극장·병원·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44조(지하층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역 및 구역안의 건축물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전폐율) 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전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폐율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폐율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용적률) 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 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촉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높이제한의 완화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고조·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건축설비

제55조(건축설비기준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도시설계등

제60조(도시설계)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도시설계작성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작성하며, 작성 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설계지구에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도시설계지구는 토지소유자·도시설계작성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개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도시설계의 재정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특별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32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총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조정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법 제3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국·공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도심지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감독) ①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등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옹벽 등 공작물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7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78조(벌칙)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제17조·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건축구조기술사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4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4.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지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지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⑥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와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

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 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

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 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 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자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타 법률 규정예의 허용 여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침해 여부, 기타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토록 함.
- 제8조(건축허가) 건축허가 및 준공시 일괄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함.
-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등은 건축물의 사용 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함.
-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제16조(착공신고등)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는 착공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함.
-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자가 당해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시공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함.
- 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 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함.
- 제23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고, 동 업무의 대행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함.
-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에 의한 멸실의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제28조(건축지도원)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함.
-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k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제47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녹지지역 : 20/100이하

○주거지역, 상업지역 : 90/100이하

○공업지역, 기타 : 60/100 이하

- 제48조(용적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녹지지역 : 200%이하

○주거지역 : 700%이하

○상업지역 : 150%이하

○공업지역, 기타 : 400%이하

- 제55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60조(도시설계)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조경,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건축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도시의 미관 향상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함.

-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제80조(벌칙)

○토지국책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 또는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주, 공사시공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 보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3조(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을 미시정할시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음.

1991년도 4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 4월분 1천3백17만4천5백17㎡보다 18.12%(2백38만7천6백40㎡) 감소한 1천78만6천8백77㎡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4월분 합계 4천2백56만1천3백25㎡보다 12.77%(5백43만4천80㎡) 증가한 4천7백99만5천4백5㎡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 월 비 3월분 1천1백56만1천9백61㎡보다 6.70%(77만5천84㎡) 감소한 1천78만6천8백7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경남지부	1,101,740	1,309,877	208,137	18.89%
제주지부	85,665	142,674	57,009	66.55%
감소지역				
서울지부	2,469,078	2,047,721	(421,357)	-17.07%
부산지부	1,044,367	955,856	(88,511)	-8.48%
대구지부	449,791	254,676	(195,115)	-43.38%
인천지부	512,445	343,306	(169,139)	-33.01%
광주지부	364,295	209,457	(154,838)	-42.50%
대전지부	910,506	555,217	(355,289)	-39.02%
경기지부	3,146,873	2,922,690	(224,183)	-7.12%
강원지부	457,387	319,776	(137,611)	-30.09%
충북지부	460,857	391,994	(68,863)	-14.94%
충남지부	519,213	338,705	(180,508)	-34.77%
전북지부	500,962	226,472	(274,490)	-54.79%
전남지부	502,378	234,799	(267,579)	-53.26%
경북지부	648,960	533,657	(115,303)	-17.77%
합 계	13,174,517	10,786,877	(2,387,640)	-18.12%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3 월 분	4 월 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119,923	1,461,026	341,103	30.46%
다 세 대 주 택	779,845	696,222	(83,623)	-10.72%
연 립 주 택	248,037	236,331	(11,706)	-4.72%
아 파 트	5,708,119	3,466,517	(2,241,602)	-39.27%
근린생활시설	1,551,442	2,161,437	609,995	39.32%
종 교 시 설	63,876	73,491	9,615	15.05%
의 료 시 설	14,110	6,121	(7,989)	-56.62%
교육연구시설	134,769	243,106	108,337	80.39%
업 무 시 설	420,694	732,540	311,846	74.13%
숙 박 시 설	144,689	53,545	(91,144)	-62.99%
공 장	918,181	949,472	31,291	3.41%
기 타	458,276	707,069	248,793	54.29%
계	11,561,961	10,786,877	(775,084)	-6.7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4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8,626	8,815	1,372,993	1,260	1,330	82,800	73	73	5,233	9,959	10,218	1,461,026
다 세 대 주 택	1,449	1,663	689,201	44	53	4,604	21	27	2,417	1,514	1,743	696,222
연 립 주 택	128	175	232,265	3	6	4,066	0	0	0	131	181	236,331
아 파 트	185	970	3,426,116	19	27	29,410	7	7	10,991	211	1,004	3,466,517
근린생활시설	4,463	5,062	1,972,384	527	550	101,199	310	316	87,854	5,300	5,928	2,161,437
종 교 시 설	86	93	52,856	43	48	19,429	7	7	1,206	136	148	73,491
의 료 시 설	5	5	1,506	8	8	4,270	1	1	345	14	14	6,121
교육연구시설	38	51	101,770	61	82	131,751	26	28	9,585	125	161	243,106
업 무 시 설	132	154	677,027	58	59	43,182	15	15	12,331	205	228	732,540
숙 박 시 설	13	15	51,484	6	8	1,228	4	5	833	23	28	53,545
공 장	470	811	715,902	234	342	205,224	49	51	28,346	753	1,204	949,472
기 타	837	1,038	556,542	257	308	102,401	48	50	48,126	1,142	1,396	707,069
합 계	16,432	18,852	9,850,046	2,520	2,821	729,564	561	580	207,267	19,513	22,253	10,786,877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1,760	32,658	5,480,590	3,458	3,639	247,594	180	181	14,875	35,398	36,478	5,743,059
다 세 대 주 택	6,827	7,516	3,364,355	133	143	15,465	38	51	4,578	6,998	7,710	3,384,398
연 립 주 택	471	673	926,481	11	14	5,565	2	2	836	484	689	932,882
아 파 트	935	4,395	17,431,546	51	68	120,787	17	21	18,846	1,003	4,484	17,571,179
근린생활시설	17,217	18,263	8,049,030	1,617	1,694	443,553	880	893	265,454	19,714	20,840	8,758,037
종 교 시 설	361	422	252,802	158	186	63,637	16	19	6,203	535	627	322,642
의 료 시 설	29	47	147,754	27	29	33,557	8	8	3,781	64	84	185,092
교육연구시설	138	195	428,083	154	214	271,743	79	81	28,523	371	490	728,349
업 무 시 설	534	598	2,411,568	164	173	121,205	40	40	87,472	738	811	2,620,245
숙 박 시 설	113	134	356,752	37	61	46,731	23	24	28,049	173	219	431,532
공 장	2,098	3,533	3,290,751	897	1,346	1,172,273	163	172	98,507	3,158	5,051	4,561,531
기 타	2,791	3,624	2,148,071	844	1,029	391,702	148	154	216,686	3,783	4,807	2,756,459
합 계	63,274	72,058	44,287,783	7,551	8,586	2,933,812	1,594	1,646	773,810	72,419	82,290	47,995,405

支部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4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지 부	4,071	4,115	1,993,148	102	105	54,573	0	0	0	4,173	4,220	2,047,721
부 산 지 부	1,862	2,736	900,133	253	323	41,148	43	52	14,575	2,158	3,111	955,856
대 구 지 부	724	742	190,963	438	472	37,491	41	41	26,222	1,203	1,255	254,676
인 천 지 부	479	637	317,400	40	48	15,185	30	30	10,720	549	715	343,306
광 주 지 부	466	494	173,076	99	99	33,525	10	10	2,856	575	603	209,457
대 전 지 부	470	553	472,752	59	70	67,608	109	115	14,857	638	738	555,217
경 기 지 부	2,731	3,246	2,750,881	230	263	101,025	75	75	70,783	3,036	3,584	2,922,690
강 원 지 부	667	722	279,975	165	182	37,131	11	11	2,670	843	915	319,776
충 북 지 부	688	804	361,874	125	133	21,286	62	62	8,834	875	999	391,994
충 남 지 부	576	605	293,428	143	143	34,425	42	42	10,852	761	790	338,705
전 북 지 부	422	476	196,453	104	112	24,491	23	23	5,528	549	611	226,472
전 남 지 부	652	714	158,350	139	190	70,797	37	39	5,652	828	943	234,799
경 북 지 부	935	1,061	442,135	197	224	75,806	36	38	15,716	1,168	1,323	533,657
경 남 지 부	1,541	1,767	1,188,330	272	296	103,545	42	42	18,002	1,855	2,105	1,309,877
제 주 지 부	148	180	131,148	154	161	11,526	0	0	0	302	341	142,674
합 계	16,432	18,852	9,850,046	2,520	2,821	729,564	551	580	207,267	19,513	22,253	10,786,877

支部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지 부	17,085	17,691	9,691,339	305	323	194,358	0	0	0	17,390	18,014	9,885,697
부 산 지 부	5,569	7,455	3,394,260	759	1,009	177,281	150	167	115,805	6,478	8,631	3,687,346
대 구 지 부	3,782	4,220	2,536,977	1,304	1,383	200,469	119	121	54,681	5,205	5,724	2,792,127
인 천 지 부	1,885	2,387	2,211,971	100	124	82,556	62	64	28,453	2,047	2,575	2,322,980
광 주 지 부	1,778	1,881	792,046	310	332	129,704	31	31	7,648	2,119	2,244	929,398
대 전 지 부	1,659	2,013	1,873,619	147	174	119,223	268	285	47,363	2,074	2,472	2,040,205
경 기 지 부	10,809	12,360	9,354,440	606	672	276,968	274	274	305,149	11,689	13,306	9,936,577
강 원 지 부	1,812	2,060	879,235	390	443	122,323	44	44	14,626	2,246	2,547	1,016,184
충 북 지 부	2,513	2,970	1,738,689	393	485	168,164	135	135	31,067	3,041	3,590	1,937,920
충 남 지 부	2,217	2,330	1,348,325	414	415	140,684	94	94	23,586	2,725	2,839	1,512,596
전 북 지 부	1,495	1,776	1,310,642	323	352	301,644	92	94	20,646	1,910	2,222	1,632,932
전 남 지 부	2,395	2,795	1,380,314	450	550	193,770	115	123	24,138	2,960	3,468	1,598,222
경 북 지 부	3,380	4,020	2,455,335	693	822	456,514	87	89	55,911	4,160	4,931	2,967,760
경 남 지 부	5,788	6,771	4,718,566	935	1,072	327,557	123	125	44,737	6,846	7,968	5,090,860
제 주 지 부	1,107	1,329	602,025	422	430	42,577	0	0	0	1,529	1,759	644,602
합 계	63,274	72,058	44,287,783	7,551	8,586	2,933,812	1,594	1,646	773,810	72,419	82,290	47,995,405

신 입 회 원



宋在春(59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원건축(종합)
강원 원주 일산 51-2
44-8842



梁在煥(58年)
한양대 건축공
정수건축
대전 중구 대흥 234-1
257-4645



愼義揆(58年)
명지대 건축
가이·탐건축
서울 강남 신사 572-3
545-6078



尹昌玉(58年)
인하공전 건축
신세기·세영·동남(종합)
서울 서초 서초 1431-14
587-7496~8



朴大隆(56年)
부산대 건축공
예가건축
충북 충주 역전 522
43-9481~2



金壽贊(46年)
인하대 건축
무영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04-1
566-8177~8



成河玉(60年)
대전공대 건축
신건축(종합)
대전 중구 대흥 211
255-0268, 254-3118



辛明虎(58年)
전북대 건축공
누리건축
전북 군산 경장 465-1
43-4633



金熙坤(57年)
울산대 건축, 홍익대학원
아림건축(종합)
서울 송파 방이 196-1
419-6687



崔炅良(56年)
조선대 건축공
내외·공간·명인·한샘
광주 동구 궁동 45-15
232-5511



李聖元(56年)
홍익공전 건축
명원건축
경기 시흥 대야 379-4
692-8600



許忠會(54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모던건축
경기 하남 덕풍 420-35
797-7700



孔京浩(55年)
서울공고 건축
동진·환경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43
786-5084



閔丙權(60年)
단국대 건축
인터플랜건축(종합)
서울 서초 양재 106
571-7307



金振瓚(38年)
한양대 건축
예일건축
경기 시흥 신천 292-7
694-7474~5



趙茂英(57年)
서울공고 건축
동진·환경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43
786-5084



朱順姬(60年)
서울산업대
인터플랜건축(종합)
서울 서초 양재 106
571-7307



金幸範(58年)
전남대 건축공
도시건축
전남 순천 장천 78-7
745-0557



趙庸薰(60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동진·환경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43
786-5084



沈峰徹(59年)
동아대 건축
동일건축
경남 김해 부원 616-2
34-8741



李康根(60年)
전남대 건축공, 한양대학원
신건축
전남 순천 장천 78-7
745-0558



金貫鎰(50年)
부산대 건축
(주)화신건축(종합)
서울 서초 잠원 42-11
540-1697



張京燮(58年)
한양대 건축
예우건축
경남 창원 중앙 98-4
61-0805~6



權時昱(53年)
동의대 건축
3세대건축
경남 창원 중앙
61-8463



徐炳寬(51年)
조선공전 건축공
진술건축
서울 성동 자양 680-2
454-0027, 7471



申大燮(56年)
중앙대 건축공
건정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96-35
554-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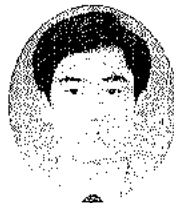
崔承權(45年)
조선대 건축
탐건축
광주 북구 중흥 645-18
526-5080



朴弘根(57年)
전북대 건축
세림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32-1
585-1624



林龍洙(60年)
국민대 건축
(주)세종건축(종합)
서울 은평 대조 223-4
258-8297-8



金準植(60年)
중앙대 건축공
삼한·민·범창(종합)
서울 동대문 신설 96-14
252-9888~9



崔承彦(55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한협·도시건축(종합)
서울 용산 한남 1-301
798-0950



金會福(58年)
경상대 건축공
두영건축
서울 강남 대치 888-1
568-9151



姜元德(53年)
서울공고 건축
로마건축
경기 군포 당동 776-21
68-3530



朴相憲(59年)
삼척공전 건축
세림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32-1
585-1624



洪琦澤(59年)
홍익대 건축, 同대학원
하나그림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752-16
599-3955



徐重東(55年)
동아대 건축
多宇건축
경기 부천 원미 92-1
664-3731~2



黃榮燮(49年)
대전공대 건축공
성림·하오·영지(종합)
서울 마포 성산 56-1
338-7121



林采英(57年)
서울산업대 건축
중앙건축(종합)
서울 송파 석촌 14-11
416-1281



金運燮(58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운양건축
경기 송탄 서정 814-4
64-3760



金志浩(59年)
홍익대 건축, 同대학원
한국조형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272-31
546-7902



黃義振(56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프리즘건축
서울 서초 서초 3 1481-11
522-0225, 7490



洪仁杓(52年)
진주공고 건축
홍인건축
전북 전주 진북 320-21
254-7078, 7088



李康周(55年)
서울산업대 건축
가람·나라건축(종합)
서울 강남 청담 79-15
517-0777



申明吉(54年)
울산대 건축
(주)에인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512-17
512-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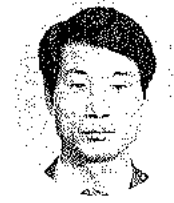
朴萬鍾(36年)
전남대 건축
세종건축
광주 북구 중흥 645-1
526-2032



李永駿(57年)
인천공전 건축
아취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65-2
546-4686



白龍起(51年)
성동공고 건축
창운건축
서울 마포 서교 392-2
336-4256



安英植(58年)
명지대 건축공, 同대학원
화인건축
충남 당진 읍내 550-1
355-2091



鄭淇勉(47年)
전남대 건축공
가전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58-5
516-2988



許夏九(54年)
광주 송신공고 건축
(주)에인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512-17
512-0202

理事會 개최

'91년도 제6회 理事會가 吳雲東회장의 주재로 지난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건축법령연구소 운영세칙개정(안) 승인」등 주요 부의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부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회 理事會

- 건축법령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 전문연구원 임용에 대한 불합리 조항의 개정을 원안대로 승인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 대전지부의 직원정원조정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서울지부의 직제 및 직원정원 조정건 의는 吳雲東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위원: 박성규, 장성진, 권태정, 안영준)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구,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정년퇴직 직원 공로패 수여
- 15년 근속후 정년퇴직하는 전남지부 정동주 사무국장에게 지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키로 함.

한편 지난 1일에는 제7회 理事會가 개최되어 '91全國建築士大會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신기술 개발보상제 개선방안 의견수렴

건설부는 건설기술개발 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공법개발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절감한 공사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현 신공법개발보상제도는 그 활용실적이 극히 미비하여 건설기술 개발의 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동제도 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미흡한 시행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본協會는 오는 6월30일까지 각시도 지부 및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설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회계법상의 「새로운 기술, 공법등」은 본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은 물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라 할 지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면 동 규정의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포함되도록 되었으며,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절차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소속지부나 本部 기술부(581-5711)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건전사회조성결의문 채택

지난 3일 '91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식에서 전국의 3천6백여 회원 일동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참된 건축문화창조 환경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決意文

우리 전국 3천6백여 건축사는 건전한 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정부의 공직기강확립 정책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건축사는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우리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건축부조리 유발요인 제거에 앞장선다.
- 우리 건축사는 건축관계법령 및 각종 제도를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적극 참여키로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일동

전국건축사 골프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심신단련을 위한 제7회 전국건축사 친선체육대회 겸 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31일 기흥골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지부(회장李文雨) 주관으로 전국 시도지부 회원 3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회의 단체전 우승은 경기지부가, 개인전 우승은 광주지부 안태경 회원이 각각 차지하였다.

입상내역

- 단체전
- 우승: 경기지부
- 준우승: 대구지부
- 3위: 광주지부
- 개인전
- 우승: 안태경(광주)
- 메달리스트: 김용만(경기)
- 준우승: 여옥동(대구)
- 3위: 안길원(서울)
- 4위: 김광옥(서울)
- 5위: 이경호(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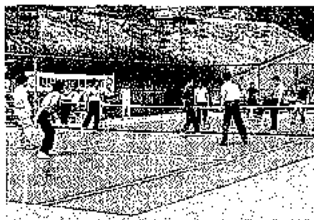
서울 敬老少宴

서울지부(회장李文雨)는 지난 5월15일 제19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아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우이동 옥류정에서 추대회원 및 역대 지부회장등을 초청 경로소연을 개최하였다.



忠北 친목단합대회

忠北지부(회장李容鐵)는 지난 5월11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소속회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축구대회 및 배크레이션을 통해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慶北 회원친목 낚시대회

慶北지부(회장崔種培)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지난 5월2,3일 양일간 충주댐에서 회원 친목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 우승은 포항의 김용준회원이 차지하였다.



慶南 회원 오리엔테이션

慶南지부(회장崔鳳亨)는 지난 5월 14일 '91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지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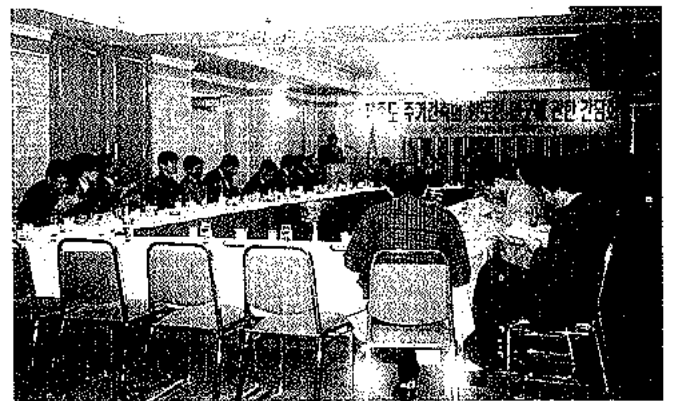


濟州支部 주거건축향토성연구추진

濟州지부(회장金昌祐)는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적인 특색을 알리기 위해 최근 30년간 남, 북제주 지역에 건립된 농어촌의 단층 주거 및 도시형 2층 주거중 대표적인 일부를 선정하여 주거생활, 주거환경 및 주거형태등을 조사, 정리하고 아울러 한반도에 산재하여 있는 지역별 전통형 주거형태와 선진국 주거 의장사례를 참작하여 제주도 현대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의장 요소를 제시하고, 앞으로 창출될 향토성 주거 건축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주

도 주거건축의 향토성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의 용역사업으로 공동추진중인 이 연구사업은 금년말 연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예정으로 그 첫단계로 지난 20일 제주도 시내 그린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지부회원 및 제주도, 시, 군, 관 계공무원과 연세대학교부설 산업기술연구소 책임연구자인 송종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 교수 등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제10회 大韓民國建築大展 작품공모

한국건축가협회는 제10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될 이번 전시회의 작품수는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누어 초대전은 11월5일, 일반공모전은 6월11일부터 7월말까지의 응모원서 교부후 11월4일에 각각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한 일반공모전의 자세한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 원서교부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6·11~7.31)
- 작품접수 : 예술의 전당 미술관(11.4)

- 전시 : 예술의 전당 미술관(11.9~11.22)
- 출품가격 : 대한민국 국민(동일작품의 작가명외는 1인)
- 작품내용 :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
- 작품규격 : 패널-가로120cm×세로180cm 이내
모형-가로120cm× 세로120cm 이내
- 시상 : 대상(1점)-상금200만원과 해외연수비 300만원 보조
우수상(3점)-상금2백만원
특선(약간, 입선(미정)
- 심사발표 : 11월9일(토)
- 출품원서대금 : 20,000원
- 문의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Tel : 744-8050, 3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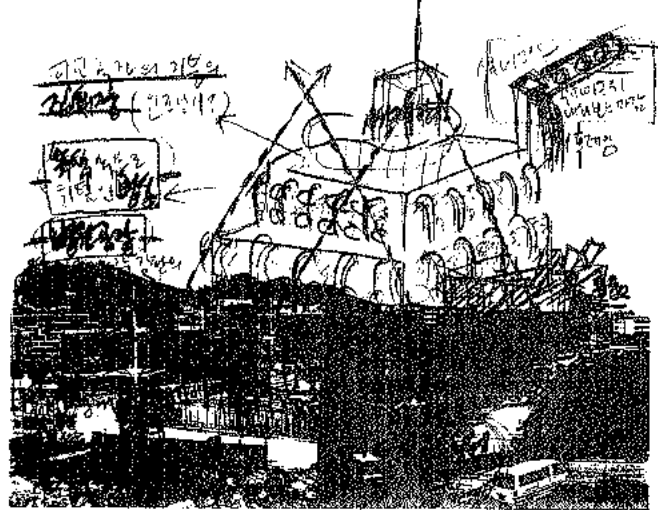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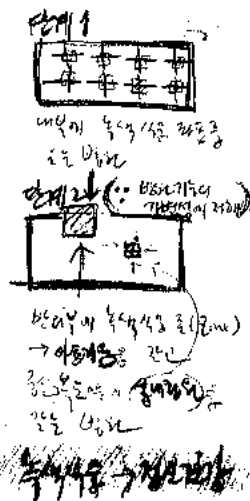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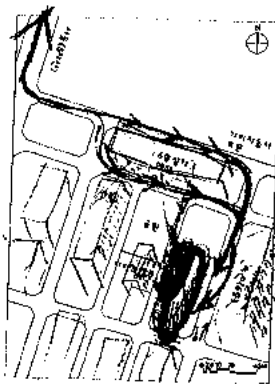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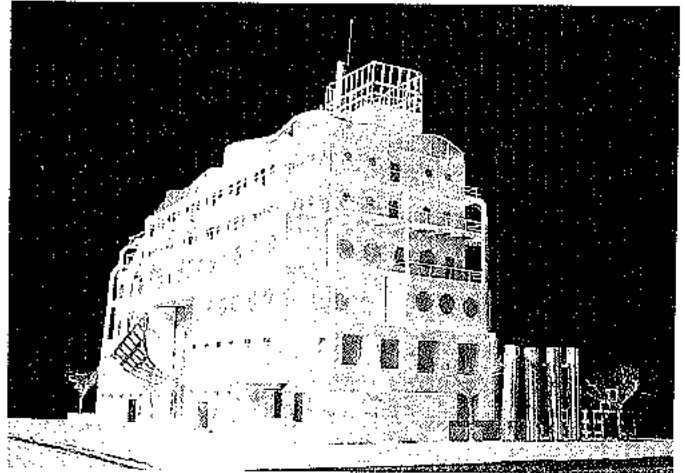
산업보건종합센터 현상설계경기 발표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와 청년건축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산업보건종합센터 현상설계경기의 우수작으로 (주)바로·아르텍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관석)안이 결정되었다.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지난 5월 14일 제출 작품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당선작 없이 우수작에 (주)바로·아르텍건축(김광수+이동수)안이 결정되어 실시설계권이 부여되었으며 가작에는 정주건축(정시춘+하학수)안이 선정되었다.

현상설계경기 공고시 제시된 주요지침과 실시설계권이 주어진 우수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상공모지침

• 건립목적

1. 산업재해, 직업병의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산업안전 보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킨다.
2.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관련성 질환 등의 노동자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치료를 한다.
3. 산업보건학 연구를 전문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 계획개요

1. 계획대지조건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소하지구 23BL 2, 3, 4, 5LT

-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2122.5m²
- 2. 규모 및 구조
-건물연면적: 8,676.5m²
- 층수: 지하2층 지상 4~6층 정도의 용적을 300% 이내의 범주
- 구조: 법적 요건내에서 계획자 의도에 위함
- 3. 소요면적
-산업보건교육센터: 142m²
- 직업병연구소: 539m²
- 노동자병원:
병동-1, 202m²
외래진료-1, 076m²
중양진료부-1, 505m²
관리부-305m²
서비스부-1, 437m²
연면적-6, 20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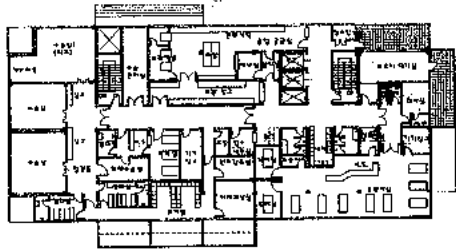
우수작

(주)바로·아르텍 종합건축사사무소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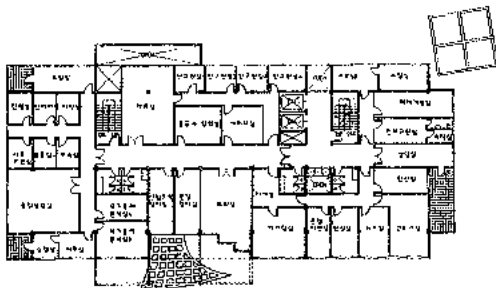
대표/김관석
병원콘설탄트/이동수
대지위치/경기도 광명시 소하지구 23BL 2, 3, 4, 5LT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2,122.5m²
규모/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3, 7층 조립식강바름판별
1, 2층 블록위 외벽단열재
건축면적/1,157.49m²
연면적/11,010.06m²
건폐율/54.53%
용적률/299%
최고높이/40.9m
주차대수: 78대

• 층별면적 및 각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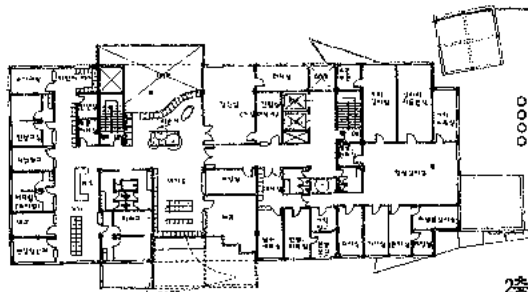
층	면적	용도
지하3층	1,727.91m	기계, 전기실, 주차, 세탁
지하2층	1,053.81m	주차, 주방
지하1층	1,881.52m	XRAY, 기능검사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근조
1층	1,075.29m	외래(외과), 응급, 관리
2층	1,034.07m	외래(내과), 임상검사부
3층	1,078.20m	교육센터, 연구소, 관리
4층	1,019.08m	수술실, ICU
5층	1,022.07m	병동
6층	895.65m	병동
7층	243.00m	직원식당, 라운지
연면적	11,010.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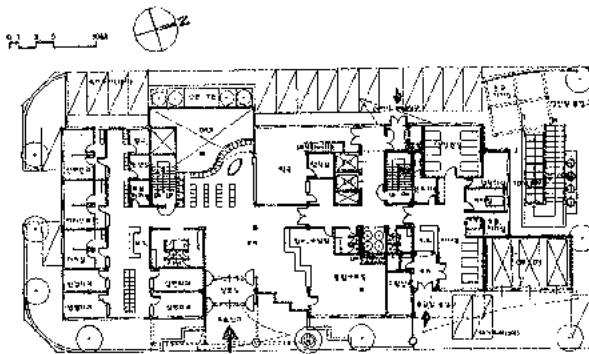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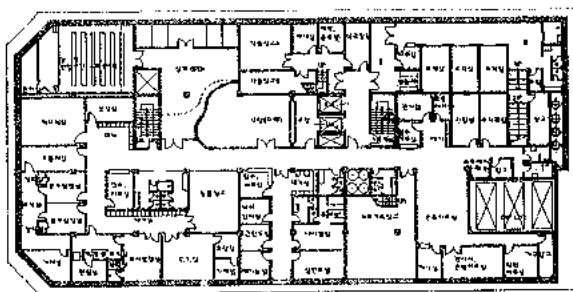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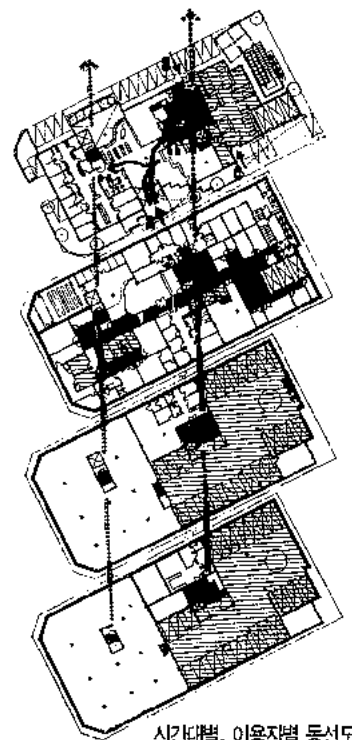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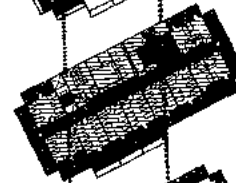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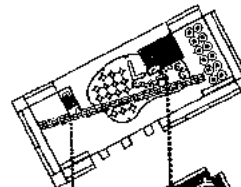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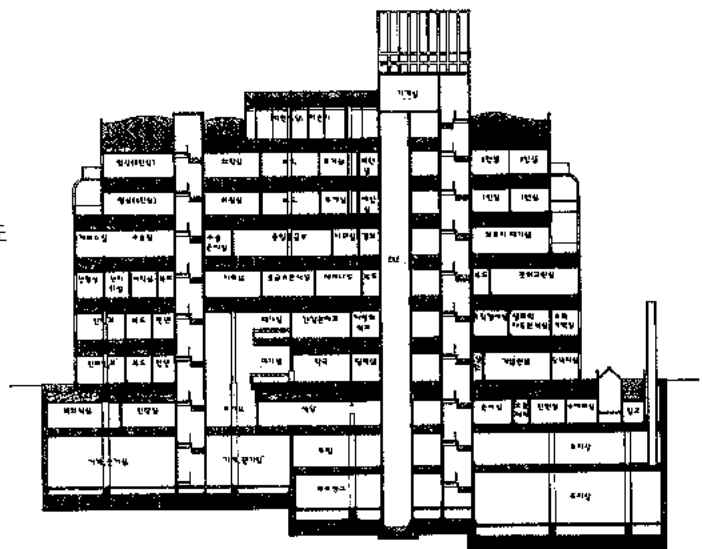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시간대별, 이용자별 동선도



주단면도

KI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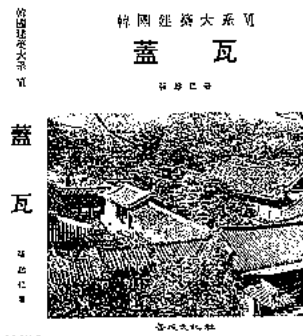
韓國建築大系 VI 「蓋瓦」발간

本協會 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張起仁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탐)이 韓國建築大系 시리즈의 6번째인 「蓋瓦」를 발간하였다.

지난 80년 「窓戶」를 시작으로 발간되어온 韓國建築大系 시리즈는 그동안 「벽돌」, 「단청」, 「한국건축사전」, 「목조」등 총 5권이 발간되었다.

전통 지붕재로부터 최신 제조 기법까지 총망라된 본 저서는 4×6판 500p 분량으로 普成文化社에서 발간하였다.

가격은 1만8천원.



공업화주택 국제 심포지엄 개최

대한건축학회와 주최하고 本協會와 건설부가 후원한 「공업화주택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3일부터 3일간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점증하는 주택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주택 공업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자재 및 기술전시회를 겸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국내외 건축관계자 및 자재업체 대표 등이 참석 지원, 정책분과, 계획설계분과, 기술개발분과, 정책 및 기술분과, 생산업체 개발현황, 관련 자재업체 개발현황의 6개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병원건축연구회총회

한국병원건축연구회(회장 김광문)은 지난 23일 한양대 공업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외국인사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日本 나고야대학 柳澤 忠교수는名古屋大學 부속병원 설계에 대해, 谷國 元교수는 병원에서 Facility Management에 관해 강연을 하였으며 원도시 건축의 정현화박사는 Rehabilitation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안내

國民年金管理公團은 '90년도 평균보수월액을 '89년도의 451,308원보다 19.7%가 증액된 540,146원으로 결정하였다.

'90.12.31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하여 정한 이 평균보수월액은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최초로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국민연금의 '90년도 재평가율을 119.7%로 고시하였다. '89년도와 '90년도의 평균보수월액 변동률 기준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 재평가율은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88년과 '89년에 각출료를 납부할때에 적용받은 자신의 표준보수(소득)월액을 '90년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3년이 지난 '91년 3월말 현재로 41만명에게 703억여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현재 지급되는 급여로는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93년부터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90년 한 해동안에 26만명에게 423억여원이 지급되어, '89년도와 대비할 때 지급받은 사람은 약 4배로, 지급금액은 약 7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도에는 3월까지 9만여명에게 217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된 5만여명 및 64억여원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금액은 3배)로 증가하였고, 장해연금은 6배나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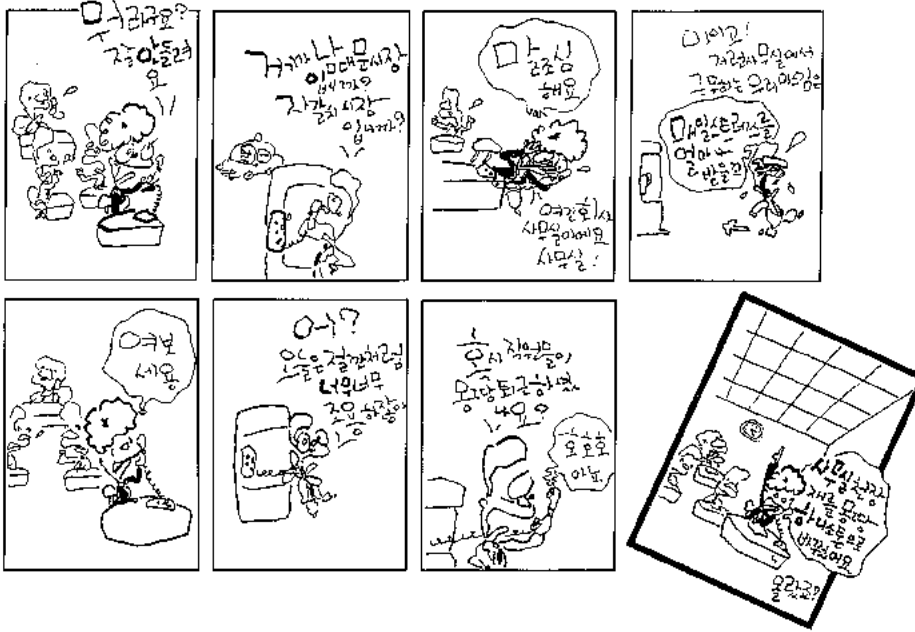
한편 '89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연금액은 그 동안의 소비자 물가변동률인 14.8%만큼 인상된다. 다만, 가족수당적 성격인 가급연금액은 '88년을 기준으로 지난 해에 13.2%인상하였으므로 금년도에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가입종과 보수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로 연금을 받을 시점의 실질가치로 환산한 평균액과 그 당시 수급시점의 사업장 가입자의 보수 평균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후 부터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므로 그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국민연금급여중 반환일시금은 사망, 60세도달, 국외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즉시, 퇴사를 한 때에는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취업 등으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전후의 가입 기간이 환산되지 아니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므로, 퇴사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가입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지급청구서중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를 전국의 2,542개 우체국과 제일은행의 243개 지점에 비치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보다 손쉽게 청구서식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28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체신관서(우체국)로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수급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천장재의 조건은?



첫째, 소리를 잘 흡수하고,
둘째, 열을 차단시켜 주고,
셋째, 가벼워야 하며,
넷째, 불에 타지 않고,
다섯째, 미관에 좋고,
여섯째, 시공과 사후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천장재는 유리섬유로 만든
한글라스 "하니스톤" 뿐

이렇게 좋습니다.

- 실내소음의 거의 2/3를 흡수하는 하니스톤은 흡음력이 뛰어나, 인락한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최선의 TLE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를 응용한 하니스톤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 다른 천장재보다 훨씬 가벼워 대형건물 시공에 적합하며 색상이 다양해 기호에 따라 선택교체 할 수 있고 시공후 파손될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 입니다.
- T-Bar 공법으로 시공되는 하니스톤은 시공 및 보수가 간편하며 인장력이 뛰어나 시공후 휘둘리거나 처지지 않고 수축분리 현상이 없습니다.
- 천연규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드는 하니스톤은 인체에 해가 없음을 물론 불에 타지않아 화재시에도 질식의 위험이 없습니다.
- 조명반사율이 70%가 넘어 밝은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보수가 편리한 하니스톤은 사무실이나 교실, 복도, 식당 같은 소음 발생이 심한 곳과 회의실, 교회, 강당, 체육관 같은 방음이나 음향이 중요시 되는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본사(서울) / 785-0311 (하니스사업본부 영업부)
대전영업소 / 621-4538 • 광주영업소 / 526-9711
대구영업소 / 425-1241 • 부산영업소 / 462-0311



하니스톤

오피스라면 "한글라스", 한글라스라면 "한글라스"

HANGLAS

건축용 단열재에는 — 왜, 청색스치로폴을 써야 할까요?



“스치로폴은
단열재의 생명인
내수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에림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황 일 규

스치로폴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청색스치로폴은 오로지 단열재로만 쓰입니다.
한남화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포성 폴리스티렌,
청색스치로폴.
내수성이 뛰어나 시공후에도 단열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절약형 단열재입니다.
건축용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꼭 청색을 확인하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쾌적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물 청색스치로폴은 물에 강합니다!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단열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벽을 헐고 재시공해야 합니다. (물 1%
흡수시 성능 7% 저하)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물을 흡수
하지 않는 폴리스티렌 수지를 원료로 하는 반영구적 단열재
입니다.

강도 청색스치로폴은 압축강도가 뛰어납니다!
내압강도가 높고 압축강도 또한 설계적재하중
보다 60배 정도가 높은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
건물바다이나 옥상 등 적재하중이 요구되는 단열시공에 좋은
단열재입니다.

불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스스로 꺼집니다!
국내 최초로 UL 난연 시험에 합격한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붙었다가도 화원만 제거해주면
3초 이내에 불이 스스로 꺼지는 자기소화성 단열재입니다.
(UL 94 HF-1 등급 인증)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청색 스치로폴 원료제조원 —————
N 한남화학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84-2211~9 (교환 2671/2)